www.kipf.re.kr

세법연구 24-06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 비교 연구

오종현·송은주·노수경·박하영

2024.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오 종 현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은 주 책임연구원

노 수 경 선임연구원

박 하 영 세무사

목 차

Ⅰ. 서론 ····· 1

Ⅱ.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 5
1. 세율 ····· 9
2. 영세율 및 면세 대상 ····· 9

Ⅲ.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 ····· 16
1. 세율 ····· 18
가.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 ····· 18
나. 경감세율 대상 ····· 22
2. 면세제도 ····· 26

Ⅳ.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 ····· 31
1.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현황 ····· 31
가. 세율 ····· 31
나. 면세제도 ····· 41
다. 부가가치세 세수 ····· 42
2. 독일 ····· 49
가. 세율 ····· 51
나. 면세제도 ····· 57

3. 프랑스 ····· 64
가. 세율 ····· 67
나. 면세제도 ····· 71
4. 스웨덴 ····· 76
가. 세율 ····· 78
나. 면세제도 ····· 82
5. 영국 ····· 87
가. 세율 ····· 88
나. 면세제도 ····· 95
6. 뉴질랜드 ····· 97
가. 세율 ····· 98
나. 면세제도 ····· 102
7. 일본 ····· 105
가. 세율 ····· 109
나. 면세제도 ····· 111

V. 국제비교 ····· 115
1. 세율 및 세수 비교 ····· 115
2. 면세범위 비교 ····· 118
가. 기초생필품 ····· 119
나. 국민후생 ····· 120
다. 문화 ····· 122
라. 기타 ····· 124

VI. 시사점 및 결론 ····· 128
1. 세율 ····· 128
2. 면세범위 ····· 131

가. 식료품 ····· 134
나. 개인 인적용역 ····· 135
다. 예술품 ····· 139

참고문헌 ····· 141

표 목차

〈표 Ⅱ-1〉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일반과세자) ····· 6
〈표 Ⅱ-2〉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및 장단점 ····· 7
〈표 Ⅱ-3〉 전단계세액공제법 예시 ····· 8
〈표 Ⅱ-4〉 면세 및 영세율 적용 대상 ····· 11
〈표 Ⅱ-5〉 면세, 영세율에 의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예시 ····· 15

〈표 Ⅲ-1〉 「EU 부가가치세 지침」의 경감세율 및 특별세율 대상 ····· 23
〈표 Ⅲ-2〉 「EU 부가가치세 지침」의 면세 대상 ····· 27

〈표 Ⅳ-1〉 OECD 회원국의 세율 변화 ····· 32
〈표 Ⅳ-2〉 OECD 회원국의 세율구조 변화 ····· 33
〈표 Ⅳ-3〉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변화 ····· 34
〈표 Ⅳ-4〉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 ····· 43
〈표 Ⅳ-5〉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 ····· 45
〈표 Ⅳ-6〉 부가가치세 세수율(VAT Revenue Ratio, VRR) ····· 48
〈표 Ⅳ-7〉 독일: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 ····· 53
〈표 Ⅳ-8〉 독일: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대상 ····· 54
〈표 Ⅳ-9〉 독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60
〈표 Ⅳ-10〉 프랑스: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 ····· 68
〈표 Ⅳ-11〉 프랑스: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대상 요약 ····· 69
〈표 Ⅳ-12〉 프랑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요약 ····· 72

〈표 Ⅳ-13〉 스웨덴: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 ····· 79
〈표 Ⅳ-14〉 스웨덴: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 ····· 81
〈표 Ⅳ-15〉 스웨덴: 공제권이 없는 면세 항목 ····· 83
〈표 Ⅳ-16〉 스웨덴: 일부 재화 및 용역에 공제권을 허용하는 면세 항목 ····· 85
〈표 Ⅳ-17〉 스웨덴: 공제권이 있는 면세(영세율) 항목 ····· 86
〈표 Ⅳ-18〉 영국: 부가가치세 세율(2025년) ····· 89
〈표 Ⅳ-19〉 영국: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 ····· 90
〈표 Ⅳ-20〉 영국: 경감세율(5%) 대상 재화 및 용역 ····· 91
〈표 Ⅳ-21〉 영국: 영세율 대상 재화 또는 용역 ····· 93
〈표 Ⅳ-22〉 영국: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 ····· 96
〈표 Ⅳ-23〉 뉴질랜드: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 ····· 99
〈표 Ⅳ-24〉 뉴질랜드: 부가가치세 0% 대상 ····· 100
〈표 Ⅳ-25〉 뉴질랜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103
〈표 Ⅳ-26〉 일본: 소비세 거래종류 및 과세 여부 ····· 107
〈표 Ⅳ-27〉 일본: 소비세율 변화 ····· 110
〈표 Ⅳ-28〉 일본: 소비세 성격상 면세되는 거래 ····· 112

〈표 Ⅴ-1〉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 116
〈표 Ⅴ-2〉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추이 ····· 117
〈표 Ⅴ-3〉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 ····· 118
〈표 Ⅴ-4〉 국제비교: 기초생필품 ····· 120
〈표 Ⅴ-5〉 국제비교: 국민후생 ····· 121
〈표 Ⅴ-6〉 국제비교: 문화 ····· 124
〈표 Ⅴ-7〉 국제비교: 기타 ····· 127

그림 차례

[그림 Ⅲ-1] EU 회원국 과세표준의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 적용 비율 ····· 20

[그림 Ⅳ-1]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2024년) ····· 36
[그림 Ⅳ-2] 독일: 부가가치세법 면세거래 구분 ····· 59

Ⅰ. 서론

□ 우리나라는 1977년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표준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비교적 세율이 낮은 수준임

○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필수품 및 국민 후생 관련 재화 및 용역 등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면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면세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경제적 왜곡이 초래되고 부가가치세 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1)]

□ 부가가치세는 1960년대 말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도입 당시 표준세율은 평균적으로 15%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경감세율과 면세제도를 시행하였음

○ OECD 회원국의 표준세율을 보면, 1975~2000년에 평균세율이 15.6%에서 17.7%로 증가하였고 2009~2016년에는 금융 및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2024년 현재 OECD 회원국의 평균 표준세율은 19.3%임[2)]

-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은 즉각적인 세수 증대가 가능하고 소득세보다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수 증대가 다른 세목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1) 전승훈(2019), pp. 104~105
2) OECD(2024a), pp. 35~36

○ 「EU 부가가치세 지침」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이유로 특정 거래에 대해서 면세를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면세 규정은 생산·유통 사슬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소비에 대한 일반 세금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세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거래 면세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과 기술적 또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면세하는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음[3)]

□ 유럽의 선진국들이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표준세율을 인상한 반면 우리나라가 세율을 유지한 데에는 우리나라의 재정이 비교적 건전하여 세율을 인상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없었고,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으며, 세율 인상 시 예상되는 물가상승 압력과 10% 세율의 단순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4)]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소요 증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5)]

○ 다만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총소비는 감소하는 한편 일부 고령자 관련 면세 항목에 대한 소비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제로는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6)]

---

3) 「EU 부가가치세 지침」에서는 면세거래를 국내 거래와 국외 거래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면세거래에 한해 검토하므로 국외 면세거래는 논외로 함

4) 성명재(2012), p. 19

5) 전승훈(2019), p. 94; 정유석(2012), p. 101

6) 고윤성(2021), p. 333

□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현재의 소득중심 과세체계[7]에서는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소득중심 과세체계에서 소비중심 과세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재원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가 적합한 이유는 첫째, 법인세 및 소득세에 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둘째, 세대 간 공평성 확보가 가능하며 셋째, 법인세의 다국적기업 소득문제 등에서 자유롭다는 점임[8]

-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조세 중립적[9]이고 세원이 넓어 낮은 세율로 많은 세수를 걷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 많은 선진국들은 막대한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활용하고 있음[10]

○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소요 증가는 증세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10%로 2024년 OECD 평균 표준세율(19.3%)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세율 인상은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압력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11]

□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제 중 세율과 면세범위를 중심으로 「EU 부가가치세 지침」에서 제시하는 규정과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현황 그리고 주요국의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사함

---

7) 우리나라의 2022년 세수구조를 보면, 소득세 20.5%, 법인세 16.8%, 사회보장세 25.6%, 재산세 11.9%, 부가가치세 15.3%, 그 외 소비세 7.4%, 기타 2.5%로 구성됨

8) 홍순만(2024), p. 102

9) 조세 중립적이란 조세가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즉 여러 가지 기회를 똑같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함(이창희(2022), p. 36)

10) 김두형(2012), p. 767

11) OECD(2024c), p. 32

- 조사대상국은 EU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스웨덴과 EU 비회원국인 영국, 뉴질랜드, 일본임

○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면세거래의 경우 국내 면세거래에 한해 검토하며 국경 간 면세거래는 제외함

□ 본 보고서는 제I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현행 제도를 소개하고, 제Ⅲ장에서는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주요 특징과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일본의 부가가치세제를 소개함

○ 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의 세율 및 면세범위를 비교하고 제Ⅵ장에서 시사점 및 결론을 제시함

Ⅱ.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12)]

□ 우리나라는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34호로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당시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은 전반적인 소비세체계(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를 간소화하고 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로 개편하는 획기적인 전환이었음

- 현재는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로 개편됨

○ 세부담 역진성, 물가상승, 세무행정 혼란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 국방비 및 방위산업과 경제발전에 따른 정부지출 증대를 뒷받침할 재원이 필요하여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소비행위를 담세력으로 보아 과세하는 소비세로 생산·유통 모든 단계의 사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세부담을 지는 간접세임

○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등과 구분됨

○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모든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귀속되는 총세액을 분산 납세하는데 이는 특정 단계의 과세 누락에도 세수 부족의 위험성이 적어 조세징수행정 측면에서 우수함

○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 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납세의무가 전가됨

---

12) 김두형·유호림(2022)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자 정리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전단계세액공제법(invoice/credit method)’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각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받아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뺀 나머지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하는데 이를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함

○ 매출세액이란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가액에 세율을 곱한 것이며, 매입세액이란 전단계까지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임

- 매입세액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된(또는 수입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가액에 세율을 곱한 것임

○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증한 경우에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구조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음

- 예외적인 경우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2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를 말함

〈표 Ⅱ-1〉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일반과세자)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 =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1])
- 납부세액 경감[2]
- 공제세액[3]
+ 가산세[4]

주: 1) 매입 시 부담한 세금계산서 수수분 매입세액(매입가액×세율),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

2)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4)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등 미교부·기재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자료: 기획재정부(2024), p. 233

□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 거래 시에 품목별·용역별로 계산이 가능하게 되어 거래의 파악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이고 세금징수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

○ 거래당사자 간 세금계산서를 매개로 상호대조 및 견제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다른 세목의 징수에도 도움이 됨

○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기본적으로 가산법과 공제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제법은 다시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나뉨

- 가산법은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의 합계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임
- 공제법은 당해 단계 거래금액에서 전단계거래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전단계거래액공제법) 당해 단계 거래세액에서 전단계거래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하는(전단계세액공제법) 방식임

〈표 Ⅱ-2〉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및 장단점

	가산법	공제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
납부세액 계산방식	부가가치 합계액*×세율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	부가가치액*×세율 *공급가액(매출액) - 매입액	매출세액*-매입세액 *매출액 × 세율
장점	- 소득형 부가가치세제 - 과세표준, 납부세액 계산의 편리함 - 조세제도의 영향이 적음	- 소비형 부가가치세제 - 부가가치세 이론에 충실한 과세방법	- 소비형 부가가치세제 - 납부세액 산출 정확 - 복수세율, 면세, 국경세 조정이 편리함 - 근거과세, 전가가능 강화
단점	- 일정 기간 이후 단계별 세액 추정 가능 - 소득과세제도 문제 내포 - 면세, 국경세 조정 어려움	- 납세환경/납세자협력 정도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 - 복수세율, 면세, 국경세 조정 어려움 - 세부담 전가가능 불확실	- 납세협력비용이 높음

자료: 김두형·유호림(2022), pp. 19~22.; 삼일회계법인, '부가가치세법 조문별 해설' 제30조(세율), https://www.samili.com/tax/jomunhaesul/explain_tax.asp?code=54-20;29-1&jo=29&sw=%EC%A0%84%EB%8B%A8%EA%B3%84%5E%EA%B1%B0%EB%9E%98%EC%95%A1%5E%EC%A0%84%EB%8B%A8%EA%B3%84%EA%B1%B0%EB%9E%98%EC%95%A1&srchFlag=true#content_body, 검색일자: 2025. 3. 18.

〈표 Ⅱ-3〉 전단계세액공제법 예시

(단위: 원)

거래당사자 (사업자·소비자)	매출시(수령액)		매입시(수령액)		부가가치 창출액	⑤납부세액 (② - ④)
	①매출액 (공급가액)	②매출세액 (①×10%)	③매입액	④매입세액[1)]		
원료 채취업자	20,000	2,000	-	-	20,000	2,000
제조업자	80,000	8,000	20,000	2,000	60,000	6,000
도매업자	100,000	10,000	80,000	8,000	20,000	2,000
소매업자	140,000	14,000	100,000	10,000	40,000	4,000
최종소비자	-	-	140,000	14,000	-	-
합계					140,000	14,000

주: 1) 매입세액은 전단계까지 납부한 세액으로 전단계까지 '⑤납부세액' 합계액임
자료: 김두형·유호림(2022), p. 28의 표를 재구성함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을 대가(부가가치세 제외)로 받은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되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함

○ 매출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연체이자, 매출할인액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 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각종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

□ 한편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수는 108.6조원(지방소비세 이체액 포함)[13]으로 이는 총 조세수입의 15.3%, GDP의 4.9%를 차지함[14]

○ 2000년 대비 2022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총 조세수입 대비 1.7%p 감소, GDP 대비 1.3%p 증가함

13) 국회예산정책처(2024a), p. 238
14) OECD(2024b), p. 69

□ 또한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15.3%)은 사회보장기여금(25.6%), 소득세(20.5%), 법인세(16.8%) 다음으로 높음

○ 총 조세수입 대비 세목별 비율은 사회보장기여금(25.6%), 소득세(20.5%), 법인세(16.8%), 부가가치세(15.3%), 기타(14.4%), 부가가치세 이외의 소비세(7.4%)로 구성됨

- 기타는 대부분 재산세(11.3%)로 구성됨

○ 한국의 총 조세수입 대비 세목별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사회보장기여금(0.8%p) 비중이 높고, 소비세(△8.8%p) 비중은 낮은 편임

- 소비세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소비세를 말함
- 부가가치세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5.5%p 낮음

1. 세율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제 도입 이후로 세율을 10%로 변동 없이 적용하고 있음

○ 1977년 도입 당시 표준세율은 13%였으나, 경제 여건에 따라 3%p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를 운영하여 실제로는 10%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1988년에는 탄력세율제도가 폐지되고 표준세율이 10%로 개정됨

2. 영세율 및 면세 대상

□ 사회·경제적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대상을 나누고 있으며, 과세 대상 중에도 표준세율(10%)과 영세율(0%)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나눌 수 있음

○ 면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해당 거래 단계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나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어 부분면세라고도 함

- 소비자의 세부담 경감 및 역진성 보완, 사회·문화·공익 등 정책적 목적 등을 위해 적용함

○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완전히 제거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세부담을 지지 않는 제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는 있으나 과세표준금액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이 항상 0이고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여 완전면세라고도 함

- 소비지국 과세원칙하에서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 수출 촉진, 소비자가격 인하, 그 외 국가의 정책적 목적 등을 위해 적용함

□ 면세는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함[15]

□ 〈표 Ⅱ-4〉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정리한 것임

○ 개별 세법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영세율 모두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조세지출에 포함되나 상대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은 일몰규정을 두거나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 관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16]

15) 김두형·유호림(2022), p. 184

16) 2018년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5개 중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항목은 4개 항목으로 개별 세법상 조세지출은 상당수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외되어 명확한 관리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연합뉴스, 정성호, 「개별세법상 세금감면 10개 중 1개만 관리」, 2020. 9. 27.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2693, 검색일자: 2025. 3. 18.)

〈표 Ⅱ-4〉 면세 및 영세율 적용 대상

구 분	근 거	대 상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① 미가공식료품 -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등도 포함)
		② 수돗물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③ 연탄과 무연탄
		④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⑤ 의료보건 용역(수의사 용역 포함)·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 미용·성형의료 용역은 제외하며, 동물은 질병 및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함
		⑥ 교육 용역 - 허가·인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 무도, 자동차운전 학원의 교육 용역은 제외
		⑦ 여객운송 용역 -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 등은 제외
		⑧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광고 제외) - 도서에 부수하는 음반, 녹음·비디오 테이프, 전자출판물 포함
		⑨ 우표(수집용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
		⑩ 저가형·특수용 담배
		⑪ 금융·보험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 한정) -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용역 -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 용역(예: 집합투자업) - 외국환 업무용역, 상호저축은행업, 신용보증기금업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 - 보험업(보험계리·연금계리 용역 제외) - 여신전문금융업, 자산유동화사업, 자산관리사업 - 특정 자산 관리·운용 용역(부동산·실물자산 등 제외) -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자산 관리·운용 용역 - 특정 운영기관의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 금전대부업 -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계약 체계 대리 용역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수행하는 보증 업무

〈표 Ⅱ-4〉의 계속

구 분	근 거	대 상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⑫ 상시거주용(사업용 제외) 주택 및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 용역 등
		⑬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⑭ 토지
		⑮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특정 인적 용역 - 개인·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특정 인적 용역
		⑯ 예술창작품, 비영리 예술·문화행사·아마추어 운동경기
		⑰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등의 입장료
		⑱ 종교·자선·학술·구호·공익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일시적 공급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⑲ 국가·지자체·지자체 조합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⑳ 국가·지자체·지자체 조합·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2]
		② 사업장 등의 구내식당·위탁급식 음식용역[3]
		③ 농어업 경영·작업의 대행용역[3]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것에 한함
		④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④-2 관리주체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국민주택 제외)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2]
		④-3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④-4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④-5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3]
		⑤ 온실가스 배출권·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상쇄배출권[2]
		⑥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4]
		⑦ 국가철도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⑦-2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표 Ⅱ-4〉의 계속

구 분	근 거	대 상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⑧ 특정학교시설에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4]
		⑧-2 특수목적법인이 건설한 기숙사에 국가,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4]
		⑧-3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학교와 공동설립 포함)한 특수목적법인이 건설한 기숙사에 국가, 지자체,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등[5]
		⑨ 시내버스·마을버스용 CNG버스[6]
		⑨-2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용 전기·수소버스[2]
		⑨-3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7][10]
		⑩ 희귀병치료제 등
		⑪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⑫ 농·임업 사업자에 공급하는 난방, 농·임업용 목재펠릿[2]
		⑬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특정 재화의 수입(무연탄, 선박, 보세건설물품, 직접 수입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8][11], 적격단체가 경기시설 제작·건설·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①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3]
		②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2]
영세율[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제24조	- 재화의 수출 - 용역의 국외공급 -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및 용역
		② 국군부대 또는 기관(골프장 등 제외)에 공급하는 석유류
		③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3]
		⑥-2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동 시설의 건설용역[3]
		④ 장애인용보장구 등
		⑤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2] - 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 축산업용 기자재, 사료, 임업용 기자재, 유기농어업자재
		⑥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2] - 사료, 어업용 기자재

〈표 Ⅱ-4〉의 계속

구 분	근 거	대 상
영세율[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외국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재화 - 외국사업자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동계패럴림픽)와 직접 관련된 외국법인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주: 1) 이 밖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있음(국회예산정책처(2024a), p. 249 참고)
2) 2025. 12. 31.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함
3) 2026. 12. 31.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함
4) 2014. 12. 31.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만 적용함
5) 2014. 1. 1.~2025. 12. 31.동안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만 적용함
6) 2023. 12. 31.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함(이후 세제지원 목적 달성으로 적용기한 종료됨)
7) 2025 12. 31.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함(기획재정부, 『2023년 개정세법해설』, 2023)
8) 2025. 12. 31.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함
9) 2024. 12. 31.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함
10)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 §105의2에 따라 환급할 수 있음
11) 관할 세무서장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해당 운송사업용으로 2027. 12. 31.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105의3에 따라 환급할 수 있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 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검색일자: 2024. 11.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07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검색일자: 2024.11.25; 삼일회계법인, 부가가치세법 조문별 해설, 제21조~제24조,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별 해설, 제106조, 제107조; 국회예산정책처(2024a), pp. 248~252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함에 따라 면세 및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환수효과(catching-up effect)와 누적효과(cascade effect, 면세의 경우에만)가 발생함

○ 환수효과란 거래의 중간 단계에서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과세하는 경우 세액이 해당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만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아져 면세 또는 영세율 효과가 사라지고 경감된 세액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것을 말함

○ 누적효과란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을 부담하지 않은 대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부담하는데, 이를 다음 단계로

전가하면 거래 전체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말함

〈표 Ⅱ-5〉 면세, 영세율에 의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예시

(단위: 원, %)

○ 환수효과(영세율 적용 시)

구분	매입액	부가가치	매출액	세율(%)	매출세액	결과
사업자A (제조)	0	20,000	20,000	10	2,000	2,000 (납부)
사업자B (도매, 영세율)	20,000	5,000	25,000	0	0	2,000 (환급)
사업자C (소매)	25,000	10,000	35,000	10	3,500	3,500 (납부)
합계		35,000				3,500 (납부)

○ 누적효과(면세 적용 시)

구분	매입액	부가가치	매출액	세율	매출세액	결과
사업자A (제조)	0	20,000	20,000	10	2,000	2,000 (납부)
사업자B (도매, 면세)	20,000	5,000	25,000	-	(면세)	-
사업자C (소매)	25,000	10,000	35,000	10	3,500	3,500 (납부)
합계		35,000				5,500 (납부)

자료: 김두형·유호림(2022), pp. 164~165의 표를 재구성함

Ⅲ.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부가가치세 지침(DIRECTIVE 2006/112/EC, 이하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EU 부가가치세제의 공통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17)18)]

○ 이 지침은 달성해야 할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회원국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방식을 각국의 상황과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음

- 기존의 법조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등에 대한 판단 또는 판례법을 통해 이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음

○ 다만 내용이 매우 상세하기 때문에 회원국이 지침에서 정한 결과를 달성하려 할 때 선택의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음

□ EU의 공통 부가가치세제의 원칙은 재화 및 용역의 가격에 비례하는 일반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거래는 회원국 내 재화 및 용역의 유상 공급, 재화의 수입, EU 역내 재화의 유상 취득임[19)]

---

17) 「EU 부가가치세 지침」 §1; Kristoffersson and Rendahl(2019), p. 25; 국세청(2019), pp. 28~29, p. 50

18) 현행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2007년 1월 1일 시행된 것으로, 1967년 첫 「EU 부가가치세 지침」(First Council Directive, 67/227/EEC)의 일부를 통합하고 1977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Sixth Council Directive 77/338/EEC)을 재구성한 것임(Bach et al.(2021), p. 3)

19) 「EU 부가가치세 지침」 §1, §2; European Commssion, "Value Added Tax (VAT)",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vat_en, 검색일자: 2024. 12. 11.; IBFD, "Commentary on European VAT-0.2. The Preamble to Directive 2006/112/EC",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dcom_recast_chap00&refresh=17319

○ 각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부분적으로 징수되며, 세금 부과 전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수와 관계없이 최종소비자의 부담세액이 동일하여 중립적인 세금으로 평가됨

- 부가가치세제는 가능한 포괄적으로 생산·유통의 모든 단계에 적용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단순성과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음

□ 다만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익 보호 등 여러 목적에 따라 특정 거래에 한해 예외적으로 면세 규정을 둠[20]

□ 납세의무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담세력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지는 간접세 형태를 띰[21]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활동의 목적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임

- 경제활동은 생산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자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의 활동, 광업이나 농업, 전문 활동을 포함하며, 지속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유체 또는 무체 재산을 활용하는 것도 경제활동으로 간주됨

○ 사업자는 각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세율만큼 국가에 납부함

□ 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몇 단계의 거래를 거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새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설계되었음[22]

03624174%23evdcom_recast_chap00, 검색일자: 2024. 12. 11.

20) Kristoffersson and Rendahl(2019), p. 209

21) 「EU 부가가치세 지침」 §9; Kristoffersson and Rendahl(2019), pp. 7~9

22) Kristoffersson and Rendahl(2019), p. 10, p. 259

○ 납세의무자는 과세거래를 위해 재화 및 용역을 매입·사용하는 경우 납부할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권리를 가짐[23)]

○ 이러한 납부세액 계산구조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도록 함

○ 각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면 다음 단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이전 단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누적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1. 세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가 고객이나 제3자로부터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얻거나 얻을 모든 것을 포함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곱하여 매출 부가가치세를 계산함[24)]

○ 이하에서는 세율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가.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

□ 세율 규정은 EU 공동체 시장의 원활한 기능과 경쟁 왜곡 방지를 목표로 함[25)]

○ 표준세율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세율로, 회원국 간 과도한 세율 차이로

---

23) 「EU 부가가치세 지침」 §168

24) 「EU 부가가치세 지침」 §73

25) Official Journal of the EU, “Council Directive (EU) 2022/542 of 5 April 2022 amending Directives 2006/112/EC and (EU) 2020/285 as regards rates of value added ta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2.107.01.0001.01.ENG&toc=OJ%3AL%3A2022%3A107%3ATOC, 검색일자: 2024. 11. 19.; Kristoffersson and Rendahl (2019), pp. 201~202; Bach et al.(2021), p. 29.; IBFD, “Commentary on European VAT - Global Topic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dcom_recast_chap00&refresh=1731903624174%23evdcom_recast_chap00, 검색일자: 2024. 12. 10.

인한 구조적 불균형과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 왜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경감세율은 법정 열거항목에만 적용되며 조세 중립성 원칙에 따라 동일한 수요와 기능을 가진 재화나 용역에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함

- 대부분의 회원국은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서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큰 생필품이나 사회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도서 등의 품목에 이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 EU 회원국은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26)]

○ 2024년 1월 기준 유럽의 평균 부가가치세 세율은 21.6%로, 최소 표준세율인 15%보다 6.6%p 높음[27)]

○ 회원국에서 전체 과세표준에서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비율은 2019년 기준 회원국 평균 약 71%임[28)]

○ 다만 회원국 간 해당 비율은 스페인 47%, 불가리아 97%로 큰 편차를 보임

---

26) 「EU 부가가치세 지침」 §97

27) Taxfoundation, "VAT Rates in Europe, 2024", https://taxfoundation.org/data/all/eu/value-added-tax-2024-vat-rates-europe/, 검색일자: 2024. 11. 18.; pwc, "Standard VAT rates for WWTS territories", https://taxsummaries.pwc.com/quick-charts/value-added-tax-vat-rates, 검색일자: 2024. 12. 10.

28) Bach et al.(2021), p. 19

[그림 Ⅲ-1] EU 회원국 과세표준의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 적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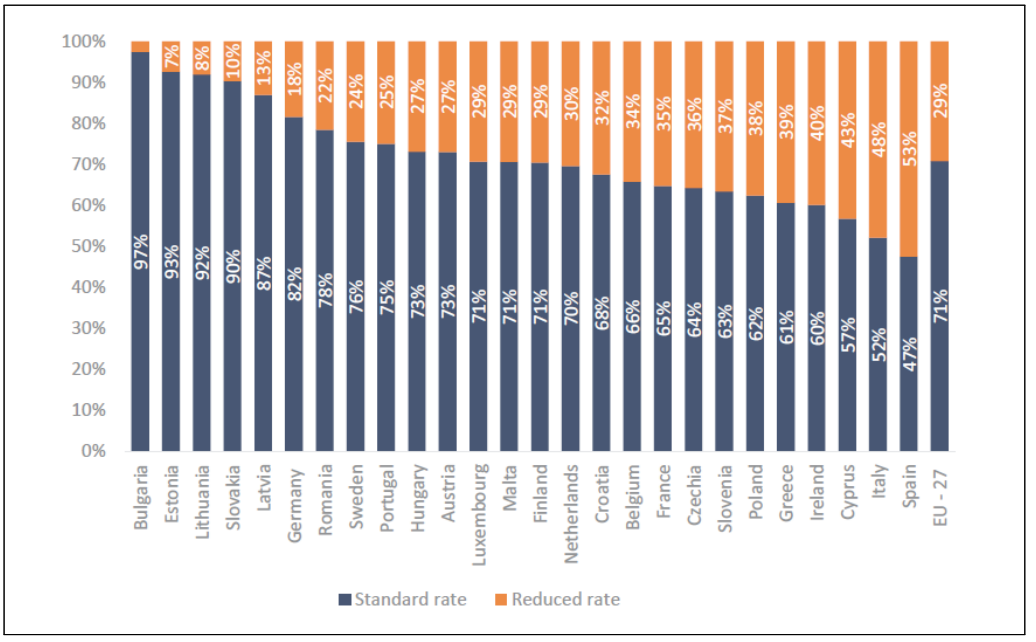

주: 1. 2019년 기준 자료임
2. “Standard rate”는 표준세율, “Reduced rate”는 경감세율을 의미함
자료: Bach et al.(2021), p. 31

□ 또한 회원국은 5% 이상의 경감세율을 1~2가지 둘 수 있으며 5% 미만의 경감세율 1가지, 매입세액 공제권 있는 면세(영세율)를 설정할 수 있음[29)]

○ 이하에서 5% 미만의 경감세율과 공제권 있는 면세(영세율)는 ‘특별세율’[30)]이라 함

□ 「EU 부가가치세 지침」의 부록 제3장은 경감세율 또는 특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적용 가능한 항목의 숫자를 제한함[31)]

---

29) 「EU 부가가치세 지침」 §98 (1)

30) 특별세율(Special rates)에는 초경감세율(Super-reduced rates), 공제권 있는 면세(영세율)(Zero rates), 중간세율(Parking rates or intermediary rates)이 있으나 중간세율은 소수국가들에서만 예외적으로 부록 제3장에 열거되지 않은 특정 항목에 적용되고 있어 본문에서는 특별세율은 중간세율을 제외하고 논의함(Your europe, “VAT rules and rates”,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taxation/vat/vat-rules-rates/index_en.htm#inline-nav-2, 검색일자: 2024. 12. 4.; Bach et al.(2021), pp. 5~6)

○ 5% 이상의 경감세율은 부록 제3장에 열거된 항목 중 최대 24개 항목까지 적용할 수 있음

○ 특별세율은 부록 제3장에 열거된 항목 중에서도 식료품, 의약품, 승객운송, 도서 등[32]에 한하여 최대 7개 항목까지 적용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가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음[33]

□ 2018년 EU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부가가치세 공통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EU 부가가치세 지침」 개정을 통해 회원국이 부가가치세 세율을 15%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표준세율 규정을 영구 규정으로 확정하였음[34][35]

○ 15%의 표준세율 규정은 회원국 간 부가가치세 세율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1993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며, 2018년 개정을 통해 영구 시행이 결정되었음

○ 이 개정안은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되었으며 유럽경제사회위원회는 부가가치세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공공예산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소 표준세율 15% 유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

---

31) 「EU 부가가치세 지침」 §98 (2); Youreurope, "VAT rules and rates",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taxation/vat/vat-rules-rates/index_en.htm#inline-nav-2, 검색일자: 2024. 12. 4.; European Commission, "VAT Rates",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vat/vat-directive/vat-rates_en, 검색일자: 2024. 12. 4.

32) 「EU 부가가치세 지침」 부록 제3장 (1)-(6), (10c) 및 부록 제3장 항목 중 §105a (1)에 규정된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항목

33) Kristoffersson and Rendahl(2019), p. 269

34) EUR-lex, "COUNCIL DIRECTIVE (EU) 2018/912 of 22 June 201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8L0912#pbl_1, 검색일자: 2024. 12. 10.

35)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https://www.parlament.gv.at/dokument/XXVI/EU/25102/imfname_10816816.pdf, 검색일자: 2024. 12. 10.; European Council of the EU, "VAT minimum standard rate set permanently at 1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8/06/22/vat-minimum-standard-rate-set-permanently-at-15/, 검색일자: 2024. 12. 10.

□ 또한 2022년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특정 회원국만 적용할 수 있었던 특별세율을 평등대우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36][37]

○ 다만 특별세율은 최대 7개 항목까지만 허용하여 회원국 간 평등대우원칙을 준수하고 재정적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나. 경감세율 대상

□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대상은 최종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주로 정부의 분배적 목표와 그 외의 목표(예: 환경 정책)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는 경향이 있음[38]

○ 저소득 가구에서 소득 대비 필수재 소비 비중이 크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제품의 소비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을 수 있어 해당 제품의 소비를 장려하려는 목적도 있음

□ 부록 제3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및 특별세율 대상은 다음의 표와 같음[39]

---

36) 기존에 특정 회원국에 허용되던 세율의 숫자와 수준에 대한 예외규정은 각 회원국의 지리적 특징이나 사회·역사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서 「EU 부가가치세 지침」과 회원국 세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였음(국세청(2019), p. 52)

37) COUNCIL DIRECTIVE (EU) 2022/542 of 5 April 2022 amending Directives 2006/112/EC and (EU) 2020/285 as regards rates of value added ta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2.107.01.0001.01.ENG&toc=OJ%3AL%3A2022%3A107%3ATOC; Council Directive 92/77/EEC of 19 October 1992 supplementing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and amending Directive 77/388/EEC (approximation of VAT rates

38) COUNCIL DIRECTIVE (EU) 2022/542 of 5 April 2022 amending Directives 2006/112/EC and (EU) 2020/285 as regards rates of value added tax; Bach et al.(2021), p. 51

39) 「EU 부가가치세 지침」 부록 제3장

〈표 Ⅲ-1〉「EU 부가가치세 지침」의 경감세율 및 특별세율 대상

번호	내용
(1)	인간 및 동물 소비용 식료품[1], 식료품 준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살아있는 동물, 씨앗, 식물, 식료품을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물
(3)	의료 및 수의학용 의약품(피임 및 여성 위생 보호용 제품, 흡수성 위생 제품 포함)
(4)	의료용 및 장애인용 장비, 기구, 보조기구 및 보호장비(건강 보호 마스크 포함), 장애 보완 및 극복에 필수적인 제품과 그 제품의 개조·수리·임대
(5)	승객 운송 및 승객과 함께 운반되는 재화(예: 수하물,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모터차 및 기타 차량) 운송 또는 승객 운송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
(6)	물리적 매체 또는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도서, 신문 및 정기간행물[2]
(7)	쇼, 극장, 서커스, 박람회, 놀이공원, 콘서트, 박물관, 동물원, 영화관, 전시회 및 유사 문화행사 및 시설에 입장 또는 이러한 행사 또는 방문의 라이브 스트리밍에 접근
(8)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용역의 수신 및 미디어 용역 제공자가 제공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웹캐스팅, 디지털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회원국이 정의한 인터넷 접근 용역
(9)	작가, 작곡가 및 공연예술가가 공급하는 용역 또는 그들에게 귀속되는 로열티
(10)-(10c)	·회원국이 정의한 사회정책 일환으로서 주택 건설, 주택의 개조·변경(철거 및 재건설 포함), 주거용 부동산 임대 ·공익을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공공 및 기타 건물의 건설 및 개조 ·창문 청소 및 개인 가정 청소 ·주택 및 공공 및 기타 건물에 태양광 패널 공급 및 설치
(11)	·농업 생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3] ·살아있는 말과 이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
(12)	·호텔 및 유사 시설에서 제공되는 숙박(휴가용 숙박, 캠핑장소 또는 카라반 사이트 임대 포함) ·식당 및 케이터링 용역[4]
(13)	스포츠 행사에 입장 또는 그러한 행사에 라이브스트리밍, 스포츠 시설의 사용, 스포츠 또는 신체 운동 수업의 공급(라이브 스트리밍 포함)
(14)	삭제됨(스포츠시설 이용)
(15)	회원국이 사회복지(social wellbeing)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한 복지(welfare) 또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업무 수행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5]
(16)	장례업자의 용역 공급, 화장 용역, 이와 관련한 재화의 공급
(17)	의료용역, 치과치료용역, 온열치료용역[6]

〈표 Ⅲ-1〉의 계속

번호	내용
(18)	하수, 도로 청소, 폐기물 처리 또는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
(19)	가전제품, 신발, 가죽 제품, 의류 및 가정용 린넨(수선 및 변경 포함) 수선 용역
(20)	가사 돌봄 용역(예: 가사 도움 및 어린이, 노약자, 병자, 장애인 돌봄)
(21)	헤어미용 용역
(22)	전기, 지역 냉난방, 바이오가스 공급, 고효율 저배출 난방시스템 공급 및 설치[7]
(23)	살아있는 식물과 기타 원예 제품(구근, 면화, 뿌리 등과 같은 것, 절화 및 장식용 잎사귀 포함)
(24)	어린이 의류 및 신발, 어린이 카시트
(25)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공급, 임대, 수리 용역
(26)	부록 제9장의 예술작품, 수집품, 골동품 〈부록 제9장〉 · 예술품 (1) 예술가가 손으로 직접 제작한 그림, 콜라주, 이와 유사한 판화, 회화 및 드로잉(건축, 공학, 산업, 등을 위한 설계도, 스튜디오 배경화 등은 제외) (2) 예술가가 손으로 직접 제작한 하나 이상의 판에서 제한된 수량으로 인쇄한 원본 판화, 프린트, 석판화(기계적 공정을 통한 것은 제외) (3)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원본 조각 및 조형물 (4) 예술가가 제공하는 원본 디자인으로 손으로 제작된 태피스트리 및 직물벽지 (5) 예술가가 직접 제작하고 서명한 도자기 작품 (6) 손으로 직접 제작된 구리 에나멜작품(보석류, 금은세공품 제외) (7) 예술가가 촬영하고 직접 인쇄하거나 그의 감독하에 인쇄된 사진으로 서명 및 번호가 매겨진 복제품으로 제한되며 30부로 한정됨 · 수집품 (1) 우표, 소인, 초일봉투, 사전인쇄 문구류 등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유통 중이지 않고 유통될 예정도 아닌 것 (2)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해부학, 역사, 고고학, 고생물학, 민속학 또는 화폐학적 가치가 있는 수집품 · 골동품: 예술품이나 수집품이 아닌 물품으로 100년 이상 된 것
(27)	근로계약을 따른 사람들과 실업자에게 노동법원 절차에 있어 제공되는 법률 용역, 회원국 정의 법률 지원 제도에 따른 법률

〈표 Ⅲ-1〉의 계속

번호	내용
(28)	구조 또는 응급처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및 기타 장비가 공공기관 또는 시민 또는 공동체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기관에 공급되는 경우
(29)	등대선, 등대 또는 기타 항로 안내 보조기기 및 생명구조 용역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구명보트 유지 보수 포함)

주: 1) 음료를 포함하나 알코올음료는 제외함
2) 광고에 전적으로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출판물·비디오콘텐츠 또는 오디오 음악 출판물은 제외함
3) 기계 또는 건물과 같은 자본적 재화는 제외함. 화학 농약 및 비료의 공급은 2032년 1월 1일까지 적용함
4) 알코올·비알코올 음료의 공급은 제외할 수 있음
5) 해당 거래가 §132, §135, §136조에 따라 면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함
6) 해당 거래가 §132(1)의 (b)-(e)에 따라 면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함
7)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와 장작용 목재는 2030년 1월 1일까지만 적용함
자료: 「EU 부가가치세 지침」 부록 제3장

□ 2022년 EU 이사회는 약 30년간 유지한 경감세율 대상 목록을 현대화하고 EU의 주요 정책들(EU 그린딜, 디지털 전환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음[40][41]

○ 새로 추가된 항목으로 태양광 패널의 공급 및 설치, 고효율 저배출 난방시스템, 자전거 공급 및 대여, 인터넷 접속 용역, 문화·스포츠 행사의 라이브스트리밍 등이 있음

40) COUNCIL DIRECTIVE (EU) 2022/542 of 5 April 2022 amending Directives 2006/112/EC and (EU) 2020/285 as regards rates of value added ta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2.107.01.0001.01.ENG&toc=OJ%3AL%3A2022%3A107%3ATOC

41)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More flexible VAT rates”,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8/625137/EPRS_BRI(2018)625137_EN.pdf, 검색일자: 2024. 11. 22.; European Parliament, “Modernised VAT rate regime in the European Union”, https://www.europarl.europa.eu/legislative-train/theme-an-economy-that-works-for-people/file-modernised-vat-rate-regime, 검색일자: 2024. 11. 19.;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Agreement on new rules governing VAT rat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6609, 검색일자: 2024. 11. 19.; IBFD, “EU Council Adopts Major Overhaul of VAT Reduced Rates and Determines Place of Supply of Online Event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4-06_e2_2.html, 검색일자: 2024. 12. 12.

○ 반면 화석연료나 화학비료 등은 탈탄소화 정책에 따라 2033년 이후 경감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 개정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 규정 및 행정 조항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하며 이는 2025년부터 적용 예정임

2. 면세제도

□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책적 이유로 특정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운영함[42)]

○ 면세 규정은 생산·유통 사슬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소비에 대한 일반세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세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항에 따라 회원국은 입법재량을 갖고 면세 여부를 선택하거나 면세 적용 요건을 추가할 수 있음

- 다만 이 재량권은 충실원칙(principles of loyalty)에 따라 EU 법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함

□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른 면세 대상은 크게 국내 면세거래와 국경 간 면세거래로 나눌 수 있음(〈표 Ⅲ-2〉 참조)

○ 국내 면세거래는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132)과 그 외의 목적을 위한 활동(§135)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익보호 목적의 활동에는 공공우편용역, 의료용역, 교육용역, 비영리단체의 공익적 활동 등이 있음

---

42) Kristoffersson and Pernilla Rendahl(2019), p. 209; IBFD, “Commentary on European VAT - Chapter 9 – Exemptions - Global Topic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dcom_recast_chap09&refresh=1734052555994%23evdcom_recast_chap 09, 검색일자: 2024. 12. 11.

- 그 외의 목적을 위한 활동에는 금융·보험 용역, 부동산 판매·임대 거래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은 기술적 이유나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면세함

○ 국경 간 면세거래에는 수출 거래, EU 역내 공급[43], 국제운송, 국제무역 관련 거래, 국제기구 거래 등이 있음

- 이러한 거래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목적으로 면세하는 것으로 생산·유통 사슬 전체 단계에서 누적효과 없이 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임
- 한편 납세의무자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면세거래와 관련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으나 수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44]

〈표 Ⅲ-2〉「EU 부가가치세 지침」의 면세 대상

구분	내용	
국내 거래[1]	◎ 공익 보호 목적의 활동(§132 (1))	
	(a)	공공우편 용역과 이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2]
	(b)	공법에 따라 규율되는 단체 및 회원국 승인기관의 병원 진료 및 의료 용역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
	(c)	회원국이 정의하는 의료전문가 또는 준의료 전문가가 수행하는 의료 용역
	(d)	인체의 장기, 혈액, 모유
	(e)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용역,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치과 보철물의 공급
	(f)	독립적 인적집단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경제적 활동을 수행할 것 ·집단의 목적이 집단구성원에게 이들이 집단의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직접 필요한 용역을 공급하는 것임 ·집단 구성원에게 공동비용 중 각 지분 상당액만 요구할 것 ·독립적 인적집단에 면세하는 것이 경쟁의 왜곡을 야기하지 않을 것
	(g)	공법에 따라 규율되는 단체 및 회원국 승인기관의 복지(welfare) 및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용역 및 재화의 공급
	(h)	공법에 따라 규율되는 단체 및 회원국 승인기관의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된 용역 및 재화의 공급

43) EU 내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EU 내 공급을 면세함
44)「EU 부가가치세 지침」§168, §169

〈표 Ⅲ-2〉의 계속

구분		내용
국내 거래[1]	(i)	공법에 따라 규율되는 단체 및 회원국 승인기관이 제공하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 교육, 학교 또는 대학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재훈련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용역 및 재화의 공급
	(j)	개인 교사가 제공하는 학교 교육 및 대학 교육
	(k)	종교적 또는 철학적 기관이 (b), (g), (h) 및 (i) 항목에서 언급된 활동과 정신적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인력 공급
	(l)	비영리 단체가 정치적, 노동조합적, 종교적, 애국적, 철학적, 박애적 또는 시민적 성격의 목적을 위해 단체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회비의 대가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용역 및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재화의 공급
	(m)	비영리 단체가 스포츠 또는 체육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스포츠 또는 신체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용역의 공급
	(n)	공법에 따라 규율되는 단체 및 회원국 승인기관이 제공하는 문화 용역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화의 공급
	(o)	(b), (g), (h), (i), (l), (m), (n) 항목에 따라 면세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금 모금 행사 및 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 및 재화 공급
	(p)	승인기관의 특수 설계 차량을 이용한 환자 및 부상자 운송 용역
	(q)	공공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3]
	◎ 그 외 기술적·행정적 목적을 위한 활동(§135)	
	(a)	보험 및 재보험 거래
	(b)	신용의 부여 및 협상 그리고 이를 부여한 사람이 수행하는 신용 관리
	(c)	신용 보증 또는 다른 금전적 담보에 대한 협상이나 거래, 그리고 그 신용을 부여한 사람이 수행하는 신용 보증 관리
	(d)	예금 및 당좌 계좌, 지불, 송금, 채무, 수표 및 기타 유통 가능 금융상품에 관한 거래[4]
	(e)	통화, 은행권 및 법정 통화로 사용되는 주화와 관련된 거래[5]
	(f)	주식, 회사나 협회의 지분, 채권 및 기타 증권과 관련된 거래
	(g)	회원국이 정의한 특별 투자펀드 관리
	(h)	각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우편 용역에 사용 가능한 액면가로 공급되는 우표, 인지 및 기타 유사한 우표
	(i)	각 회원국이 정한 조건과 제한에 따른 베팅, 복권 및 기타 형태의 도박
	(j)	건물 또는 그 일부와 그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공급
	(k)	건축되지 않은 토지의 공급
	(l)	부동산 임대[6]

〈표 Ⅲ-2〉의 계속

구분	내용
국경 간 거래	수출거래, EU 역내 공급, 국제 운송, 국제기구 거래 등

주: 1)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국내 거래 면세 대상을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132)과 그 외 목적을 위한 활동(§135)으로 구분함
2) 공공우편 용역이 제공하는 용역 중 여객운송이나 전기통신 용역은 제외함
3) 공공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이 수행하는 상업적 활동은 제외함
4) 채권 추심은 제외함
5) 법정 통화로 사용되지 않는 금, 은 또는 금속 동전 등 수집가치가 있는 수집용 품목은 제외함
6) 호텔 등 숙박장소, 주차장, 영구적으로 설치된 장비·기계, 금고는 제외함
자료: 「EU 부가가치세 지침」 §132, §135, §146; Kristoffersson and Pernilla Rendahl(2019), pp. 208~255

□ 공법에 따라 규율되는 단체가 아닌 자가 수행하는 특정 공익 활동[45]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46]

○ 해당 기관은 체계적으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이를 배분하지 않고 수행하는 활동의 유지 및 향상에 사용해야 함

○ 해당 기관은 본질적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하며 활동 결과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은 자가 운영하여야 함

○ 해당 기관은 관련 당국이 승인한 가격 이하를 부과하여야 하며 승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적용 상업기업이 부과하는 유사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부과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적용 상업기업이 불리한 경쟁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면세 적용이 경쟁의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어야 함

□ 다음의 면세 대상에 대해서는 회원국은 면세 대신 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회원국

45) 「EU 부가가치세 지침」 §132 (1) (b), (g), (h), (i), (l), (m), (n)에 해당하는 의료 용역, 노인복지 활동, 어린이·청소년 보호 활동, 교육 용역, 문화 활동 등을 의미함

46) 「EU 부가가치세 지침」 §133

은 과세 선택권 행사를 규율하는 상세 규칙을 마련하여야 함[47]

○ 특정 금융 용역(§135 (1) (b)-(g))

○ 건물 또는 그 일부와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공급

○ 건축되지 않은 토지의 공급

○ 부동산의 임대[48]

□ 한편 EU 부가가치세제의 기초가 되는 1977년 제정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과 현행 「EU 부가가치세 지침」에서 면세 대상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관찰됨[49]

47) 「EU 부가가치세 지침」 §137

48) 한편 면세 부동산 임대용역에서 호텔 등 숙박장소, 주차장 등 임대용역은 제외되는데, 회원국은 이 외에도 추가적인 면세 제한 사항을 둘 수 있는 입법재량권을 가짐(「EU 부가가치세 지침」 §135; Kristoffersson and Pernilla Rendahl(2019), p. 235)

49) 「Sixth Council Directive 77/388/EEC of 17 May 1977」 §13;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132, §135

Ⅳ.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

1.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현황

가. 세율

1) OECD 회원국의 세율 변화[50]

□ OECD 회원국의 1975~2024년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를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75~2000년에는 평균 세율이 15.6%에서 17.7%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음

○ 2001~2008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고 37개 회원 중 26개국이 15%에서 22% 사이의 세율을 유지하였음

○ 2009~2016년에는 많은 국가에서 표준세율을 상당히 인상하였음

- 그 이유는 금융 및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많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수 증대가 다른 세금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음
-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은 즉각적인 세수 증대가 가능하고 소득세보다 경제성장 및 경쟁력을 덜 손상하는 것으로 보고됨
- 해당 기간에 25개 국가가 표준세율을 최소 1회 이상 인상함에 따라 OECD 평균 세율이 2008년 1월 17.8%에서 2017년 19.3%로 상승되었고 세율이 22%를 초과하는 국가는 2008년 4개국에서 2017년 10개국으로 증가하였음

50) 본 장은 OECD(2024a), pp. 35~36을 요약 정리한 것임

○ 2017년 이후 기간에는 비교적 세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일본(8%에서 10%, 2019년), 튀르키예(18%에서 20%, 2023년), 에스토니아(20%에서 22%, 2024년). 핀란드(24%에서 25,5%, 2024년), 스위스(7.7%에서 8.1%, 2024년)만이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음

□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중 약 60%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표준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표준세율 평균은 2003년 17.8%에서 2024년 19.3%로 1.5%p 상승하였음

○ 37개 국가 중 2003년 당시 OECD 회원국이 아닌 8개국을 제외한 29개국 중 해당 기간 동안 표준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19개국이고 인하한 국가는 3개국이며 7개 국가는 세율 변동이 없었음

〈표 Ⅳ-1〉 OECD 회원국의 세율 변화

세율변화	대상
2%p 이상 인상	핀란드(22→24%), 독일(16→19%), 그리스(18→24%), 헝가리(25→27%), 아일랜드(21→23%), 이탈리아(20→22%), 일본(5→10%), 룩셈부르크(15→17%), 네덜란드 (19→21%), 뉴질랜드(12.5→15%), 포르투갈(19→23%), 스페인(16→21%), 튀르키예(18→20%), 영국(17.5→20%)
2%p 미만 인상	프랑스(19.6→20%), 멕시코(15→16%), 노르웨이(24→25%), 폴란드(22→23%), 스위스(7.6→8.1%)
세율 인하	캐나다(7→5%), 체코(22→21%), 아이슬란드(24.5→24%)

주: 2003년 대비 2024년의 세율 변화를 나타냄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가 정리

□ 부가가치세 세율구조를 보면, 유럽국가는 대부분 국내거래에 대한 영세율 외에도 경감세율이 있는 복수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51] 비유럽국가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국내거래에 대한 영세율을 제외하면 단일세율 구조를 지님[52]

51) 유럽국가 중에는 덴마크만 영세율 외의 경감세율이 없는 단일세율 구조임
52) 비유럽국가로는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이 해당됨

○ 유럽국가는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표준세율 외에 경감세율과 할증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았고 할증세율은 사치세의 의미가 있었으나 EU 통합과 함께 1992년 이후 할증세율은 모두 폐지되고 경감세율은 유지되고 있는 반면 비유럽국가는 도입 당시부터 단일세율을 적용했다는 차이가 있음[53]

- 일본은 5%의 단일세율을 8%로 인상했다가 다시 2019년 10월 1일부터 표준세율을 10%로 인상하면서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해 비유럽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복수세율 구조를 가진 국가임

□ 2003년에 비해 2024년 현재의 세율 단계가 더 복잡해진 국가는 있어도 더 단순화된 국가는 없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세율구조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3년에 비해 2024년에 수출 등에 대한 영세율을 제외한 세율구조에 변화가 있었던 국가는 모두 8개국임[54]

〈표 Ⅳ-2〉 OECD 회원국의 세율구조 변화

세율구조	대상
2단계	호주(1→2단계), 일본(1→2단계)
3단계	체코(2→3단계), 독일(2→3단계), 네덜란드(2→3단계), 슬로바키아(2→3단계)
4단계	프랑스(3→4단계), 헝가리(3→4단계), 노르웨이(3→4단계), 스페인(3→4단계)
5단계	아일랜드(4→5단계), 그리스(3→5단계)

주: 2003년 대비 2024년의 세율구조 변화를 나타냄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가 정리

53) 정재호(2006), p. 25
54) COVID19 또는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세율은 제외하고 국내거래에 대한 영세율은 포함함

〈표 Ⅳ-3〉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변화

(단위: %)

	도입 연도	2003년		2024년		세율단계 변화	표준세율 변화
		표준세율[1]	경감세율[2]	표준세율[1]	경감세율[2]		
호주	2000	10	-	10	0	1→2단계	변동없음
오스트리아	1973	20	10/12	20	(0)/10/13	3단계 유지	변동없음
벨기에	1971	21	0/6/12	21	0/6/12	4단계 유지	변동없음
캐나다	1991	7	0	5	0	2단계 유지	-2%p
칠레[3]	1975	-	-	19	-	n.a.	n.a.
콜롬비아[3]	1983	-	-	19	0/5	n.a.	n.a.
코스타리카[3]	2019	-	-	13	0/1/2/4	n.a.	n.a.
체코	1993	22	5	21	0/12	2→ 3단계	-1%p
덴마크	1967	25	0	25	0	2단계 유지	변동없음
에스토니아[3]	1992	-	-	22	0/9	n.a.	n.a.
핀란드	1994	22	0/8/17	24	0/10/14	4단계 유지	+2%p
프랑스	1968	19.6	2/5.5	20	2.1/5.5/10	3→4단계	+0.4%p
독일	1968	16	7	19	0/7	2→3단계	+3%p
그리스	1987	18	4/8	24	0/4/6/13	3→5단계	+6%p
헝가리	1988	25	0/12	27	0/5/18	3→4단계	+2%p
아이슬란드	1990	24.5	0/14	24	0/11	3단계 유지	-0.5%p
아일랜드	1972	21	0/4.3/13.5	23	0/4.8/9/13.5	4→5단계	+2%p
이스라엘[3]	1976	-	-	17	0	n.a.	n.a.
이탈리아	1973	20	0/4/10	22	4/5/10	4단계 유지	+2%p
일본	1989	5	-	10	8	1→ 2단계	+3%p
한국	1977	10	0	10	0	2단계 유지	변동없음
라트비아[3]	1995	-	-	21	5/12	n.a.	n.a.
리투아니아[3]	1994	-	-	21	5/9	n.a.	n.a.
룩셈부르크	1970	15	3/6/12	17	3/8/14	4단계 유지	+2%p
멕시코	1980	15	0	16	0	2단계 유지	+1%p
네덜란드	1969	19	6	21	0/9	2→3단계	+2%p
뉴질랜드	1986	12.5	0	15	0	2단계 유지	+2.5%p
노르웨이	1970	24	0/12	25	0/12/15	3→4단계	+1%p
폴란드	1993	22	0/7	23	(0)/5/8	3단계 유지	+1%p
포르투갈	1986	19	6/12	23	6/13	3단계 유지	+4%p

〈표 Ⅳ-3〉의 계속

	도입 연도	2003년		2024년		세율단계 변화	표준세율 변화
		표준세율[1]	경감세율[2]	표준세율[1]	경감세율[2]		
슬로바키아	1993	20	14	20	5/10	2→3단계	변동없음
슬로베니아[3]	1999	-	-	22	5/9.5	n.a.	n.a.
스페인	1986	16	4/7	21	0/4/10	3→4단계	+5%p
스웨덴	1969	25	0/6/12	25	0/6/12	4단계 유지	변동없음
스위스	1995	7.6	0/2.4/3.6	8.1	0/2.6/3.8	4단계 유지	+0.5%p
튀르키예	1985	18	1/8	20	(0)/1/10	3단계 유지	+2%p
영국	1973	17.5	0/5	20	0/5	3단계 유지	+2.5%p
OECD평균		17.8		19.3	7		

주: 1) 표준세율은 매년 1월 1일에 적용되는 세율임
2) 경감세율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됨; 국내공급에 적용되는 영세율은 포함하나 수출 및 대사관 등에 대한 영세율은 포함하지 않음; ( ) 안의 세율은 COVID19 또는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세율임
3) 해당 국가는 2003년 당시 OECD 회원국이 아니었으므로 비교 불가함
자료: OECD(2024a) pp. 78~79; OECD(2005), p. 26

2)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

□ 2024년 현재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5%에서 27%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음[55]

○ 표준세율은 캐나다의 5%[56]부터 스위스 8.1%, 호주, 일본, 한국의 10%,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25%, 헝가리의 27%까지 다양함

○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표준세율은 19.3%이고 37개국 중 13개국은 평균보다 낮고 24개국은 평균보다 높음

- 평균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4개국 중 10개국은 표준세율이 23% 이상임

○ OECD 회원국 중 EU 회원국인 22개국의 평균 표준세율은 21.9%로 OECD 평균 표준세율 19.3%보다 높은 수준임

55) OECD(2024a), pp. 37~38
56) 대부분의 캐나다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5% GST와 함께 특정 판매세 또는 harmonized 판매세를 부과함

□ 2024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27%의 세율을 적용하는 헝가리이고 그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임

○ 한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5%인 캐나다이고 다음으로 낮은 국가는 8.1%인 스위스임

○ 한국과 호주, 일본은 동일하게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세 번째로 표준세율이 낮은 국가에 해당함

□ OECD 회원국 중 유럽국가의 표준세율은 8.1~27%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대부분 20% 이상의 세율인 반면 비유럽국가는 5~19%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유럽국가에 비해 비유럽국가의 세율이 대체로 낮은 수준임

○ 비유럽국가로는 캐나다(5%), 호주(10%), 일본(10%), 한국(10%), 뉴질랜드(15%), 멕시코(16%), 이스라엘(17%), 칠레(19%)가 있음

[그림 Ⅳ-1]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202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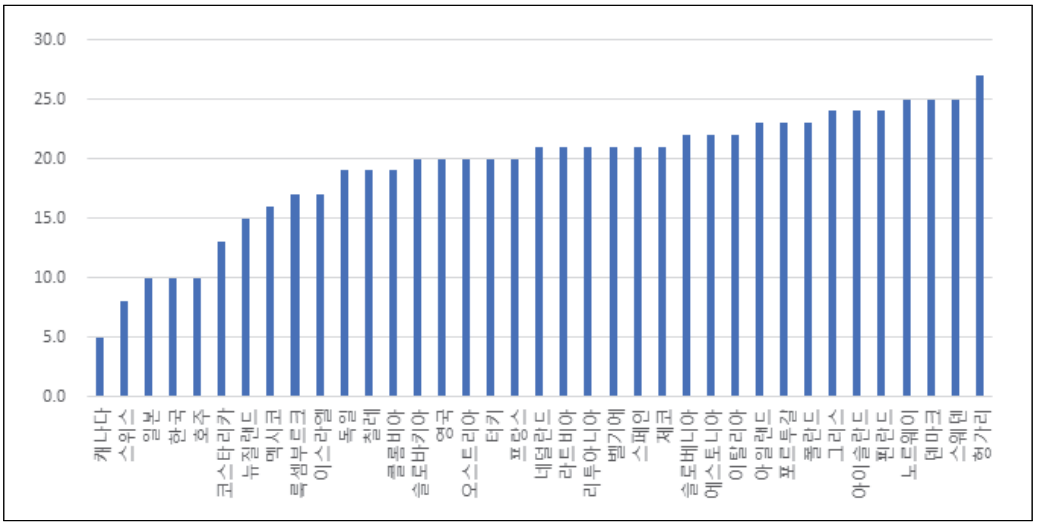

자료: OECD(2024a), p. 37

□ OECD 회원국은 다양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주요 이유는 형평성 증진에 있음[57]

○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지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량 및 물 공급과 같은 필수재 및 필수용역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함

○ 또한 건강 및 의료용품, 교육 및 주택에 대해서도 경감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함

○ 문화와 같이 가치 있는 소비를 장려하거나 관광과 같이 현지에서 공급되는 노동집약적 활동의 촉진을 위해 경감세율을 적용하기도 함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식료품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감세율을 적용하며, 비알코올음료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료품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

- 예외적으로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한국[58], 리투아니아, 뉴질랜드는 표준세율을 적용함
- 폴란드와 스페인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임시조치로 2022~2024년에 일부 기본 식료품에 대해 각각 5%와 4% 대신 0%의 초경감세율을 적용함

○ 보건·위생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는 칠레, 덴마크, 이스라엘, 일본, 한국[59], 뉴질랜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경감세율을 적용함

○ 여객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의 22개국에서 경감세율을 적용함

- 오스트리아, 벨기에,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 장애인의 특정 장비에 대해 다음의 20개국에서 경감세율을 적용함

- 호주,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57) 본 장은 OECD(2024a), pp. 38~41을 요약 정리한 것임
58) 미가공식료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함
59) 의료보건 용역에 대하여 면세함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튀르키예, 영국

○ 민간 또는 사회 주택의 건설·판매·임대·개조·유지보수와 같은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해서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다음의 13개국임

-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체코,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 가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기도 함

○ 도서, 잡지, 쇼, 영화 등의 문화상품에 대해서는 30개국이 경감세율을 적용함

- 예외적으로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한국[60], 뉴질랜드에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도서·잡지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 형식의 출판물에도 적용하지만 덴마크, 슬로바키아, 튀르키예에서는 종이 형식에만 경감세율을 적용함

○ 예술가(화가, 조각가, 작가)가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14개국임

○ 스포츠시설 이용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8개국임

□ 경감세율은 경제의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함

○ 농업 부문은 전통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특별한 제도와 면세를 적용하며 다음의 20개 국가에서에서 농업 투입물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함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한국[61], 룩셈부르크,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60) 도서 등에 대하여 면세함
61) 농업 투입물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 포르투갈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특정 농업 투입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0%(6%가 아닌)의 경감세율을 적용했음

○ 관광업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경감세율을 적용함
- 호텔·숙박업은 26개국에서 경감세율을 적용함(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일본, 한국, 뉴질랜드, 영국만 표준세율 적용)
- 레스토랑 서비스는 16개국에서 경감세율을 적용함(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튀르키예)
-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기간에 일시적으로 레스토랑 서비스(오스트리아, 벨기에,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리투아니아) 또는 호텔(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영국)에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음

○ 그 외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분야는 미용실서비스(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슬로베니아)나 관상용 식물 및 꽃(벨기에,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 스페인 및 스위스) 등 다양함

□ 2021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62]에 대한 임시조치로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요금에 대한 경감세율을 도입하였음

○ 2021년에 스페인은 에너지 요금에 대한 세율을 21%에서 10%로 인하했고 이탈리아는 민간 및 산업 용도와 운송 용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세율을 21%에서 5%로 인하하였음

○ 2022년에 벨기에는 주거용 전기 공급, 가스 및 지역 난방에 대한 세율이 21%에서 6%로 인하되었고, 헝가리에서는 에너지 제품에 대한 세율이 13.5%에서 9%로 인하되었으며, 폴란드에서는 전기 공급에 대한 세율이 23%에서 5%로, 지역난방에 대한 세율이 23%에서 5%로 인하되었음

62) IEA, “What is the behind soaring energy prices and what happens next?”, https://www.iea.org/commentaries/what-is-behind-soaring-energy-prices-and-what-happens-next, 검색일자: 2024. 12. 23.

○ 천연가스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벨기에, 독일[63], 그리스, 아일랜드[64],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영국에서 경감세율을 적용함

○ 난방유에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영국에서, 지역난방에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65],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에서 경감세율을 적용함

○ 전기에는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66],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67], 포르투갈, 튀르키예, 영국에서 경감세율을 적용함

□ 최근에는 환경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경감세율 적용이 증가하고 있음

○ 일부 OECD 회원국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였음

- 2024년 1월 현재 저탄소 국내 에너지 생산 및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과 같은 환경친화적 상품 및 서비스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한 국가는 14개국임
- 여러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주거용 에너지 생산에 경감된 세율을 적용함
- 특정 태양광패널 시스템 구매 및 설치에 대하여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는 영구적인 경감세율을 적용하였고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영국은 일시적인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음
- 히트 펌프 공급 및 설치에 대해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영구적으로, 영국은 일시적으로 경감세율을 적용하였고 건물의 단열에 대해 프랑스는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음

---

63)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
64) 2024년 10월 31일까지 적용
65)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
66) 2024년 10월 31일까지 적용
67) 녹색 전기로 제한되고 특정 지역에서만 적용

-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콜롬비아와 노르웨이(구매 가격이 NOK 500,000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에 한함)에서는 경감세율을 도입하였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는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경감세율을 적용함

나. 면세제도[68]

□ OECD 회원국에서는 경감세율 외에도 면세를 활용하고 있음

○ 면세는 공급자가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결국 관련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권리가 없음을 의미함

○ 일부 국가에서는 면세를 '매입과세(input taxation)'라 하며, 이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은 아니고 면세 공급가격에 숨겨져 있음을 나타냄

□ 부가가치세 과세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OECD 회원국은 다양한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면세를 적용하는 동기는 다음과 같이 다양함

○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분야는 과세기반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 교육, 건강, 우편서비스, 자선단체 분야는 공공서비스 성격이라는 것임

○ 이 외에 부동산 임대 및 토지와 건물의 공급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면세를 적용하는 표준 면세범위는 우편서비스, 환자·부상자의 이송, 병원 및 의료 서비스, 인간 혈액·조직·장기, 치과진료, 자선활동, 교육,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 활동, 스포츠서비스, 문화서비스(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제외), 보험 및 재보험, 부동산임대, 금융서비스, 베팅·복권 및 도박, 토지 및 건물 공급, 특정기금 모금 행사임

68) OECD(2024a), pp. 41~43

□ OECD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면세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과세이나 일부 국가에서 면세하는 경우도 있음

○ 면세가 일반적이나 일부 국가에서 과세되는 용역으로는 우편용역(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튀르키예에서 과세), 베팅 또는 도박(호주,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튀르키예에서 과세), 보험용역(멕시코, 뉴질랜드, 튀르키예, 호주(일부)에서 과세)이 있음

○ 과세가 일반적이나 일부 국가에서 면세되는 서비스에는 승객운송(칠레, 코스타리카, 덴마크,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에서 면세)이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므로 기본적인 의료 및 교육과 마진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음

○ 면세사업자는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을 공급가격에 포함함으로써 세금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누적효과라 함

- 전가된 세금[69]은 이후 부가가치세 시스템에서 공제가 불가능하고 공급가격의 일부가 되어 결과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단계에 따라 숨겨진 세금으로 과세가 이루어짐
- 이는 기업의 생산 결정과 조직 형태 선택을 왜곡하고 추가적인 규정 준수 및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면세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과세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손상시킴

- 수출하는 자가 면세 투입물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 체인의 초기 단계에서 적용된 면세로 인해 발생하는 회수 불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은 결국 '매입과세'가 됨

69) '숨겨진 세금(hidden tax)'이라고도 함

다. 부가가치세 세수

□ 2022년 현재 38개 OECD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한 37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 평균은 2000년 6.3%에서 2022년 7.0%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치를 나타내었음

○ 2000년과 비교해 2022년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은 7개국(벨기에,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위스, 튀르키예)에서 감소하였고, 호주에서는 일정하였으며, 나머지 29개국에서는 증가하였음

○ 2000년 대비 2022년 비율이 비교적 크게 증가한 국가는 일본, 그리스, 라트비아로 각각 2.9%p, 2.7%p, 2.6%p 증가하였음

〈표 Ⅳ-4〉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

(단위: %)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호주	3.4	3.8	3.3	3.6	3.5	3.2	3.4
오스트리아	7.9	7.6	7.7	7.6	7.4	7.6	8.0
벨기에	7.1	6.9	7.0	6.6	6.3	6.7	6.5
캐나다	3.2	3.2	4.2	4.4	4.5	4.6	4.5
칠레	7.8	7.9	7.6	8.4	7.9	9.5	9.3
콜롬비아	4.3	5.2	5.3	5.2	5.4	5.9	6.2
코스타리카	4.8	5.1	4.6	4.4	4.4	5.1	4.9
체코	5.9	6.5	6.5	7.2	7.2	7.3	7.6
덴마크	9.1	9.7	9.3	9.0	9.8	9.5	9.2
에스토니아	8.4	8.0	8.5	8.9	8.8	9.1	9.1
핀란드	8.0	8.3	8.3	9.0	9.2	9.4	9.4
프랑스	7.2	7.2	6.8	6.9	7.0	7.4	7.5
독일	6.7	6.1	7.0	7.0	6.5	7.2	7.5
그리스	6.3	6.7	7.1	7.3	7.8	8.4	9.0
헝가리	8.7	8.2	8.5	9.5	9.7	9.9	10.1
아이슬란드	10.2	10.7	7.4	7.9	8.0	8.5	8.3
아일랜드	7.0	7.3	6.0	4.3	3.3	3.7	3.7
이스라엘	7.2	7.3	7.3	7.7	7.1	7.5	7.4

〈표 Ⅳ-4〉의 계속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이탈리아	6.2	5.7	6.1	6.1	6.0	6.6	7.1
일본	2.3	2.5	2.5	4.1	4.9	5.1	5.2
한국	3.6	3.8	3.9	3.6	4.2	4.3	4.9
라트비아	6.9	7.3	6.6	7.6	8.4	8.6	9.5
리투아니아	7.5	7.1	7.8	7.7	7.9	8.3	8.4
룩셈부르크	4.9	6.0	6.2	5.4	5.7	5.9	6.1
멕시코	2.8	3.3	3.6	3.7	4.1	4.2	4.1
네덜란드	6.4	6.7	6.6	6.4	7.2	7.3	7.1
뉴질랜드	8.1	8.6	9.3	9.5	10.3	10.1	10.0
노르웨이	8.2	7.7	7.7	8.2	9.0	7.8	6.5
폴란드	6.9	7.7	7.6	7.0	8.0	8.6	7.3
포르투갈	7.6	8.2	7.5	8.6	8.4	8.9	9.4
슬로바키아	6.8	7.7	6.1	6.8	7.3	7.5	7.7
슬로베니아	8.5	8.5	8.1	8.3	7.5	8.2	8.2
스페인	5.8	6.2	5.2	6.4	6.3	6.8	7.0
스웨덴	8.2	8.5	9.1	9.0	9.2	9.1	9.4
스위스	3.5	3.5	3.3	3.3	3.2	3.2	3.1
튀르키예	5.7	5.1	5.4	5.1	4.6	5.3	5.0
영국	5.9	6.0	6.1	6.9	6.7	6.9	7.3
OECD 평균	6.3	6.5	6.3	6.5	6.7	6.9	7.0

자료: OECD(2024a), p. 32 Annex Table 1.A.4.; OECD(2023), p. 85 Table 3.14.

□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의 OECD 평균은 2000년 19.6%에서 2022년에는 20.8%로 증가하였음

○ 2000년 대비 2022년 이 비율은 11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위스, 튀르키예)에서 감소하였고, 나머지 26개 국가에서 증가하였음

○ 2000년 대비 2022년 비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라트비아, 헝가리, 일본이며, 각각 6.9%p, 6.4%p, 6.0%p 증가하였음

- 그 외에 이 기간 1%p 이상 증가한 국가는 캐나다(4.2%p), 콜롬비아(4.2%p), 체코(4.6%p), 덴마크(2.5%p), 핀란드(4.3%p), 그리스(3.0%p), 이스라엘(1.5%p),

이탈리아(1.1%p), 리투아니아(2.1%p), 룩셈부르크(2.6%p), 네덜란드(1.3%p), 뉴질랜드(5.4%p), 포르투갈(1.5%p), 슬로바키아(1.6%p), 스페인(1.0%p), 스웨덴(5.7%p), 영국(2.6%p)임

- 해당 기간에 1%p 이상 감소한 국가는 칠레(-2.8%p), 코스타리카(-3.4%p), 아이슬란드(-4.8%p), 아일랜드(-4.7%p), 한국(-1.7%p), 노르웨이(-4.8%p), 스위스(-1.4%p)임

□ 총 조세수입에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큼

○ 2022년 기준으로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은 15% 이하에서(호주 11.5%, 캐나다 13.4%, 노르웨이 15.0%, 스위스 11.6%) 30% 이상(칠레 39.0%, 콜롬비아 31.8%, 라트비아 30.8%, 뉴질랜드 30.3%)까지 다양함

○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37개국 중 21개국은 총 조세수입의 20% 이상을 부가가치세로 충당하고 있음

○ 한국은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이 2022년 기준 15.3%로 OECD 평균인 20.8%에 비해 5.2%p 낮음

- 또한 OECD 평균의 경우 2000년 19.6%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2000년 17%에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표 Ⅳ-5〉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

(단위: %)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호주	11.1	12.9	13.1	12.8	12.4	11.1	11.5
오스트리아	18.7	18.6	18.7	17.7	17.6	17.5	18.4
벨기에	16.1	15.9	16.2	15.0	15.0	16.0	15.3
캐나다	9.2	9.9	13.7	13.3	13.2	13.1	13.4
칠레	41.8	37.8	38.5	40.8	41.1	42.6	39.0
콜롬비아	27.6	28.2	29.3	26.0	28.7	30.5	31.8
코스타리카	22.8	23.3	21.0	19.3	19.7	20.4	19.4
체코	18.3	19.1	20.5	21.7	21.3	21.8	22.9
덴마크	19.5	20.2	20.9	19.6	20.8	20.1	22.0

〈표 Ⅳ-5〉의 계속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에스토니아	27.1	26.9	25.7	27.2	26.7	27.3	27.9
핀란드	17.4	19.9	20.4	20.6	22.1	21.7	21.7
프랑스	16.7	16.7	16.1	15.2	15.4	16.4	16.4
독일	18.4	17.8	19.8	18.8	17.2	18.3	18.9
그리스	18.9	21.1	22.0	20.0	20.1	20.9	21.9
헝가리	22.5	22.6	23.0	24.5	27.1	29.3	28.9
아이슬란드	28.5	27.3	22.8	22.6	22.0	24.4	23.7
아일랜드	22.9	24.2	21.7	19.4	17.2	18.5	18.2
이스라엘	21.0	22.3	24.3	24.8	23.9	23.2	22.5
이탈리아	15.4	14.6	14.5	14.2	14.1	15.7	16.5
일본	9.1	9.5	9.6	13.7	14.9	14.9	15.1
한국	17.0	17.4	17.5	15.3	15.1	14.4	15.3
라트비아	23.9	26.4	23.3	25.6	27.5	28.1	30.8
리투아니아	24.4	24.3	27.5	26.7	25.6	26.0	26.5
룩셈부르크	13.2	16.0	17.3	15.6	14.9	15.4	15.8
멕시코	24.7	29.3	29.4	23.9	23.8	25.2	24.7
네덜란드	17.3	19.2	18.7	17.6	18.5	19.2	18.6
뉴질랜드	24.9	23.8	30.7	30.2	30.6	29.3	30.3
노르웨이	19.8	18.1	18.6	21.3	23.6	19.0	15.0
폴란드	21.0	23.2	24.2	21.6	22.4	23.3	21.1
포르투갈	24.5	26.5	24.8	24.9	23.8	25.2	26.0
슬로바키아	20.4	24.6	21.8	20.8	21.0	21.1	22.0
슬로베니아	22.7	21.6	21.3	22.2	20.2	21.7	21.9
스페인	17.6	17.7	16.5	19.0	17.1	18.1	18.6
스웨덴	16.4	17.9	21.1	20.9	21.6	21.3	22.1
스위스	13.0	13.4	12.7	12.3	11.3	11.3	11.6
튀르키예	24.2	21.8	21.7	20.6	19.2	23.3	24.0
영국	18.1	18.6	19.0	21.7	20.1	20.3	20.7
OECD 평균	19.6	20.2	20.5	20.2	20.2	20.7	20.8

자료: OECD(2024a), p. 32 Annex Table 1.A.4.; OECD(2023), p. 85 Table 3.14.

□ 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가치세 세수율(VAT Revenue Ratio, 이하 'VRR')은 2000년 0.56에서 2022년 0.58로 0.02 증가하였음[70]

○ VRR은 이론적으로 순수한 부가가치세제(Pure VAT Regime)하에서 전체 과세 기반에 표준세율을 적용했을때 세수입과 실제 세수입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책적 요인, 납세순응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괏값임

- VRR은 '실제 부가가치세 수입 ÷ (잠재적 과세 기반 × 표준세율)' 산식에 따라 계산되며, 잠재적 과세 기반은 '총 소비지출(국민계정) - 실제 부가가치세 수입' 값으로 계산함

○ 2022년 OECD 회원국 평균 VRR이 0.58이라는 것은 OECD 회원국에서 평균적으로 이론적 부가가치세 수입의 42%가 징수되지 않음을 의미함

- VRR은 뉴질랜드(0.96), 룩셈부르크(0.84), 한국(0.73) 순으로 높고, 멕시코(0.33), 콜롬비아(0.40), 튀르키예(0.44) 순으로 낮았음

○ 해당 기간에 VRR이 감소한 국가는 35개국 중 13개국(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페인, 벨기에,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뉴질랜드, 튀르키예, 네덜란드, 핀란드)임

- 슬로베니아에서 2000년 0.68에서 2022년 0.57로 가장 크게 감소(△0.11)하였고, 핀란드에서 2000년 0.61에서 2022년 0.60으로 가장 작게 감소(△0.01)함

○ 해당 기간에 VRR이 증가한 국가는 35개국 중 22개국(체코, 룩셈부르크, 한국, 라트비아, 스웨덴, 헝가리, 슬로바키아, 멕시코, 라투아니아, 이스라엘, 덴마크, 칠레, 콜롬비아, 영국, 폴란드,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캐나다)임

- 체코는 2000년 0.42에서 2022년 0.60으로 가장 크게 증가(0.18)하였고, 캐나다는 2000년 0.49에서 2022년 0.50으로 가장 작게 증가(0.01)함

○ 호주의 경우 2020년 소비세를 처음 도입하였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2021년 OECD에 처음 가입하여 각각 2020, 2020~2015년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 호주의 경우 2005년 0.55에서 2022년 0.5로 감소(△0.05), 코스타리카의 경우 2020년 0.45에서 2022년 0.5로 증가(0.05)함

---

70) OECD(2024a), pp. 68~72; OECD(2018), pp. 53~59

〈표 Ⅳ-6〉 부가가치세 세수율(VAT Revenue Ratio, VRR)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호주	-	0.55	0.48	0.49	0.51	0.48	0.50
오스트리아	0.61	0.58	0.58	0.59	0.59	0.60	0.63
벨기에	0.51	0.51	0.49	0.47	0.45	0.50	0.46
캐나다	0.49	0.49	0.48	0.48	0.48	0.50	0.50
칠레	0.64	0.68	0.65	0.66	0.63	0.74	0.71
콜롬비아	0.35	0.42	0.44	0.41	0.34	0.37	0.40
코스타리카	-	-	-	-	0.45	0.52	0.50
체코	0.42	0.56	0.51	0.57	0.56	0.58	0.60
덴마크	0.59	0.62	0.57	0.59	0.65	0.65	0.66
에스토니아	0.71	0.70	0.67	0.71	0.70	0.75	0.73
핀란드	0.61	0.61	0.55	0.54	0.59	0.60	0.60
프랑스	0.51	0.52	0.48	0.48	0.49	0.53	0.53
독일	0.61	0.54	0.53	0.55	0.55	0.57	0.57
그리스	0.45	0.47	0.45	0.39	0.38	0.43	0.47
헝가리	0.52	0.48	0.52	0.59	0.59	0.62	0.62
아이슬란드	0.58	0.61	0.42	0.51	0.46	0.50	0.51
아일랜드	0.61	0.66	0.48	0.48	0.44	0.52	0.51
이스라엘	0.62	0.62	0.66	0.64	0.64	0.70	0.70
이탈리아	0.43	0.39	0.40	0.37	0.38	0.43	0.45
일본	0.68	0.70	0.68	0.73	0.70	0.72	0.72
한국	0.58	0.59	0.62	0.57	0.65	0.67	0.73
라트비아	0.51	0.57	0.42	0.52	0.58	0.59	0.64
리투아니아	0.52	0.52	0.49	0.51	0.56	0.59	0.60
룩셈부르크	0.68	0.82	0.93	0.74	0.79	0.79	0.84
멕시코	0.25	0.27	0.29	0.30	0.35	0.35	0.33
네덜란드	0.57	0.55	0.54	0.48	0.56	0.58	0.55
뉴질랜드	0.99	1.01	1.09	0.95	1.02	0.98	0.96
노르웨이	0.67	0.57	0.56	0.56	0.59	0.60	0.60
폴란드	0.42	0.47	0.47	0.44	0.51	0.56	0.46

〈표 Ⅳ-6〉의 계속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포르투갈	0.60	0.56	0.48	0.50	0.49	0.53	0.56
슬로바키아	0.43	0.61	0.46	0.52	0.51	0.53	0.52
슬로베니아	0.68	0.67	0.59	0.58	0.54	0.58	0.57
스페인	0.52	0.56	0.44	0.43	0.42	0.46	0.47
스웨덴	0.51	0.53	0.57	0.56	0.59	0.60	0.61
스위스	0.73	0.72	0.71	0.69	0.68	0.70	0.69
튀르키예	0.46	0.40	0.41	0.42	0.38	0.47	0.44
영국	0.44	0.44	0.44	0.45	0.44	0.46	0.49
OECD 평균	0.56	0.57	0.54	0.54	0.55	0.58	0.58

주: 1. VRR은 '부가가치세 수입 / [(최종소비지출 - 부가가치세 수입)×표준세율(매년 1. 1 기준)]]로 계산함
2. 캐나다의 경우 연방 부가가치세만 포함하며,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의 경우 최종소비지출-부가가치세 수입 간 회계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정된 값을 반영함
3. 일본의 경우 2014. 4. 1.부터 변경된 표준세율(5%→8%)을 반영하기 위하여 [(5% × 3개월) + (8% × 9개월)] / 12개월 = 7.25%를 반영하여 계산함
4. 독일의 경우 2020.7.1.~2020. 12. 31. 한시적으로 표준세율을 19%에서 16%로 인하하여 [(19% × 6개월) + (16% × 6개월)] / 12개월 = 17.5%를 반영하여 계산함
5. 아일랜드의 경우 2020.9.1.~2021. 2. 28.까지 한시적으로 표준세율을 23%에서 21%로 인하하여 [(23% × 8개월) + (21% × 4개월)] / 12개월 = 22.3%를 반영하여 계산함

자료: OECD(2024a), pp. 111~112; OECD(2018), pp. 90~91

2. 독일

□ 독일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UStG)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71]

○ 이는 EU의 공통 부가가치세 시스템 도입에 따라 1967년 독일이 부가가치세 체제를 개정하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순매출세 방식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며, 이러한 전환은 기존 체제에서의 부정적인 누적효과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음

71) 독일 연방재무부, "100 Jah - re Um - satz - steu - er in Deutsch - land",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2019/12/Inhalte/Kapitel-3-Analysen/3-4-100-jahre-umsatzsteuer.html, 검색일자: 2024. 12. 23.; 김유찬·이유향(2019), p. 4

○ 최초의 부가가치세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 1918년에 도입되었으며 이 당시에는 총매출에 대해 0.5%의 세금을 부과하는 총매출세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 않았음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재화 및 용역의 유상 공급, 제3국(EU 외)에서 국내로 수입, EU 내 취득임[72]

○ 사업자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73]

- 사업자는 상업적 또는 전문적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 상업적·전문적 활동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 활동뿐만 아니라 이익 추구 의도가 없거나 협회·단체 등 인적결합체가 회원을 대상으로만 수행하는 활동도 포함함

○ 다만 전년도 총 공급대가가 25,000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당해 연도 총 공급대가가 10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74]

□ 2022년 기준 독일의 총 조세수입에서 부가가치세 수입은 18.9%를 차지하며, 사회보장기금, 소득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75]

○ 이는 2000년(18.4%)에 비해 0.5%p 증가한 수치임

○ 총 조세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36.9%), 소득세(26.9%), 부가가치세(18.9%),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8.5%), 법인세(6.0%), 재산세(2.8%) 순으로 구성됨

-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에는 미네랄오일, 담배 등 특정 항목에 부과하는 소비세가 있음

□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입 비율은 2022년 7.5%로 2000년(6.7%)에 비해 0.8%p 증가하였음[76]

---

72) UStG §4; UStG §15 (1)

73) UStG §1, §2

74)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19조; Smartsteuer, “Kleinunternehmer”, https://www.smartsteuer.de/online/lexikon/k/kleinunternehmer/, 검색일자: 2025. 2. 7.

75) OECD(2024b), p. 15, pp. 195~197

가. 세율

1)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

□ 독일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에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한 특정 항목에 적용되는 경감세율로 이루어져 있음[77]

○ 현행 세율의 표준세율은 19%이며, 경감세율은 7%와 0%임

- 경감세율 적용 품목과 표준세율 적용 품목의 구분은 주로 EU의 통합품목분류(CN)와 독일 관세법상 관세율표(Zolltarifs)에 따라 결정됨[78]
- 관세율표는 품목 종류별로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각 품목을 장, 항목,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한 공식 분류체계임

□ 독일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968년에 10%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인상되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9%로 유지되고 있음[79]

○ 가장 최근의 표준세율 개정은 2007년에 시행된 3%p 인상으로 이는 실업보험료율 인하와 재정 건전화 등 정책적 목적에 따른 조치였음[80]

□ 경감세율은 사회, 문화, 농업, 교통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절반인 5%였으며 이후 표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함께 인상

---

76) OECD(2024b), p. 69

77) UStG §12 (1)-(3)

78) Bundesrechnungshof(2022), p. 11; Zoll, "Informationen zum Zolltarif und zur Ermittlung der Codenummer", https://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tarif/Informationen-Zolltarif-Codenummer/informationen-zolltarif-codenummer.html, 검색일자: 2025. 2. 13.

79) 독일 연방재무부, "BMF Amtliche Umsatzsteuer-Handausgabe 2023, §12 Steuersätze", https://usth.bundesfinanzministerium.de/usth/2023/A-Umsatzsteuergesetz/IV-Steuer-und-Vorsteuer/Paragraf-12/inhalt.html, 검색일자: 2024. 12. 23.

80) 독일 의회, "Mehrwertsteuer um drei Prozent erhöht", https://webarchiv.bundestag.de/archive/2006/0606/dasparlament/2006/21/PlenumundAusschuesse/003.html, 검색일자: 2024. 12. 23.; https://webarchiv.bundestag.de/archive/2008/1114/aktuell/hib/2006/2006_151/01.html; 홍성훈·성명재(2013), pp. 48~50

되다가 1983년부터 7%로 유지되고 있음[81]

○ 또한 1967년 부가가치세제가 순매출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표준세율이 인상되자 물가 상승을 방지하고 기본 생필품과 대중교통 등 특정 항목의 가격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었음

□ 대부분의 경감세율 대상은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82]

○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로 경감세율 대상에 포함됨[83]

- 예술품, 수집품, 전자적 형식으로 제공되는 도서, 신문 및 기타 인쇄물, 여성용 생리 위생제품, 식당 및 케이터링 서비스, 천연가스 공급 및 열 공급 등

○ 「EU 부가가치세 지침」 위반으로 경감세율 적용이 제한되기도 함(예를 들어 식품 및 사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살아 있는 말[84], 예술품 및 수집품[85])

○ 「EU 부가가치세 지침」 개정으로 2030년부터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배출 품목에 경감세율 적용이 금지됨에 따라 난방용 장작에 대한 경감세율을 폐지할 예정임

□ 2022년 4월 5일 「EU 부가가치세 지침」 개정에 따라 회원국은 5% 미만의 특별세율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독일은 같은 해 세법 개정을 통해 0%의 경감세율을 새로 마련함[86]

○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 세율 0%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개인주택, 공공건물 및 공익활동을 위한 기타 건물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함

---

81) Bundesrechnungshof(2010), p. 6

82) Bundesrechnungshof(2010), pp. 21~26

83) 식당 및 케이터링 서비스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 규정으로 도입되었다가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천연가스 및 열 공급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됨

84) 2012년 7월 1일부터 경감세율 적용이 폐지됨

85)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경감세율 적용이 제한됨

86) UStG §12 (3); UStAE 12.18; 독일 연방재무부, "FAQ Umsatzsteuerliche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Ausbaus von Photovoltaikanlag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FAQ/foerderung-photovoltaikanlagen.html, 검색일자: 2024. 12. 24.

〈표 Ⅳ-7〉 독일: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

(단위: %)

적용기간	일반세율	경감세율
1968. 1. 1. - 1968. 6. 30.	10	5
1968. 7. 1. - 1977. 12. 31.	11	5.5
1978. 1. 1. - 1979. 6. 30.	12	6
1979. 7. 1. - 1983. 6. 30.	13	6.5
1983. 7. 1. - 1992. 12. 31.	14	7
1993. 1. 1. - 1998. 3. 31.	15	7
1998. 4. 1. - 2006. 12. 31.	16	7
2007. 1. 1. - 2020. 6. 30.	19	7
2020. 7. 1. - 2020. 12. 31.[1)]	16	5
2021. 1. 1. - 2022. 12. 31.	19	7
2023. 1. 1. - 현재	19	7 / 0

주: 1) 소비 활성화 및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이 인하되었음(표준세율은 19%에서 3%p 인하된 16%를, 경감세율은 7%에서 2%p 인하된 5%를 적용함)

자료: 독일 연방재무부, "BMF Amtliche Umsatzsteuer-Handausgabe 2023, §12 Steuersätze", https://usth.bundesfinanzministerium.de/usth/2023/A-Umsatzsteuergesetz/IV-Steuer-und-Vorsteuer/Paragraf-12/inhalt.html, 검색일자: 2024. 12. 23.; 독일 연방재무부, "Die Mehrwertsteuer sinkt-wichtige Fragen und Antworten",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faq-mehrwertsteuersenkung-1764364, 검색일자: 2024. 12. 24.

2) 경감세율 대상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 원칙적으로 모든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특정 재화 및 용역에는 경감세율을 적용함

○ 경감세율 적용은 예외규정으로 유럽연합법원(Gerichtshof der Europäischen Union, EuGH)과 독일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 BFH)의 일관된 판례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87)]

□ 독일 부가가치세법 §12에 열거된 경감세율 대상은 다음 표와 같음[88)]

87) Bundesrechnungshof(2010), p. 5

88) UStG §12 (2); 김유찬·이유향(2019), p. 33; 정다운·이성현·이서현(2020), pp. 89~92

○ 7%의 경감세율 대상에는 대부분의 식료품, 특정 의료기기, 예술품, 문화용역, 대중교통 등이 있음

○ 0%의 경감세율 대상은 태양광 모듈, 태양광 발전 설비 운영에 필수적인 구성품 및 태양광 모듈로 생산된 전력의 저장장치임

〈표 Ⅳ-8〉 독일: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대상

◎ 7% 경감세율 대상

번호	내용
1	「부가가치세법」 〈부록 2〉에 열거된 재화의 공급, 수입 및 EU 역내 취득 〈부록 2〉 ·식료품(과일·채소주스, 우유가 75% 미만인 혼합음료, 바닷가재, 굴 등 제외) ·구근류, 식물류, 화훼류, 약초류 ·곡물의 건초, 사료용 식물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화학처리된 것 제외) ·장작, 톱밥 등 목재와 그 부산물 ·도서, 신문 및 기타 인쇄물(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해매체로 제한되거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광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외) ·휠체어 및 기타 장애인용 운송수단 ·인체보철물, 정형외과용 장치 및 기능손상이나 장애보완장치(인공관절, 목발 등) ·예술품: 완전히 손으로 제작된 그림·드로잉 등 미술작품, 원본 판화·조각·석판화, 조각예술의 원작을 말함 ·수집품: 동물학적, 식물학적, 광물학적 또는 해부학적 표본, 역사적, 고고학적, 고생물학적, 민속학적, 화폐학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함 ·생리위생용 제품 ·기타 열거 항목
2	「부가가치세법」 〈부록 2〉에 열거된 재화의 임대
3	가축 사육·유지, 위탁식물재배 및 동물 검정
4	번식용 가축 사육, 축산 촉진, 인공 수정 또는 축산 및 낙농업에서의 성능 및 품질 검정과 직접 관련된 활동
5	삭제됨(자유직업인의 자유직업활동)[1]
6	치과기공사로서의 활동, 치과의사가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치과보철물, 치과교정장치의 제작 또는 복원
7	a) 극장, 콘서트 및 박물관 입장권, 극장 공연 및 콘서트에 준하는 예술가의 공연 b)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 영화 또는 1970년 1월 1일 이전에 초연된 영화의 상영 c)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설정, 이전 및 행사 d) 서커스 공연, 동물원 운영과 직접 관련된 거래

〈표 Ⅳ-8〉의 계속

◎ 7% 경감세율 대상

번호	내용
8	공익, 자선 또는 종교적 목적[2]만을 독점적·직접적으로 추구하는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의 활동(경제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활동 제외)
9	수영장[3], 치료목적의 온천욕, 요양세가 부과되는 요양시설
10	지방자치단체 내 운행 또는 운송거리 50km 이내의 철도, 전차, 허가 자동차·선박 노선 교통, 택시, 케이블카 등 기계적 승강장치, 페리 교통을 통한 여객 운송
11	단기 숙박시설 임대
12	삭제됨(수집용 우표, 예술품 및 수집품 수입)
13	삭제됨(예술품의 공급 및 EU 역내 취득으로 저작자 또는 그 법적 권리 승계자가 해당 공급을 수행할 때나 재판매 목적이 없는 사업자가 해당 공급을 수행하는 경우)
14	도서 등 인쇄물, 음성기록매체의 전자적 형태의 제공(전부 또는 대부분이 비디오 콘텐츠 또는 청각음악으로 구성된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해 매체로서 제한이나 경고 의무가 있는 경우, 전부 또는 대부분이 광고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 제외)
15	일몰규정(2020. 7. 1.~2023. 12. 31.까지 공급되는 식당 및 케이터링 용역(음료 제외))

◎ 0% 경감세율 대상

태양광 모듈, 태양광 발전 설비 운영에 필수적인 구성품 및 태양광 모듈로 생산된 전력의 저장장치의 공급, 역내 취득, 수입으로서 주택, 공공건물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건물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함

주: 1. 표의 번호는 독일 부가가치세법 §12 (1)의 각 호에 따른 구분임

1) 1982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모든 자유직업인의 자유직업활동(예: 법률·행정, 기술·건축, 경제·회계, 언론·언어 등)에 대한 감면세율 적용을 폐지함. 개정취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감면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사업자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자유직업인 및 본질적으로 자유직업인인 사업자의 거래에 대한 감면세율 적용을 폐지함. 이는 경감세율 적용 구분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부가가치세법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Deutscher Bundestag, “Zweites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https://dip.bundestag.de/vorgang/.../205742, 검색일자: 2025. 2. 6.)

2)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51-68에 따른 공익, 자선 또는 종교적 목적을 의미함. 법인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이타적 활동(예: 과학·연구 지원, 종교 지원, 청소년·노인복지 지원, 예술·문화 지원, 문화재 보호·관리 지원, 교육 지원, 환경보호 지원, 사회복지 지원, 정치적·인종적·종교적 박해를 받은 자 지원, 생명구조)은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봄

3) 체육시설로서 레인, 출발대, 수심 또는 크기 등이 설계된 수영장을 의미하며 휴양시설로 간주되는 수영장은 제외함

자료: 독일 부가가치세법 §12

□ 독일에서 오늘날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주로 어떤 재화와 용역에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할지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고 있음[8][9]

□ 2010년 회계감사원은 경감세율 적용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감세율 목록의 체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아가 세율 차별화보다 직접보조금, 직접세 조정, 사회적 이전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평가함[90]

○ 경감세율 적용은 표준세율과의 경계 설정이 어렵고 남용을 초래하며 이를 해결하는 데 막대한 감독 및 행정 비용이 소요됨

- 예를 들어 인공 관절 및 의족에는 경감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부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제외되는데, 이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있었으며 기술 발전과 실무 변화로 부품의 특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표준세율과 경감세율 간의 경계 설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일부 경감세율 대상은 도입 취지가 변화된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일부 경감세율 대상은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위반되는 위험이 있음

○ 경감세율 혜택이 최종소비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움

- 세율이 상승하면 사업자는 가격에 최대한 반영하려 하고 세율이 하락하면 가격 인하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음

□ 2022년 회계감사원은 2022년 4월 5일 「EU 부가가치세 지침」의 세율 규정 개정으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법적 틀이 확립됨에 따라, 재무부가 지연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하며 다음 사항을 제안하였음

○ 경감세율 목록의 검토, 항목별 평가 그리고 정기적 성과 점검이 필요함

- 경감세율 적용은 예외적인 조치로, 기본적인 생계와 관련된 분야(예: 식품 항목)에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적용 범위 제한이 세수 확보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함

- 경감세율로 인한 연간 세수 손실은 약 350억유로에 달하며 이는 마지막 평가가 이루어진 2010년에 비해 100억유로가 증가한 수치임

---

89) 독일 연방재무부, “100 Jah - re Um - satz - steu - er in Deutsch - land”,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2019/12/Inhalte/Kapitel-3-Analysen/3-4-100-jahre-umsatzsteuer.html, 검색일자: 2025. 1. 15.

90) Bundesrechnungshof(2010); Bundesrechnungshof(2022); Deutscher Bundestag(2010)

○ 경감세율이 최종소비자 혜택을 목표로 하지만, 감면이 반드시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으므로 세율 인하 효과를 보장하려면 직접 지원이나 사회적 이전 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감세율 적용 범위 확대와 특별세율 도입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도록 권고함

나. 면세제도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사회적, 문화적 또는 기타 이유로 도입되었으며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목적[91]도 포함됨[92]

○ 면세제도는 특정 산업 또는 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경쟁의 평등을 보장하고 세제 단순화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개정되어 왔음

- 예를 들어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민간의 환자 이송 서비스에 면세(1979년)하고 승인 공공 카지노의 매출을 민간 도박사업자와 동일하게 면세를 폐지(2006년)함

○ 또한 「EU 부가가치세 지침」과 독일 연방재정법원 판례에 따라 경쟁 중립성 강화와 법 적용 용이성 개선을 위해 개정되어 왔음

-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사회보장법에 따라 허가된 유사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학적 치료와 이와 밀접하게 관련한 용역에 면세(2009년)하고 학교 및 대학교육 외에 직업교육·재교육과 개인교사가 제공하는 학교 및 대학교육에 면세(2024년)함

□ 면세 대상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권 유무에 따라 완전면세 대상과 부분면세 대상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93]

○ 완전면세 대상에 속하는 항목들의 경우 면세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권이 있음[94]

---

91)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수출품에 면세를 적용하며, 완전면세를 위해 면세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92) Deutscher Bundestag(2010), p. 4, pp. 10~11

93) UStG §15 (1)-(3); 김유찬·이유향(2019), p. 47; Meissner·Nesser(2017), p. 88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면세 대상에는 수출, 국경 간 수출물품 운송, 특정 금융용역,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 거래 등이 포함됨

○ 부분면세 대상에 속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면세'라고 불리는 거래로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함

- 금융·보험용역, 의료용역, 교육용역, 국가 등이 제공하는 예술·문화 공연, 부동산거래 등이 이에 해당함
- 특히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개인교사가 제공하는 학교 및 대학교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데 이는 개인교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의미함[95]
  - 관련 판례에 따르면 개인교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목적이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학교 및 대학교육'에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교사와 교육생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교사가 업무불가 시 보수 지급권이 없고 보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등 자신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면세할 수 있음

□ 한편 특정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과세 전환은 해당 면세거래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수행될 때만 가능함[96]

---

94)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는 사업용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으나, UStG §15 (3)에 따라 수출거래 등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함

95) HAUFE, "Ist der Unterricht eines "Privatlehrers" an eine Bildungseinrichtung steuerfrei?", https://www.haufe.de/recht/deutsches-anwalt-office-premium/ist-der-unterricht-eines-privatlehrers-an-eine-bildungseinrichtung-steuerfrei_idesk_PI17574_HI1769558.html, 검색일자: 2025. 2. 10.; HAUFE, "FG Berlin-Brandenburg Beschluss vom 26.03.2013 - 7 V 7361/12", https://www.haufe.de/finance/haufe-finance-office-premium/fg-berlin-brandenburg-beschluss-vom-26032013-7-v-736112_idesk_PI20354_HI3740132.html, 검색일자: 2025. 2. 10.

96) IBFD, "German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8. Exemptions (Last Reviewed: 15 February 2025)", HYPERLINK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

○ 면세 포기가 가능한 면세 거래는 다음과 같음

- 금융용역(§4 (8) a)-g))
  · 다만 자본투자법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사업 관리, 대체투자펀드 관리, 보험감독법에 따른 연금펀드 관리, 우표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 거래로 처리할 수 없음
-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 부동산 임대, 부동산 양도
- 주택소유법에 따라 주택소유공동체가 주택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공유재산의 이용 제공, 유지 관리, 난방 용역 등)
- 시각장애인 사업자의 공급

[그림 Ⅳ-2] 독일: 부가가치세법 면세거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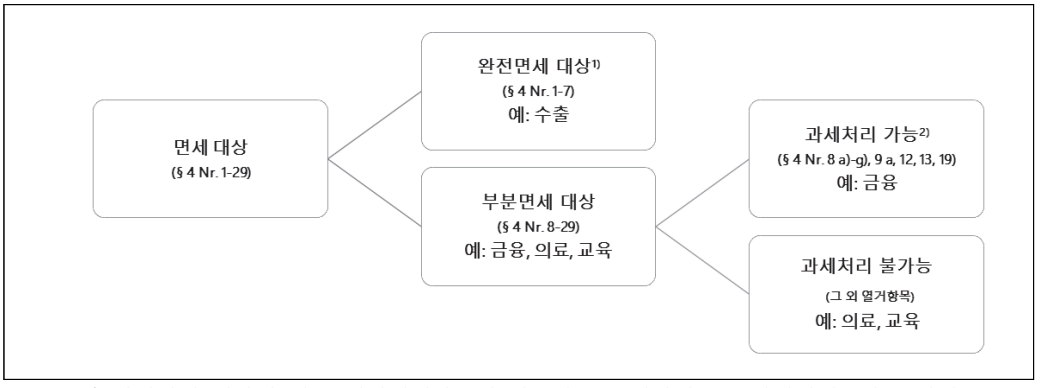

주: 1) 완전면세 대상의 경우 매입세액환급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완전면세효과를 가짐
2) 면세 대상 중 금융용역 등에 대해 면세 적용을 포기하고 과세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자료: Meissner·Nesser(2017), p. 88

□ 독일 부가가치세법 §4에서 열거하는 면세 대상은 다음 표와 같음[97]

○ 표의 1~7번 면세거래는 완전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항목들은 면세 대상 중에서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evat_de_s_8.&refresh=1744846557560%23evat_de_s_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de_s_8.&refresh=1744846557560%23evat_de_s_8., 검색일자: 2025. 2. 20.

97) UStG §4; 김유찬·이유향(2019), pp. 47~54

〈표 Ⅳ-9〉 독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번호	내용
1	재화의 수출, 수출물품의 임가공 용역, EU 역내 공급
2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
3	국경 간 수출물품 운송 용역 등
4	중앙은행에 대한 금의 공급
4a-c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또는 보관 중인 재화의 공급 등
5	여객기 또는 여객선에 의한 국외 운송의 주선, 역외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중개 등
6a-e	특정 국경 간 운송 서비스, 연방철도회사의 특정 공급 등
7	독일 및 EU 회원국 내 외국 NATO 군대에 대한 공급
8	a) 신용대출 및 중개 b) 법정 화폐 공급 및 이의 중개(다만 금속함량이나 수집가치 기준으로 환가되는 거래는 제외함) c) 채권, 수표 및 기타 상업어음 판매 및 이의 중개(다만 채권 추심은 제외함) d) 예금, 당좌예금, 지급 및 이체와 상업어음 추심 관련 판매 및 중개 e) 유가증권 판매 및 이의 중개(다만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는 제외함) f)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지분 판매 및 이의 중개 g) 채무, 보증 및 기타 담보 인수와 이의 중개 h) 자본투자법 제1조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사업의 관리, 대체투자펀드 관리, 보험감독법에 따른 연금펀드 관리 i) 국내에서 액면가액으로 통용되는 공식 유가증권(관제우표 및 인지류 등) j), k) 삭제됨
9	a) 부동산취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공급 b) 경마복권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공급(다만 경마복권법에 따라 면세되거나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10	a) 보험세법에 따른 보험계약에서 제공되는 용역(보험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보험대가 지급에도 이를 적용함) b) 타인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용역
11	주택저축은행 대리인, 보험대리인 및 보험중개인이 수행하는 용역
11a-b	독일 연방우정청 및 독일전신전화주식회사의 전화회선 및 통신망 설치(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행한 것), 독일우편주식회사의 우정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 등
12	a) 부동산(Grundstück),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이용과 관련한 공적 권리의 임대 b)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사전계약 포함)에 따라 부동산 및 부동산 일부의 양도 c) 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의 설정, 이전 및 양도 · 다만 단기체류를 위해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거주 및 침실 공간의 임대, 주차장 임대, 단기 캠핑장 임대 및 영업시설에 속하는 기계 등 모든 유형의 사업설비(부동산의 본질적 구성 요소인 경우더라도)의 임대는 면세하지 않음
13	주택소유법에 따라 주택소유공동체가 주택소유자 및 부분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거래(공유재산의 이용 제공, 유지 관리, 난방)

〈표 Ⅳ-9〉의 계속

번호	내용
14	a) 의사, 치과의사, 대체의학전문가, 물리치료사, 조산사 또는 이와 유사한 의료 직업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인간의학 분야의 의료행위(다만 치과 보철물 및 치아교정기구가 해당 사업장 내부에서 제작·수리되는 경우는 제외함)[1)] b) 공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사회보장법 등에 따라 허가된 기관의 치료, 진단, 소견작성, 예방, 재활, 산모 지원, 호스피스 서비스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 · 의료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된 병원에서 법정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 서비스(예: 전문의 치료, 개인병실 이용)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됨 c) 사회보장법에 따라 계약체결기관이 제공하는 입원형 요양시설의 외래 진료 활동 등 d) 삭제됨 e)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사, 공공법인 병원, 사회보장법에 따라 허가된 기관 등이 제공하는 병원 내 감염예방, 내성병원체 확산방지 목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f) 공공법인, 사회보장법에 따른 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중보건 증진과 밀접하게 관련된 용역
15, 15a-c	·법정 사회보험공단, 특정지역 법정 사회보조금담당기관, 보훈행정기관의 상호 거래, 피보험자·사회보험 수혜자·보훈대상자에 대한 거래 · 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의료보험 및 연방 의료보험 기관의 의료용역으로, 이들 상호 간의 거래와 법정 사회보험기관과 그 소속단체에 제공하는 용역 · 사회보장법에 따른 통합지원서비스, 고용촉진활동 및 공법 기관 또는 사회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성격을 가진 기타 기관의 유사 활동 · 공법 기관 또는 사회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성격을 가진 기타 기관의 사회보장법에 따른 직업재활 활동
16	공공법인, 사회보장법 등에 따른 기관이 제공하는 신체적, 인지적 또는 정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돌보거나 간호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
17	인체기관, 인간혈액 및 모유 공급, 환자 및 부상자 운송용 특수차량으로 환자 및 부상자의 이송 서비스
18, 18a	· 공법기관 또는 체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타 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다만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분배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유지 및 개선에 사용되어야 함) · 정당의 독립적 하부 조직 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당 활동이 정관에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서 비용 보전 방식으로 수행되며 해당 정당이 정당법에 따라 국가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
19	a) 2인 이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인 사업자의 공급(이때 배우자(등록 동거인), 미성년 자녀, 부모, 견습생은 근로자로 보지 않음). 다만 알코올 제품 공급 등 특정 사업은 제외함 b) 승인 시각장애인 사업장 및 그 연합체에서 전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수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표 Ⅳ-9〉의 계속

번호	내용
20	a)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의 다음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출: 극장, 교향악단, 실내악 앙상블, 합창단, 박물관[2], 식물원, 동물원, 기록보관소, 도서관, 건축·조경예술기념관 b) 관할당국이 상기 기관의 예술적 용역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인증한 다른 사업자가 a)에서 언급된 극장, 교향악단, 실내악 앙상블 또는 합창단에서 수행하는 승인 공연 사업자가 연극 공연 및 콘서트를 개최하는 경우, a)에서 언급된 극단, 교향악단, 실내악 앙상블 또는 합창단이 해당 공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21	a) 공법기관, 사립학교 및 기타 일반교육·직업교육 시설의 학업 및 교육 목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공급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aa) 해당 시설이 독일 기본법에 따라 대체학교로 승인을 받았거나 주(州) 법에 따라 허가된 경우 · bb) 해당 시설이 학교 교육, 대학 교육, 직업훈련[3], 재교육(Fortbildung), 직업훈련을 제공함을 관할 주(州) 당국이 증명한 경우 b) 자영업교사가 제공하는 학교 및 교육 목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교육 용역으로서 다음에서 제공하는 경우 · aa) 대학기본법에 따른 대학, 공립학교(일반교육 또는 직업교육) · bb) 일반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사립학교와 기타 기관으로 제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 개인교사가 제공하는 학교 및 대학교육
21a	삭제됨(주립대학의 연구 활동)
22	a) 공법에 따른 법인, 행정·경제아카데미, 시민대학 또는 공익목적이나 직업단체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이 개최하는 학문적·교육적 성격의 강연, 강좌 및 기타 행사(수익이 주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b) a)에 명시된 사업자가 주최하는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으로 그 대가가 참가비로만 이루어진 경우
23	a) 공법기관 또는 체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타 기관(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분배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유지 및 개선에 사용되어야 함)이 제공하는 아동 및 청소년(27세 미만)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b) 공법기관 또는 승인 사회시설이 제공하는 아동 및 청소년(27세 미만) 돌봄과 밀접하게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c) 공법기관 또는 체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타 기관(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분배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유지 및 개선에 사용되어야 함)이 유치원, 학교, 대학교, 승인 직업학원, 공립학교, 허가 대체학교, 승인 보완학교 및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 숙박 및 통상적 현물지급

〈표 Ⅳ-9〉의 계속

번호	내용
24	독일 청소년연맹 및 그 하위 단체, 시설 및 청소년호스텔 등이 정관에 따라 제공하는 활동(숙박, 식사, 통상적 현물지급)
25	공공청소년복지기관 또는 사회적 성격을 가진 기관(승인 민간청소년복지기관, 교회 등)이 제공하는 청소년복지법에 따른 청소년 복지·보호 활동, 입양중개용역,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숙박·식사·통상적 현물지급, 법적 보호 및 후견인 활동
26	a) 공법인을 위해 수행되는 자원봉사활동 b) 해당 활동에 대한 대가가 오로지 경비 보전 및 시간 투입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7	a) 종교단체의 구성원이 복지·자선·교회 또는 교육 목적으로 수행하는 봉사 b) 사법상 또는 공법상 법인(예: 등록협회 또는 조합)이 질병, 사고, 임신,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력공백이 발생한 최대 3명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농·임업 사업장과 법정 사회보험기관에 제공하는 인력 지원
28	제15조 제1a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재화의 공급 또는 제8호부터 제27호 및 제29호에 따른 면세 활동에 전적으로 사용한 재화의 공급
29	국내의 독립적 인적 단체가 공공복지에 기여하는 비영리활동이나 Nr. 11b, 14-18, 20-25, 27에 따라 면세되는 의료·교육·문화 활동 등을 국내 거주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회원이 해당 용역을 직접적으로 위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 · 독립적 인적 단체는 회원에게 공동 비용의 정확한 분담금만 청구함 · 이러한 면세가 경쟁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주: 1. 표의 번호는 독일 부가가치세법 §4의 각 호에 따른 구분임
2. 표의 1~7번은 완전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항목들은 면세 대상 중에서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1) 의학적 연구·강의·교육 활동, 의료기기 대여, 일반적인 신체검사, 미용 목적의 치료(예: 성형수술) 등은 면세되지 않음
2) 박물관은 과학적 수집품 및 예술적 수집품을 의미하며 일반 대중이 감상할 수 있고 문화 및 교육적 목적에 기여하는 예술 전시회도 포함됨.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상업적 목표를 추구하는 전시회는 박물관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판매가 부수적인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함
3) 운전학원은 일반적인 교양 교육기관이나 직업 교육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특정 운전면허 등급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직업교육 성격을 가진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면세할 수 있음. 또한 발레나 무용학원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을 제공하고 단순히 여가활동(예: 자녀의 무용수업 중 대기하는 부모대상 수업, 노인이나 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대상 수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할 수 있음

자료: 독일 부가가치세법 §4; 독일 부가가치세법 적용지침 §4

3. 프랑스

□ 프랑스는 1954년에 종전부터 시행하던 종합생산판매단일세를 폐지하고 ‘산업 또는 상업거래’와 ‘용역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음[98]

○ 종전에 적용하던 종합생산판매단일세는 중간 단계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만 과세하는 방식이었으나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전단계매입세액공제 규정을 둠

- 세율은 ‘산업 또는 상업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세율 16.85%와 경감세율 7.5%를 적용하고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8.5%를 적용하였음

○ 그러나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종소비자 단계에서만 과세하고 있었고 1966년 1월 6일 법률 n°66-10에 의해 현재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프랑스의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이면서 부가가치 계산 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음[99]

○ 납세의무자는 법적 지위 및 형태와 관계없이 프랑스에서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임[100]

- 경제활동이란 생산자, 상인 및 농업, 전문활동(변호사 공증인 등)과 채굴(광산) 활동을 포함한 서비스 공급의 모든 활동을 포함함
-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기 위해 유형 및 무형자산을 개발하는 것도 경제활동에 포함함
- 공공기관은 행정, 사회 및 문화 서비스, 연구 및 교육,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자로 취급되지 않지만,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정 공급은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됨[101]

---

98) 안창남·손승연(2019), pp. 8~9

99) 안창남·손승연(2019), pp. 15~16

100) CGI 제256A조; 안창남·손승연(2019), p.23; IBFD, “13. Value Added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fr_s_013.html. 검색일자: 2024. 12. 12.

○ 과세대상자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상품 및 서비스 인도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됨[102]

-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려면 재화 및 용역을 반복적으로 공급해야 함

□ 이전 회계연도의 매출이 다음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않는 경우 납부면제(franchise en base)가 적용됨[103]

○ 납부면제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세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표준규칙[104]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받기를 선택하지 않는 한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 납부면제제도는 이전 회계연도의 매출이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됨[105]

- 물품 공급 및 숙박업을 하는 경우: 91,900유로
- 다른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36,800유로
- 변호사, 작가, 공연자 및 저작권을 받는 등 규제되는 활동의 경우: 47,600유로
- 규제되지 않는 활동의 경우: 19,600유로

□ 2022년 기준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은 16.4%이고 국내총생산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은 7.5%임[106]

---

101) CGI 제256B조; 특정 공급에는 가스 및 전기 공급, 인적 운송, 물품 보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케이블 전송, 통신 서비스가 포함됨

102) CGI 제256조; IBFD, “France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 Value Added Tax (Last Reviewed: 10 October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fr_s_013.html, 검색일자: 2025. 1. 13.

103) IBFD, “France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 Value Added Tax (Last Reviewed: 10 October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fr_s_013.html, 검색일자: 2025. 1. 13.; stripe, “The basic VAT exemption regime in France“, https://stripe.com/in/resources/more/basic-vat-exemption-regime-france, 검색일자: 2025. 2. 12.

104) CGI 293B조 ~ 293F조

105) 금액은 2023, 2024, 2025년 기준임

106) OECD(2024b), p. 15, p. 69

○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은 2000년(16.7%)에 비해 0.3%p 감소한 수치임

- 총 조세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32.4%), 소득세(21.2), 부가가치세(16.4%),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9.7%), 재산세(8.1%), 법인세(6.2%) 순으로 구성되어, 부가가치세는 조세수입 항목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국내총생산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은 2000년(7.2%)에 비해 0.3%p 증가하였음

□ 프랑스의 의무부담금위원회(Le Conseil des prélèvements obligatoires, CPO)는 2023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107)]

○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제는 EU 지침에서 제공하는 가능성을 거의 모두 활용하여 약 100가지 범주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조세지출은 2001년 93억유로에서 2022년 170억유로로 두 배로 증가하였고 이는 주택개보수, 개인지원용역, 상업적 외식업에 대한 경감세율 정책이 주요 원인임

○ 실제로 프랑스는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표준세율 과세 기반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음

○ 경감세율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며, 비용이 목표 달성에 필요했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 따라서 경감세율을 대신할 다른 정책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최소한 기존 경감세율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비효율적인 경감정책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107) CPO(2023), pp. 32~39

가. 세율

1)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

□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경감세율 및 영세율로 구성됨[108)]

○ 표준세율은 20%로,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 판매에 적용되며 인하된 세율 및 영세율을 제외한 과세공급이 대상임[109)]

○ 경감세율은 10%(중간세율), 5.5%(경감세율), 2.1%(초경감세율)의 3단계 세율임

○ 수출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세율 변화를 보면, 현재의 부가가치세제의 틀을 갖춘 1968년 당시에는 표준세율(16.66%)보다 높은 할증세율(20%)이 있었고 중간세율과 경감세율이 있는 4단계 세율구조였음

○ 1977년 중간세율이 없는 3단계 세율구조였다가 1982년 5.5%의 초경감세율이 도입되어 다시 4단계 세율체계가 되었음

○ 1995년부터는 표준세율보다 높은 할증세율이 폐지되어 다시 3단계 세율로 되었으나 1982년 중간세율이 다시 도입되면서 현재와 같은 4단계 세율구조가 되었음

○ 표준세율은 도입 당시 16.66%에서 1970년에 23%까지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1977년에는 17.6%까지 인하되었다가 1995년에는 다시 20.6%로 상승하는 등 상승 시기와 하락 시기가 있었고 2014년 20%의 세율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108) IBFD, "France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 Value Added Tax (Last Reviewed: 10 October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fr_s_013.html, 검색일자: 2024. 12. 10.

109) CGI 제278조

〈표 Ⅳ-10〉 프랑스: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

(단위: %)

연도	1968	1969	1970	1972	1977	1982	1988
할증세율	20.0	25.0	33.33	33.33	33.33	33.33	28.0
표준세율	16.66	19.0	23.0	20.0	17.6	18.6	18.6
중간세율	13.0	15.0	17.6	17.6	없음		
경감세율	6.0	7.0	7.5	7.0	7.0	7.0	7.0
초경감세율	없음					5.5	5.5
연도	1989	1990	1992	1995	2000	2012	2014~현재
할증세율	25.0	22.0	18.6	없음			
표준세율	18.6	18.6	18.6	20.6	19.6	19.6	20.0
중간세율	없음					7.0	10.0
경감세율	5.5	5.5	5.5	5.5	5.5	5.5	5.5
초경감세율	2.1	2.1	2.1	2.1	2.1	2.1	2.1

자료: 안창남·손승연(2019), p. 20

2) 경감세율 대상

□ 경감세율은 10%, 5.5%, 2.1%의 3단계 세율이 적용됨[110)]

○ 10%의 중간세율은 특정 생활필수품(운송, 외식, 비처방 의약품 등) 및 문화·여가 관련 서비스 등에 적용됨

○ 5.5%의 경감세율은 기본적인 생필품(식료품, 전기 등) 및 사회·환경적 지원 분야에 적용됨

○ 2.1%의 초경감세율은 오리지널 창작물을 포함한 공연 및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필수 의약품 판매에 적용됨

110) CGI 제278 bis조; CGI 제278 quater조; CGI 제279조; CGI 제279-0 bis조; CGI 제278-0 bis조; CGI 제281 quater조; CGI 제281 sexies조; CGI 제281 octies조; 안창남·손승연(2019), pp. 53~54; Global VAT Compliance, "VAT Rates in France", https://www.globalvatcompliance.com/vat-rates-in-france/, 검색일자: 2024.12.11.; Avalara, "French VAT rates and VAT compliance", https://www.avalara.com/vatlive/en/country-guides/europe/france/french-vat-rates.html, 검색일자: 2024. 12. 11.

〈표 Ⅳ-11〉 프랑스: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대상 요약

구분	내 용
10%	- 난방용 목재, 난방용 임산물, 난방용 목재폐기물, 가공하지 않은 원예 및 화훼제품 - 유기농 생산 및 라벨 표시에 관한 규정에 언급된 유기농비료, 석회질 토양개량제 및 식물보호제품, 「농어촌 및 해양수산법」에 규정된 농업유기 재배용 재료 - 사회보장보험에서 환급받지 못하는 인체용 의약품[2)] - 숙박서비스(호텔 및 가구 비치된 숙박시설 임대)[3)], 캠핑장 숙박 및 부지임대 등 - 회사 구내식당에서의 식사 제공(주류 관련 제외) - 승인된 온천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서비스 - 여객운송 -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행되는 농업인을 위한 임업 및 벌목작업 - 텔레비전 서비스 - 문화·오락·교육 및 전문적 성격의 전시 및 설치물 입장료[4)] - 법적 재산권이 있는 저작물 등의 양도, 영화작품 및 도서 관련 권리의 양도[5)] - 기술적 제약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가정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 처리[6)]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도로 청소 서비스 및 제설 서비스 - 식당 내에서 소비할 음식의 판매 및 즉시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된 식품의 포장판매 및 배달판매(CGI 제278조에 따른 주류 제외) - 2년 이상된 주거용건물의 수리 및 유지보수 작업[7)]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차인이 주 거주지로 사용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목적 주택의 인도 - 사회임대주택의 신축 및 매매[8)] -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인쇄[9)]
5.5%	- 다음 재화의 공급 · 인간 소비를 위한 식료품, 이 식료품을 준비하기 위한 식자재 및 대체 식료품[10)] · 인간 소비를 위한 식료품을 생산하기 위해 이용하는 동물이 소비할 식품, 이 식품을 준비하기 위한 식자재 및 대체 식품 · 농업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산물, 수산물, 양식물 · 여성용 생리대, 남성 및 여성 피임기구 -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 장비 및 재료의 공급 · 「사회보장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장비, 환급 가능한 용역, 장애인을 위한 병원의 용역 및 물품, 중증장애인 전용으로 설계된 특수장비 및 보조장비 · 자동침구장치, 혈당 자동판독장치,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 펜, 당뇨 자가모니터링을 위한 테스트 기기 등 · 배설물 또는 요실금 환자 및 장루 환자를 위한 수집 장치, 결장루 세척 장치, 방광 세척 용액 등 ·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승강기 및 유사 장비

〈표 Ⅳ-11〉의 계속

구분	내 용
5.5%	· 「사회보장법」에 따라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정액 지원을 받거나 과도기 지원을 받는 장애인을 위한 장치, 장비 및 재료 - 도서의 판매 및 임대(모든 유형의 물리적 매체에 있는 도서와 오디오북 포함)[11] - 전력망을 통해 제공하는 36킬로와트시 이하의 전력, 열에너지 및 천연가스의 공급, 최소 50% 이상이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열, 폐기물, 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열의 공급 - 「건축 및 주택법(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에 명시된 거주형 요양원, 장애인 수용시설 「사회 및 가족행동법」에 언급된 시설에서 제공되는 숙박 및 식사 제공 -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용역 제공 - 공립 또는 사립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 - 연극, 상송극장, 서커스, 콘서트(단, 시즌에 사용하는 공연시설에서 제공하는 버라이어티쇼는 제외하나 국립음악센터 산하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 「노동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고 공연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월급을 받는 예술가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연하는 독창적인 음악작품의 공연 관람료 - 「안전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에 규정된 비디오게임 대회 입장권 - 영화관 입장권(매체의 성격에 관계 없음), 스포츠 행사 입장권, 동물원 입장권 - 영화제에 참가한 영화 작품에 관련된 재산권의 양도 - 프랑스 또는 EU 내에서 구입하는 예술작품, 수집품 및 골동품[12] -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탐지를 위한 자가테스트 -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할 수 있는 재활용 수거, 가정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의 분류 및 회수 용역 - 조건[13]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인프라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용역 - 승마 교육 및 실습, 승마를 위한 애니메이션 및 시연 활동
2.1%[1]	- 창작극, 뮤지컬 또는 안무 작품이나 클래식 작품의 첫 번째 공연에서 받은 수입, 독창적으로 구성된 서커스 쇼[14]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에게 도축용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하는 것 - 사회보장보험에 의해 일부 또는 전액 보상되는 의약품

주: 1) TV 수신료(공영방송기여금)는 2022년 8월 16일 법률 n°2022-1157에 의해 폐지됨
2) 동물 관련 의료제품은 20%의 세율 적용
3) 30박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우
4) CGI 제278-0 bis조에 해당되는 스포츠시설이나 쇼 관람 및 게임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5) 건축 및 소프트웨어 저작물 관련 권리의 양도 및 영화작품의 재산권 양도는 제외
6) CGI 제278-0 bis조 제M항에 의해 5.5%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7) 가전제품이나 가구 공급 또는 난방시스템, 엘리베이터, 위생설비, 공조시스템 설치 또는 교체 작업과 관련된 주요 장비의 취득은 제외, CGI 제278-0 bis조 A항에 언급된 작업(5.5% 대상) 제외
8) 사회임대주택은 건축 및 주택법에 따라 주택지원이 적용되는 주택을 의미하며, 사회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5% 또는 10%의 경감세율이 적용됨(CGI 제278 sexies-0 A조). 통합지원이 포함된 임대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회임대주택, 사회적 이용을 위한 임대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도

시재생정책이 적용되는 사회임대주택 등은 5.5%, 기타 사회임대주택은 10%
9) 음란물이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경우 20%의 세율 적용
10) 제과, 초콜릿과 초콜릿이나 코코아를 포함한 모든 복합제품, 마가린 및 식물성 지방, 캐비어, 알코올성 음료는 제외. 단, 초콜릿 우유로 만든 가정용 초콜릿, 초콜릿 사탕, 코코아 콩 및 코코아 버터는 5.5% 적용
11) 도서에 대한 저작권 및 권리의 양도에는 10%의 세율 적용
12) CGI 제278-0 bis조 I항. 리셀러에게 구입하는 예술작품, 수집품 및 골동품은 20% 세율 적용
13) 조건: 주거지역에 설치되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예산 및 에너지 기관이 정한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적격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14) CGI 제281 quater조, 외설적인 성격의 공연과 CGI 제278-0bis조의 2° F에 규정에 따라 5.5%의 세율이 적용되는 입장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자료: 10% 경감: CGI 제278 bis조, CGI 제278 quater조, CGI 제279조, CGI 제279-0 bis조, CGI 제279-0 bis A조, CGI 278 sexies-0 A조, 5.5% 경감: CGI 제278-0 bis조, 2.1% 경감: CGI 제281 quarter조, CGI 제 281 sexies조, CGI 제281 octies조; 프랑스 정부, “VAT rates in the hygiene and health sector”,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23567?lang=en, 검색일자: 2025. 2. 7.; 프랑스 정부, “VAT rates in the arts and press sectors”,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37781?lang=en, 검색일자: 2025. 2. 4.; 프랑스 정부, “VAT rates in the arts and press sectors”,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37781?lang=en, 검색일자: 2025. 2. 4.

나. 면세제도

□ 특정 국내거래와 EU 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함[111)]

○ 면세되는 국내 공급에는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의료용품, 교육 및 훈련, 건물 부지 판매, 비영리단체가 비영리 목적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함

○ 단, 법률에 명시된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선택권이 제공됨

- 이러한 선택은 주로 가구가 없는 건물의 임대료와 금융, 은행 및 보험 용역에 적용됨
- 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세대상자는 관련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며, 그에 따라 해당 공급과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음
- 2022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선택은 거래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납세자가 한 모든 거래에 적용될 필요는 없음[112)]

111) IBFD, “France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 Value Added Tax (Last Reviewed: 10 October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fr_s_013.html, 검색일자: 2025. 1. 13.

□ 면세 대상은 프랑스 일반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이하 'CGI') 제261조~263조에서 제시하고 있음[113)]

○ 면세 대상은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 농업 및 어업, 중고품, 자유직업 및 기타 다양한 활동, 부동산거래, 공익단체, 은행 및 금융업무, 임대용역, 사행성 게임용역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표 Ⅳ-12〉 프랑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요약

구분	내용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 또는 거래	법규로 통제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거래
농업 및 어업	- 「농촌 및 어업법(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에 정의된 농업사업자 간 상호지원 용역 - 어민 및 어선 소유주(담수 어부는 제외)가 잡은 수산물(어류, 갑각류, 신선한 조개류 또는 냉동 보관된 조개류) 판매
중고품	- 개인의 필요 또는 경영활동의 필요에 의한 중고품 판매(EU 회원국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해당 재화의 구입 시 전액 또는 일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가공급의 경우 면세를 적용하지 않음)
전문 인적용역 및 자유직업 활동	- 의료 관련 활동 · 의료협회 회원 및 의료보험회사의 회원 등[1)]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에 의해 인가받은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입원 및 치료비용(1인 병실 비용 포함) · 「사회 및 가족 행동법(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에 의한 사설 노인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서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에 따라 치료비가 면제된 연간 평균 치료비 · 인체 장기, 혈액 및 모유 등의 제공 및 이의 제공과 중개료, 수수료 및 가공료 · 「공중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자가 수행하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차량을 사용한 환자 및 부상자의 수송 -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의 교육과정 내에서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 「교육법(code de l'éducation)」에서 규정하는 공공 및 사립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초등·중등·고등 교육용역 · 교육법에 의한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의 교육용역

112)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선택은 납세자가 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었음

113) CGI 제261조; 제261C조; 제261D조, 제261E조

〈표 Ⅳ-12〉의 계속

구분	내용
전문 인적용역 및 자유직업 활동	· 1960년 8월 2일 법률 제 60-791호에 따른 농업전문기술학교의 교육용역 ·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공교육법인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자격을 인정받은 개인이 지속적인 직업 훈련의 일환으로서 제공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용역 ·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제공하는 초등·중등· 고등·통신(원격교육) 학교 · 교육생에게 직접 수업료를 받는 개인이 제공하는 학교, 대학, 전문학교, 예술 또는 스포츠 교육 용역 - 그 외 활동 ·「공중보건법」에 의한 시설에서 만 3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사회 및 가족 행동법」에서 규정하는 성인 보호와 관련된 변호사의 변호용역의 공급 · 비영리단체가 회원에게 정관에서 정한 회비의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2)] ·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기념비, 묘지, 전몰장병 유적지, 전쟁영웅 및 희생자의 전적지 건축 용역과 수리 용역의 공급 · 프랑스 내에서「우편 및 전자통신법(code des postes et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에 따른 보편적 우편서비스 용역의 공급 및 해당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재화의 공급(단, 개인의 운송용역 및 통신용역 제외)
부동산 거래	- 토지의 공급(조세일반법 제25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 제외) - 준공된 지 5년이 지난 부동산의 공급
비영리활동	- 비영리법인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사회·교육·문화·스포츠 성격의 용역 · 해당 법인 총 수입금액의 10% 내에서 회원들에게 공급한 거래 · 다만, 숙소 및 식사 제공, 술집 및 뷔페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비영리적이며 자선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거래[3)] - 상기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사회적 성격을 지닌 영구적 단체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연간 최대 6회의 자선행사를 조직하여 얻은 수익 -「사회 및 가족 행동법」 또는「노동법(code du travail)」에 따라 승인된 협회가 수행하는 법에서 정하는 비영리활동 -「사회 및 가족 행동법」에 명시된 수용시설에서 제공되는 용역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화 공급 - 승인된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 근로자 단체에서 제작한 물품의 공급과 해당 단체가 제공한 수리 용역의 공급(조건 및 절차에 따라 면세를 포기할 수 있음)

〈표 Ⅳ-12〉의 계속

구분	내용
은행 및 금융	- 신용의 부여 및 협상, 신용을 부여한 자에 의해 수행된 신용관리, 「통화 및 금융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행된 유가증권의 대여 및 연금지급[4] - 약정, 보증, 기타 담보 및 보증의 협상 및 인수, 신용 부여자에 의한 신용 보증 관리업무[5] - 예금 및 당좌예금, 이체, 채권, 수표 및 기타 무역어음 관련 업무(채권 회수 제외) - 합법적인 결제 수단인 통화, 지폐 및 동전 거래(수집용 동전과 지폐 제외) - 주식, 협회 지분,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물품을 대표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식 제외) 관련 거래(보관 및 관리 제외)[6] -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른 집합투자증권(UCITS) 및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타 집합투자기관의 관리 - 금과 관련된 거래로서 신용기관, 투자서비스 제공자, 환전소 및 송금 대행업체가 주된 사업으로 하는 거래(산업용 금은 제외) - 보험 및 재보험 거래 및 보험중개인과 중개자가 수행하는 보험 관련 용역 - 프랑스에서 공식가치가 있는 우표 및 수입인지
임대용역	- 농업용 토지 및 건물 임대 - 실질적 권리를 부여하는(운용리스) 부동산 임대용역 - 미개발 토지와 가구 없는 건물의 임대(주차공간은 제외,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제외) - 가구가 비치된 주거용 건물의 임시, 영구 및 계절적 임대용역[7]
사행성 게임용역	- 국가가 운영하는 복권, 로또, 경마 패리뮤추얼 베팅, 스포츠 대회 및 온라인 서클 게임의 베팅에서 발생하는 운영수익(단, 이들 게임과 베팅의 조직 및 중개에 참여하는 조직자와 중개인이 받는 보수는 면세에서 제외됨)

주: 1) 약사, 접골사, 척추지압사, 심리학자 또는 심리치료사 직함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의사, 필요한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정신분석가,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 보철물 공급 및 보철 기술자 등이 포함됨
2) 단, 해당 단체는 철학적·종교적·정치적·애국적·시민적·노동조합적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단체의 운영이 회원의 도덕적 또는 물질적 보호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적용됨
3)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은 수익이 전년도에 78,596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타 운영에 대해서도 면세됨. 해당 연도에 수익이 78,596유로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초과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면세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한도 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됨
4) 중개기관이 수행하는 거래수수료는 제외함
5) 보증, 배서, 어음 및 신용장, 이와 관련하여 받는 모든 수수료, 보증계약 관리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중개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제외함
6) 주식 등 거래 관련 수수료는 포함되고 증권 등의 보관·관리 업무는 제외함
7) 호텔 및 유사한 기능을 가진 숙박시설에서 고객에게 30박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제공되고 가구가 비치된 숙소와 함께 조식·청소·린넨·고객응대 등의 서비스 중 3가지 이상 포함되는 경우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

자료: CGI 제261조; 제261C조; 제261D조, 제261E조; CGI 제261조 제4항; CGI 제261조 제7항; CGI 제261C조

□ 프랑스는 수출 거래에 대해 공제권 있는 면세를 적용함[114]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역내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프랑스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국외 거래와 관련된 면세는 수출 및 국외 운송 면세와 외교 및 국제조직 등과 관련된 면세가 있음

○ 수출 및 국외 운송 등과 관련된 면세는 다음과 같음[115]

- 유럽공동체 외부로 선적 또는 운송되는 상품의 배송 및 수출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
- 배송이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에 반입되는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조건[116]을 충족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자 또는 프랑스 외부에 설립된 수혜자가 유럽 공동체 회원국 영토 밖에서 운송하거나 운송하는 동산에 대한 작업을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수입하는 작업으로 구성된 서비스 제공
- 배송, 수리, 개조, 유지보수, 전세 및 임대 작업과 관련된 작업
- 해상에서 작업에 사용될 물건과 관련된 인도, 임대, 수리 및 유지보수 작업뿐만 아니라 해상 어업을 위한 장비 및 그물에 대한 작업
- 항공기의 인도, 개조, 수리, 유지보수, 전세 및 임대 운영
- 외국 또는 해외 지역사회와 부서에서 항공 또는 해상으로 승객을 운송
- 해외로 오가는 승객의 철도 운송, 국제 열차 및 예산부 장관과 교통부 장관의 공동 명령에 따라 목록이 설정된 노선에서의 승객 운송

---

114) 프랑스 정부, “TVA - Droits à déduction - Remboursement - Régimes particuliers et modalités spécifiques à certaines entreprises”, https://bofip.impots.gouv.fr/bofip/1403-PGP.html/identifiant=BOI-TVA-DED-50-20-20-20210224#2._Entreprises_placees_sous_31, 검색일자: 2025. 3. 20.

115) CGI 제262조

116) 조건: ①여행자는 프랑스나 유럽 공동체의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함 ②배송은 제조된 담배, 상업적 공급의 성격이나 품질에 따라 해당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수출 금지 대상인 상품도 포함되지 않아야 함 ③물품은 배송이 이루어진 후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유럽 공동체 외부로 운송되어야 함 ④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납품의 총 가치는 일정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야 함

○ 외교 및 국제조직 등과 관련된 면세는 다음과 같음[117)]

- 외교 영사 관계에서 수행되는 물품 및 서비스의 인도
- 국제조직(유럽연합·유럽원자력공동체, 유럽중앙은행·유럽투자은행 등)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 군대의 구내식당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4. 스웨덴

□ 스웨덴은 1968년 6월 「부가가치세법(Lag om mervärdeskatt, GML)」을 제정하여 1969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고, 이는 최근 2023년 7월 「부가가치세법(Mervärdesskattelagen, ML)」으로 개정되어 발효 중임[118)]

○ 부가가치세 전신인 판매세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정부지출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입된 후 폐지되었다가 1960년 국가재정 보충을 위해 재도입되었으며, 1969년에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로 전환·도입됨[119)]

○ 최근에는 부가가치세법을 GML에서 ML로 개편하면서 법률구조를 더욱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용어 및 표현 등을 현대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세부 법률 또한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맞춰 조정함[120)]

---

117) CGI 제262-00 bis조

118) Lag om mervärdeskatt(GML), Mervärdesskattelagen(ML) 모두 부가가치세법(value-added tax law)을 의미하나 전자는 "Lag(Law) om(about) mervärdeskatt(value-added tax)" 와 같이 풀어쓴 형태이고, 후자는 "Mervärdesskatt(value-added tax)"와 "lagen(the law)"이 결합된 합성어로 본문에서는 부가가치세법으로 통일하여 번역함

119) företagarna, *Momslabyrinten – så tar vi oss ur den*, https://www.foretagarna.se/contentassets/333041fca8ed4af38a53bcbc5acc048d/2024-12-momslabyrinten.pdf, pp. 6~7, 2024. 12.

120) 스웨덴 국세청, “Systematik och terminologi i ML jämförd med GML”,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4.7/393557.html, 검색일자: 2025. 1. 8.

□ 스웨덴 부가가치세법은 「EU 부가가치세 지침」과 상호작용하나 국내법과 상반되는 경우 국내법의 판결보다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판결을 우선시함[121]

□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 재화 및 용역의 모든 단계에 발생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납세의무자(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공급자에게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납부함[122]

○ 납세의무자는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자 모두를 말하며, 고용계약 등에 따라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음

○ 과세대상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임

○ 단 연간 과세표준이 120,000크로나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123]

- 부가가치세 등록이 면제되는 사업자의 연매출액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로 기존 80,000크로나에서 120,000크로나로 상향 조정됨

□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1%,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은 9.4%임(2022년 기준)[124]

○ 2000년 대비 2022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총 조세수입 대비 5.7%p, 국내총생산 대비 1.2%p 증가함

□ 스웨덴의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은 22.1%로 소득세(28.0%) 다음으로 가장 높음(2022년 기준)[125]

---

121) IBFD, “Sweden - Value Added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se_chaphead.html, 검색일자: 2025. 1. 8.

122) 스웨덴 국세청, 「Mervärdesskattelag(2023:200)」 3~5 kap.,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432450.html, 2025. 2. 13.

123) 스웨덴 국세청, “Momsregistrering när årsomsättningen är högst 120,000 kronor”,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moms/momsregistrering/momsregistreringnararsomsattningenarhogst120000kronor.4.3152d9ac158968eb8fd1efe.html, 검색일자: 2025. 1. 8.

124) OECD(2024b), p. 15

125) OECD(2024b), p. 15, pp. 68~69

○ 총 조세수입 대비 세목별 비율은 소득세(28.0%)[126], 소비세(28.8%), 사회보장기여금(20.8%), 법인세(8.0%), 기타(12.2%)로 구성됨
- 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22.1%)와 그 이외의 소비세(6.6%)로 나뉨[127]
- 기타는 대부분 급여세로 구성됨

○ 스웨덴의 총 조세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할 때 소득세(4.4%p) 비중이 높고, 소비세(△2.8%p) 비중은 낮은 편임
- 스웨덴의 경우 직접세 세수입이 더 많은 까닭에 전체 세입에서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게 평가됨[128]

가. 세율

□ 부가가치세 세율은 재화 및 용역의 종류에 따라 25%, 12%, 6%로 차등을 두며,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제도도 운영함[129]

○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에 표준세율인 25%를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한하여 표준세율보다 낮은 경감세율(12% 또는 6%)을 적용함

○ 면세제도는 공제권이 없는 면세거래와 공제권이 있는 면세거래(Transaktioner som medför avdragsrätt och avdragsgill ingående skatt)[130]로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세율과 유사한 개념임
-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제권이 있는 면세 거래의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

126) 소득에 대한 세금은 국세 및 지방세로 나뉘는데 국세의 경우 일정 수준(625,800크로나, 2025년 기준) 이상의 소득자만, 지방세는 모든 소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위의 자료는 국세 및 지방세 수입 모두를 의미함

127) OECD(2024b), p. 15

128) 오건호(2013), p. 25

129) 박명호 외(2009), pp. 109~111

130) 스웨덴 국세청, “Transaktioner som medför avdragsrätt och avdragsgill ingående skatt”,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5.1/409328.html, 검색일자: 2025. 1. 8.

1)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

□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에 적용되는 표준세율(Normalskattesats)은 「EU 부가가치세 지침」(최소 15%)을 준용하는 범위에서 결정되며, 현재 표준세율은 25%임[131)]

□ 예외적으로 일부 재화 및 용역에 12% 또는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며, 각 경감세율 적용 범위는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준용하여 적용 가능한 품목 중 선택 적용함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도입 초기에 약 11%이었으나 1971년 약 18%로 크게 인상된 후 1990년 7월 이후로 25%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2024년 기준)[132)]임

〈표 Ⅳ-13〉 스웨덴: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

(단위: %)

적용일자	세율	
	표준세율	경감세율
1969.01.01	11.11	6.38 / 2.04
1971.01.01	17.65	9.89 / 3.09
1977.01.06	20.63	11.43 / 3.54
1980.08.09	23.46	12.87 / 3.95
1981.11.16	21.51	11.88 / 3.67
1983.01.01	23.46	12.87 / 3.95
1990.07.01	25	13.64 / 4.17
1992.01.01	25	18
1993.01.01	25	21
1993.07.01	25	21 / 12
1996.01.01	25	12 / 6

자료: European Commission, “VAT rates applied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1-06/vat_rates_en.pdf, 2021.1.; 스웨덴 국세청, “Skattesatser i Sverige tidigare år”,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3.16/346820.html, 검색일자: 2025. 1. 3.

131) 7 kap. 1 § första stycket 1 ML; 스웨덴 국세청,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3.16/339592.html, 검색일자: 2025. 1. 3.

132) OECD(2004a), pp. 78~79

□ 스웨덴은 1982년 소득세를 낮추고, 소비세를 확대하는 구조의 조세개혁과 1991년 세율을 인하하고 조세 기반을 확대하는 구조의 조세개혁을 추진한 바 있음[133]

○ 1982년 이른바 '찬란한 밤(wonderful night)'이라 일컫는 조세개혁은 보수연합 정부를 필두로 소득세 한계세율을 인하(85%→72%)하고, 대신 소득공제 조정, 소비세 인상 등의 보완작업이 이루어짐

- 특히 직접세 세율 인하와 소비세 확대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기존에는 상당수의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 또는 경감세율 대상이었으나 조세개혁 이후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세율도 인상(21%→23%→25%)됨

○ 1991년 이른바 '세기의 조세개혁(Tax Reform of the Century)'이라 일컫는 조세개혁은 사민당 정부에서 마련되고 보수연합 정부로 이어져 추진되었으며, 기존 소득공제를 축소해 과세대상을 넓혀 나가되 한계세율을 인하해 조세 회피[134]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지향함

- 주요 내용은 중앙소득세(국세)[135] 적용대상 축소·한계세율 인하, 자본소득세 과세, 기업의 복리후생 강화, 법인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면세/경감세율 대상 축소로 과세대상 확대, 연료세 과세 강화 등임
- 직접세 인하로 인한 세입 감소분을 자본소득세 과세, 부가가치세 확대 적용, 소득공제 축소 조치를 통해 충당하려 했으나 스웨덴이 1990년대 초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해당 조세개혁에 대한 평가는 상반적[136]임

○ 오건호(2013)는 2차례의 조세개혁으로 스웨덴 조세체계는 능력별 보편증세를 구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웨덴 정부가 경제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할 수 있었다고 분석함

- 더불어 스웨덴 국민들은 자국의 조세·재정체계에 상당히 긍정적이며, 재정상태

133) 오건호(2013), pp. 17~48.

13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군나르 뮈르달은 『time for a new tax system(1978)』에서 당시 스웨덴의 상황을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율이 스웨덴을 세금회피 모색자들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역설함

135) 소득세는 지방세 또는 국세로 나뉘며 일정 수준(625,800크로나, 2025년) 이상의 소득자만 국세인 중앙소득세를 납부함

136) 1991년 조세개혁이 단행되던 시점에서 국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비판적이었으나, 2012년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됨

도 세대 간 회계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어, 재정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들이 스웨덴 모델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힘

2) 경감세율 대상

□ 부가가치세 도입 초기부터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경감세율이 함께 도입되었고, 이후 정부가 특정 부문의 소비를 촉진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됨[137]

□ 스웨덴은 2종류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12% 또는 6%)을 운용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는 각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을 구분한 것임

○ 아래 표는 스웨덴 부가가치세법 9 kap. 하위 조항을 기준으로 구분됨

〈표 Ⅳ-14〉 스웨덴: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

구 분	항 목	내 용
◎ 12% 경감세율 적용항목		
§3	식료품 등[1)]	식수, 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료품
§4	호텔 및 캠핑	호텔 운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서의 객실 공급
§5	레스토랑/케이터링	레스토랑 또는 케이터링 용역(주류 제외)
§6	예술품 등	면세 대상[2)] 외 예술품/수집품/골동품의 판매
§7	특정물품의 수리	자전거, 신발, 가죽제품, 의류, 가정용 린넨의 수리용역(소모품, 재료 등 해당 용역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재화 포함)
◎ 6% 경감세율 적용항목		
§8	여객운송	택시, 기차, 버스 등의 여객운송 용역 주된 목적이 승객, 수화물의 운송인 경우(주된 목적이 여행 등인 경우에는 제외)
§9~13	인쇄물 등	도서, 신문, 잡지, 지도 등의 인쇄물 및 이와 유사한 재화 라디오/카세트신문, 음성도서, 전자출판물 포함

137) företagarna, *Momslabyrinten – så tar vi oss ur den*, https://www.foretagarna.se/contentassets/333041fca8ed4af38a53bcbc5acc048d/2024-12-momslabyrinten.pdf, pp. 8~9, 2024. 12.

〈표 Ⅳ-14〉의 계속

구 분	항 목	내 용
§14	입장료	영리/비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콘서트, 서커스, 발레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연, 동물원, 국립공원 등의 입장료
§15	도서관/박물관	도서관 또는 박물관 등 운영과 관련한 용역
§16~17	저작권 등의 양도	저작권법의 보호받는 문학/예술작품 등의 권리 양도(이전)
§18	스포츠 용역[3)]	국가/지자체/비영리단체 외 기관이 주최하는 스포츠 경기 입장료/참여요금, 스포츠 시설 임대료 등

주: 1. 표의 구분은 스웨덴 「부가가치세법」세율(9 kap. Skattesatser)조항의 하위 항목 기준임
1)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이 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식료품을 말하지만 담배 등 연기로 흡입하는 제품 등은 식료품으로 간주하지 않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 등의 판매 또는 이와 관련한 용역은 경감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식수는 제외되나 판매를 목적으로 병/용기에 담긴 식수는 포함
2) 창작자(또는 상속인)의 연 300,000크로나 미만의 예술창작품 판매는 면세됨; 마진과세가 적용되는 재화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기존에는 창작자 등의 예술품 판매에 한하여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법인 및 갤러리 소유의 예술품 판매에는 표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5. 1. 1.부터 사업자 형태와 관계없이 예술품의 판매에 경감세율을 적용함(스웨덴 국세청, “Konstverk, samlarföremål och antikviteter”,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5.1/395008.html, 검색일자: 2025. 2. 4.)
3) EU위원회는 스웨덴을 포함한 몇몇 회원국에 과도기(면세에서 경감세율로 변경) 동안 스포츠 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해당 재화 및 용역의 제공주체가 국가, 지자체,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됨(스웨덴 국세청, “Idrott”,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4.7/426610.html, 검색일자: 2025. 1. 10.)

자료: 스웨덴 국세청, “Skattesats 12 procent”,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5. 1/394978.html, 검색일자: 2025. 1. 6.; 스웨덴 국세청, “Skattesats 6 procent”,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5.1/394984.html, 검색일자: 2025. 1. 7.; 스웨덴 국세청, 「Mervärdesskattelag (2023:200)」 9 kap. §3~18,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432450.html, 검색일자: 2025. 2. 5.

나. 면세제도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연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138)],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139)], 특수면세(kvalificerade undantag)[140)]의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됨

138) 18 kap. §Särskild ordning för beskattningsbara personer med liten årsomsättning ML
139) 10 kap. §Generell skatteplikt och undantag ML

○ 「부가가치세법」 10 kap. §1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총 23개 항목을 열거하며, 동법 13 kap. §10는 부가가치세 공제권이 적용되는 총 24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 특수면세(11 kap., 20~21 kap.)란 해당 면세 항목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적용됨

- 특정 창고에 보관된 재화[141)]
- 중고품·예술품·수집품·골동품 등
- 투자용 금

○ 또한 부동산, 투자용 금 등에 한하여 '자발적 과세(Frivillig beskattning)' 규정을 두고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전환함과 동시에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규정도 두고 있음

□ 즉 우리나라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또는 가능한 항목을 면세 또는 영세율로 구분하고 있으나, 스웨덴의 경우 면세 항목을 나열한 뒤 공제권이 있는 면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아래의 표들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권이 없는 면세 항목(우리나라의 면세제도), 일부 재화 및 용역에 공제권을 허용하는 면세 항목, 공제권이 있는 면세 항목(우리나라의 영세율)을 구분한 것임

〈표 Ⅳ-15〉 스웨덴: 공제권이 없는 면세 항목

번호	면세 항목	내 용
§4~5	우표, 우편용역	「우편법」에 따른 국가조직이 공급하는 우표·우편용역, 운송용역
§15~18	교육[1)]	교육기관 등의 초·중·고·대학교 교육, 국가보조금을 받는 교육, 면세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 위탁기관에서 제공하는 면세교육

135) 11 kap. §Varor i vissa lager ML; 20 kap. §Särskild ordning för begagnade varor, konstverk, samlarföremål och antikviteter ML; 21 kap. §Särskild ordning för investeringsguld ML

141) 에너지상품/에틸알코올/기타로 간주되는 제품을 규정에 따라 승인된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표 Ⅳ-15〉의 계속

번호	면세 항목	내 용
§19	독립그룹 내 용역	독립그룹 내 용역은 ①면세용역 또는 면제사업자의 용역일 것(경쟁왜곡×), ②직접적으로 필요할 것, ③용역에 대한 보상이 그룹 내 비율에 따라 정확할 것을 충족해야 함
§28~29	스포츠	스포츠[2] 경기입장권, 스포츠 경기 참여와 관련한 용역 또는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용역
§30~31	문화	저작권법에 따른 작품의 문학·예술 공연, 도서관의 도서 등, 기록물관리영역에서의 문서, 문서의 보관, 정보공급 등, 박물관의 전시, 전시물, 공공지원을 받는 성인교육, 지자체의 문화교육, 예술작품[3]의 공급
§32	보험	보험, 재보험, 보험중개인 등의 용역
§33	금융용역	은행·금융 용역(공증, 채권추심 등), 증권 용역(공급, 중개, 관리 등)
§35~36	부동산[4]	부동산 공급, 임대권, 임대차권, 소유권 등[5]
§37~39	특정 자산	①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기타 자산이거나 ②다른 사업부문으로 이전된 과세자산으로 이전사업에 사용될 자산[6]
§40~41	국가, 지자체 사용	국가의 부동산과 관련한 기타 용역(수리, 유지보수, 설계, 청소·관리), 지자체의 자체 필요를 위한 재화 및 용역[6]
20 kap.	중고품, 예술품, 수집품 등	면세사업자, 마진과세를 적용하는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의 중고품, 예술품 수집품 등의 거래
21 kap	투자용 금[4]	규정에 따른 투자용 금

주: 1. §4~41 항목은「부가가치세법」면세(10 kap. Generell skatteplikt och undantag)조항의 하위 항목이며, 20~21 kap.은 각각「부가가치세법」특별조항으로 구분됨

1) 공공부문이 주관하거나 공공부문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경우를 말함; 공법상 인정되는 교육에 한함

2) 국가/지자체/스포츠협회와 관련된 경우에만 면세 대상임

3) 공급이 창작자(작가) 또는 제작자의 상속인(유산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제공 시점에 작품이 창작자 또는 상속인의 소유여야 하며, 해당 과세연도 합계 과세표준이 300,000크로나 미만이어야 함

4) 과세대상자가 '자발적 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됨

5) 다음은 제외됨; ① 영구 설치된 기계 및 장비, ② 숲, 수확물, 식물 등, ③ 농지임대, 벌목권·채취권 등의, ④ 호텔운영 등 시설 제공, ⑤ 주차 공간 등, ⑥ 보관함 등, ⑦ 부동산광고, ⑧ 동물용 토지, 건물, ⑨ 교각, 터널, 선로 등, ⑩ 스포츠 활동을 위한 장소 및 시설, ⑪ 버스 터미널 등, ⑫ 이동통신 구조물 등

6) 다음은 제외됨; ① 보험회사가 손해조정과 관련하여 인수한 자산, ② 금융회사가 회수한 자산, ③ 부가가치세법 69, 70, 71, 73조에 따라 면세 대상인 자산, ④ 스웨덴(EU역내)으로 수입 시 비과세되거나 면세된 자산

자료: 스웨덴 국세청, "Skatteplikt och undantag",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5.1/393428.html, 검색일자: 2025. 1. 17.; 스웨덴 국세청,「Mervärdesskattelag (2023: 200)」10 kap. §1~97, 18 kap.~21 kap.,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432450.html#h-10-kap-Generell-skatteplikt-och-undantag, 검색일자: 2025. 1. 17.

〈표 Ⅳ-16〉 스웨덴: 일부 재화 및 용역에 공제권을 허용하는 면세 항목

번호	면세 항목	내 용	공제권 적용대상
§6~13	의료, 치과 진료[1)]	적격기관(공공/민간)에서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치과 진료, 모유·혈액·장기 공급, 의약품, 의료용 운송수단, 의료인에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	의약품(§13)에 한함
§20~27	대중매체	정기간행물[2)], 회원지, 라디오·카세트 신문, 프로그램·카탈로그, 면세 대상 간행물에 게재하기 위한 광고 또는 이와 관련한 용역, 국가보조금을 받는 방송용역	정기간행물 발행자의 제작, 배포 또는 이와 관련한 기타 용역(§26②)에 한함
§34	지폐, 동전, 복권, 장례, 금	법정화폐, 도박(복권, 내기 등), 묘지 또는 관련 용역,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공급되는 금	금의 인도에 한함
§42~52	EU 역내 거래	판매자, 구매자, 대리인을 통해 스웨덴에서 EU 역내로 공급되는 재화, 아조레스·마데이라 간 또는 해당 지역으로의 운송용역, EU 역내 면세재화의 수입	EU 역내 운송용역, 아조레스·마데이라 간 또는 해당 지역으로의 운송용역에 한함
§53~63	수입	국내 면세물품의 수입, 후속 공급을 위한 재화의 수입, 전기·가스·열·냉방에너지의 수입, EU 기관 등의 수입,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관련한 수입, NATO 회원국 군대의 수입, 수출 면세점 판매를 위한 수입, 해당 지침과 관련한 용역	해당 지침과 관련한 용역에 한함

주: 1. §6~63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면세(10 kap. Generell skatteplikt och undantag)조항의 하위 항목임
1) 안경, 시력보조기구, 처방전 없이 약사 등이 제공하는 재화, 동물 치료 등은 제외
2)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회원지 등을 말하며, 이를 회원(직원)에게 제공·무료 배포하는 경우 면세 대상임; '간행물'이란, 일반적인 뉴스/신문/회원지가 아닌 주로 종교, 단체운동, 정치, 환경보호, 스포츠, 국방증진 목적을 추구하거나 단체를 대표(예: 장애인)하는 기관의 기관지를 의미함; '정기'란, 연간 최소 4회 이상 발행되는 경우를 말함

자료: 스웨덴 국세청, "Skatteplikt och undantag",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5. 1/393428.html, 검색일자: 2025. 1. 17.; 스웨덴 국세청, 「Mervärdesskattelag (2023: 200)」 10 kap. §1~97, 18 kap.~21 kap.,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432450.html#h-10-kap-Generell-skatteplikt-och-undantag, 검색일자: 2025. 1. 17.

〈표 Ⅳ-17〉 스웨덴: 공제권이 있는 면세(영세율) 항목

번호	면세 항목	내 용
§14	사회복지	공공 또는 민간 적격기관의 공법상 사회복지 용역(아동·노인·장애인 등)과 해당 사회복지 용역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
§64~67	수출	판매자의 EU 역외 공급, 운송업자에 의해 EU 역외로 반출되는 재화, 개인(국내 과세사업자×)이 사업을 목적으로 EU 역외로 반출하는 재화, EU 역외 판매를 위한 임시등록 자동차 등, 국내에서 작업하여 EU 역외로 수출되는 재화
§68	수출, 수입 관련 용역	수출, 수입과 관련한 적재·하역·운송 또는 기타 용역의 제공
§69~77	선박, 항공기	선박 및 항공기, 관련한 장비, 운행 중 소비·판매되는 재화, 군함에 제공되는 소비·판매 재화, 관련 용역(유지보수 등), 관련한 중개용역, 관련 연료
§78~94	수출로 간주되는 거래	외국 대사관 등에 공급되는 자동차, 외국 대사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 EU 역내 군대/EU 회원국/국제기구 등/EU 회원국 군대/ NOTO 회원국 군대/키프로스 주둔 특정군대에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
§95	특정 면세 거래 또는 EU 역외 거래와 관련한 중개서비스	특정 면세 거래 또는 EU 역외에서 중개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용역
§96	면세점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재화
§97	전자상거래	전자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상품의 공급, 판매
11 kap.	특정 창고에 보관된 재화	보세창고 등에 보관되는 최종 소비되지 않는 재화[1]의 공급, EU 역외 거래, 수입 또는 관련한 용역

주: 1. §14~97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면세(10 kap. Generell skatteplikt och undantag)조항의 하위 항목이며, 11kap.은 「부가가치세법」 특별조항임
1) 해당 재화가 보세창고 등에서 반출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산출·부여됨

자료: 스웨덴 국세청, “Skatteplikt och undantag”,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5.1/393428.html, 검색일자: 2025. 1. 17.; 스웨덴 국세청, 「Mervärdesskattelag (2023: 200)」 10 kap. §1~97, 18 kap.~21 kap.,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432450.html#h-10-kap-Generell-skatteplikt-och-undantag, 검색일자: 2025. 1. 17.

5. 영국

□ 영국은 1972년 7월 「재정법(Finance Act)」을 제정, 1973년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기존의 구매세와 선별적 고용세를 대체하는 부가가치세를 도입(1973. 4)하였고,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2021년부터 독자적인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운영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전신인 구매세(1940~1973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치재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논의에서 도입된 이후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EU 회원국 간 세제 일치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함[142)]

○ 2020년 말 이전에는 「EU 부가가치세 지침」이 국내법보다 우선시되었으나 2021년부터 「EU 부가가치세 지침」이 아닌 국내법을 우선하여 적용됨[143)]

□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로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부과되며, 납세의무자(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세액공제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납세의무자는 정기/비정기 또는 영리/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 과세대상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임

○ 단 연간 과세표준이 90,0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등록기준 금액은 매년 공표되며, 2017/18~2023/24 과세연도의 등록기준 금액은 85,000파운드에서 2024/25년 과세연도부터 90,000파운드로 인상됨

142) 박정수(2019), p. 8.

143) IBFD, “United Kingdom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Last Reviewed: 31 August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uk_chaphead.html, 검색일자: 2025. 1. 21.

□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7%,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은 7.3%임(2022년 기준)[144]

○ 2000년 대비 2022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총 조세수입 대비 2.6%p, 국내총생산 대비 1.4%p 증가함

□ 영국의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은 20.7%로 소득세(28.8%) 다음으로 가장 높음(2022년 기준)[145]

○ 영국의 총 조세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은 소비세(30.6%), 소득세(28.8%), 사회보장기여금(19.9%), 재산세(11.3%), 법인세(9.2%), 기타(0.4%) 순임

○ 영국의 총 조세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재산세(6.1%p) 비중이 높고, 사회보장기여금(△4.9%p) 비중은 낮은 편임

○ 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그 외 소비세로 나누어 살펴보면, 영국은 OECD 회원국 평균값과 유사한 비중을 보임

- 영국의 소비세 비율은 부가가치세(20.7%)와 그 이외의 소비세(9.9%)로 나뉨
- OECD 회원국 평균 소비세 비율은 부가가치세(20.8%)와 그 이외의 소비세(10.8%)로 나뉨

가. 세율

1)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

□ 부가가치세 세율은 재화 및 용역의 종류에 따라 20%, 5%, 0%로 차등을 두며,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제도도 운영함

○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에 표준세율인 20%를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한하여 표준세율보다 낮은 경감세율(5%)과 영세율(0%)을 적용함

144) OECD(2024b), p. 69
145) OECD(2024b), p. 15, pp. 68~69

□ 재화 및 용역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현재는 표준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3가지 세율을 운영하며, 일부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제하는 면세 혜택을 부여함

〈표 Ⅳ-18〉 영국: 부가가치세 세율(2025년)

(단위: %)

구분	세율	과세대상 품목
표준세율	20	일반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
경감세율	5	경감세율 항목(예: 유아용 안전의자 등)
영세율	0	영세율 항목(예: 아동용 음식 또는 의류 등)
면세	-	면세 항목 (예: 보험·금융·교육 용역 등)

주: 일부 품목에 한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되는 면세 혜택을 부여함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vat-rates, https://www.gov.uk/guidance/vat-exemption-and-partial-exemption. 검색일자: 2024. 12. 12.

□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 1994) 제정(1973년) 당시 표준세율, 영세율이 함께 도입되었고, 이후 일부 재화 및 용역에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율(1994년)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시적으로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할증세율(higher rate, 1974~1979년)제도를 운영한 바 있음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도입 당시 10% 수준으로 운영되다가, 한 차례 인하(8%) 후 1979년 할증세율 폐지에 따라 크게 인상(15%)되었고, 이후 정책적 목적에 따라 변동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Section 2는 일반적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표준세율(20%)은 재무부의 결정에 따라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146]

146)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4/23/section/2, 검색일자: 2024. 12. 12.

□ 경감세율은 1994년 연료 및 전기 공급에 한하여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8%)을 적용함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이후 5% 수준으로 세율은 낮아지고, 적용대상 과세품목은 점차 확대되었음

□ 할증세율은 1974년 일부 사치품에 한하여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25%)을 부과하는 일종의 사치세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12.5% 수준으로 인하되었다가, 1979년 표준세율로 통합·폐지되었음

○ 도입 당시 휘발유(경유 제외) 등의 물품에 할증세율이 적용되었으며, 1975년에는 적용대상 항목이 전자기기, 항공기, 모피 및 보석류 등까지 확대되었고, 1979년 표준세율 인상과 함께 표준세율로 통합·폐지됨

〈표 Ⅳ-19〉 영국: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

(단위: %)

<table>
<tr><th>적용일자</th><th>표준세율</th><th>경감세율</th><th>할증세율</th></tr>
<tr><td>1973. 4. 1.</td><td>10</td><td rowspan="6">8[1)]</td><td rowspan="3">25[2)]</td></tr>
<tr><td>1974. 7. 29.</td><td rowspan="3">8</td></tr>
<tr><td>1974. 11. 18.</td></tr>
<tr><td>1975. 5. 1.</td><td rowspan="2">12.5</td></tr>
<tr><td>1976. 4. 12.</td></tr>
<tr><td>1979. 6. 18</td><td>15[3)]</td><td rowspan="6">폐지</td></tr>
<tr><td>1991. 4. 1</td><td rowspan="2">17.5</td><td rowspan="5">5[5)]</td></tr>
<tr><td>1997. 9. 1</td></tr>
<tr><td>2008. 12. 1</td><td>15[4)]</td></tr>
<tr><td>2010. 1. 1</td><td>17.5</td></tr>
<tr><td>2011. 1. 4</td><td>20</td></tr>
</table>

주: 1) 가정 또는 자선단체에서 사용하는 연료 및 전기에 한하여 경감세율이 도입됨
2) 도입 당시 휘발유(경유 제외) 등의 물품에 적용되었다가 1975. 5. 1.에 적용 품목이 전자기기, 라디오, 텔레비전, 음향기기, 유람선, 항공기, 트레일러형 카라반, 사진장비, 모피 및 보석류까지 확대됨
3) 기존의 할증세율(1974~1979년 운영)이 폐지되고 표준세율로 통합 운영됨
4) 금융위기(2008년)에 따라 일시적으로 표준세율을 인하함(박정수, 『주요국의 소비세제도: 영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12., p. 52)
5) 1997년 경감세율이 8%에서 5%로 인하되었고, 이후 경감세율 적용대상 과세품목 또한 점차 확대됨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 검색일자: 2021. 12. 9.

2) 경감세율 대상

□ 경감세율은 1994년 연료 및 전기 공급에 대하여 8% 경감된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면서 도입되었고, 1997년부터는 필수 재화 및 용역을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세율(8%→5%)이 인하됨

□ 현재 부가가치세법 Section 29A에 따라 Schedule 7A에 나열된 경감세율 적용대상 과세품목에 한하여 표준세율이 아닌 경감세율(5%)을 적용하며, 재무부의 결정에 따라 경감세율 적용 품목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147)]

○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하여 2020. 7. 15.~2022. 3. 31.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접객업, 호텔 및 숙박시설, 관광지 입장료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한 바 있음(감면세율 적용 이후 회계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12.5% 세율을 적용함)

- 5% 감면세율 적용: 2020. 7. 15.~2021. 9. 30.
- 12.5% 감면세율 적용: 2021. 10. 1.~2022. 3. 31.
- 20% 표준세율 적용: 2023. 4. 1. 이후

〈표 Ⅳ-20〉 영국: 경감세율(5%) 대상 재화 및 용역

구분	항목	내용
Group 1	연료 및 전력	가정용(또는 자선단체용) 연료 및 전력 공급
Group 2	에너지절약 시설	에너지절약 시설을 주거용(또는 자선단체용)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간에 따라 경감세율 또는 영세율(한시 적용) 적용[1)] - 2019. 10. 1.~2022. 3. 31.: 5%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2019. 10. 1.~2023. 4. 30.) - 2022. 4. 1.~2027. 3. 31.: 0% (북아일랜드: 2023. 5. 1.~2027. 3. 31.) - 2027. 4. 1. 이후: 5%
Group 3	난방·보안 시설	적격거주자[2)]의 주거용(또는 자선단체용) 건물에 난방·보안 시설(장비) 설치

147) legislation.gov.uk, “reduced rate”,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4/23/section/29A; “change at reduced rate“,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4/23/schedule/7A, 검색일자: 2024. 12. 13.

〈표 Ⅳ-20〉의 계속

구분	항목	내용
Group 4	여성 위생용품	삭제[3]
Group 5	아동용 카시트	아동(14세 미만)용으로 차량에 설치하는 안전좌석
Group 6	주거용 건물로 개조	건물 내 주거지 수를 늘리거나 주거용 특정 건물(예: 다세대 주택)로 전환하거나 빈집(2년 이상)의 개조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Group 7	적격 개보수	특정한 사유에 따라 적격 건물 또는 부지의 변환·개조과정에 필요한 용역
Group 8	피임용품	인간의 피임을 목적으로 설계된 재화
Group 9	복지상담 용역	자선단체(또는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상담 용역
Group 10	노인용 이동보조기구	노인(60세 이상)의 이동보조 기구(손잡이, 계단용 리프트, 경사로, 내장형 샤워의자 등) 설치 용역
Group 11	금연 보조제품	인간의 금연을 목적으로 고안된 의약품의 공급
Group 12	카라반	중고 여부, 제작방식, 규격에 따라 표준·경감·영세율 적용 - 7m(가로)×2.55m(세로) 이하: 표준(20%) - 7m×2.55m 초과 & 표준제작방식 미준수: 경감(5%) - 7m×2.55m 초과 & 표준제작방식 준수: 영세율(0%) - 중고: 영세율(0%)
Group 13	케이블카	10인 미만의 좌석을 갖춘 케이블카 또는 이와 유사한 이동수단(예: 스키장 리프트)
Group 14	케이터링	2020. 7. 15.~2022. 3. 31. 동안(한시 적용) 케이터링으로 공급되는 재화(해당 장소에서 소비되는 식음료)
Group 15	호텔·호스텔 등	2020. 7. 15.~2022. 3. 31. 동안(한시 적용) 면세로 구분되지 않은 호텔·호스텔 등의 공급
Group 16	입장권 및 관람료 등	2020. 7. 15.~2022. 3. 31. 동안(한시 적용) 면세로 구분되지 않은 특정 관광명소의 입장권 및 관람료 등

주: 1) 2022. 4. 1.(북아일랜드의 경우, 2023. 5. 1.) 이전에는 사용자가 사회정책 요건(60세 이상 또는 특정급여 수급자) 또는 에너지절약 설비의 비용요건(해당 설비 자재비용이 총 청구비용의 60% 이하)을 만족하여야 함(영국 정부, https://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ukgwa/20240123165554/https://www.gov.uk/guidance/vat-on-energy-saving-materials-and-heating-equipment-notice-7086, 검색일자: 2025. 2. 6.)
2) 60세 이상 또는 특정 정부보조금(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함(Sch. 7A Pt.2 Group 3)
3)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한 경감세율이 2021.1.1.부터 공제권이 있는 면세(0%)로 전환됨(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at-on-womens-sanitary-products-notice-70118, 검색일자: 2025. 1. 22.)

자료: legislation.gov.uk, 「Value Added Tax Act 1994」, "SCHEDULE 7A"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4/23/schedule/7A, 검색일자: 2024. 12. 13.;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more-reduced-rated-supplies, 검색일자: 2024. 12. 10.

3) 영세율 대상

□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 표준세율과 함께 도입되었고, 면세와 달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의무와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됨

□ 부가가치세법 Section 30은 수출품 및 Schedule 8에 나열된 품목에 한하여 영세율(0%)이 적용되며, 재무부의 결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 품목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148]

〈표 Ⅳ-21〉 영국: 영세율 대상 재화 또는 용역

구분	항목	내용
Group 1	식료품	몇몇 항목[1]을 제외한 인간이 소비하는 식료품 등(동물의 사료, 씨앗, 가축)
Group 2	하수, 용수	오수, 하수 또는 저수, 방수, 정화 등과 관련된 용역
Group 3	도서	도서, 신문, 아동용 그림책, 악보, 지도, 전자출판물 등
Group 4	시각장애인용 도서, 용품	적격기관[2]에서 공급하는 시각장애인용 재화 또는 용역
Group 5	건축, 개보수	- 주거용 신규주택 등[3]의 양도 또는 장기(21년)임대 - 주거용 주택 등[3](공원의 토목 용역 포함)의 건설 용역 - 비거주용 주택의 주거용·주거목적 건물로 개조 용역 - 위와 관련한 건축 자재의 공급
Group 6	건축문화재	공법상 등록된 건축문화재의 최초 양도 또는 개보수 용역
Group 7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한 용역	수출, 수입되는 재화와 관련한 용역
Group 8	운송	적격 선박·항공기·구명보트·여객운송(10인 이상)·화물운송의 공급, 수리·유지보수 용역, 개조 용역 등[4]
Group 9	카라반, 하우스보트	적격 카라반·하우스보트[5]의 공급 및 제공 용역
Group 10	금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또는 런던금시장(London Gold Market) 회원에게 공급, 런던금시장에서 중앙은행으로의 공급
Group 11	지폐	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

148) legislation.gov.uk, “reduced rate”,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4/23/section/29A; “charge at reduced rate“,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4/23/schedule/7A, 검색일자: 2024. 12. 13.

〈표 Ⅳ-21〉의 계속

구분	항목	내용
Group 12	의약품, 장애인용 보조기구	적격 의료인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 장애인용 보조기구, 자선단체를 통해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일부 재화 및 용역
Group 13	수출, 수입	세관신고 이전의 수입된 재화의 공급, 해외 기관·단체 등에게 또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Group 14	면세점	삭제
Group 15	자선단체	자선단체 등[6]에 기부된 또는 기부하는 재화 자선단체 등[6]에 수행되는 재화의 수출 자선단체 등[6]에 공급되는 의약품 등
Group 16	아동용 의류 등	유아 및 아동용 의류, 신발 등 산업용 안전화, 안전모 등
Group 17	온실가스 배출권	삭제
Group 18	삭제	
Group 19	여성 위생용품	여성 위생용품의 공급
Group 20	감염증 보호 장비	2020. 5. 1.~2020. 10. 31. 동안 공급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보호 장비
Group 21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한 해외상품 (간주 공급)	영국 외부에 설립된 사업자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
Group 22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Free zones) 사업체에 공급하는 특정 재화 또는 해당 재화와 관련해 수행되는 용역
Group 23	에너지절약 시설	에너지절약 시설을 주거용(또는 자선단체용)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간에 따라 경감세율 또는 영세율(한시 적용) 적용[7] - 2019. 10. 1.~2022. 3. 31.: 5%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2019. 10. 1.~2023. 4. 30.) - 2022. 4. 1.~2027. 3. 31.: 0% (북아일랜드: 2023. 5. 1.~2027. 3. 31.) - 2027. 4. 1. 이후: 5%

주: 1) 영세율 제외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냉동제품, ② 제과류(케이크 제외), ③ alcohol duty가 부과되는 음료, ④ 기타 음료(과일주스·스포츠음료 등), ⑤ 일부 가공식품(감자칩 등), ⑥ 애완동물용 사료, ⑦ 가정용 맥주·과실주·와인; 다만 영세율 제외항목 중 다음의 식료품은 면세 대상으로 포함; ① 요구르트, ② 물기를 제거한 체리, ③ 차·마테·허브차, ④ 코코아·커피, ⑤ 우유, ⑥ 육류·효모·계란

2) 왕립시각장애인협회(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 국립청취도서관(National Listening Library) 또는 이와 유사한 자선단체에 한함; 자선단체의 경우 무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함

3) 주거용 주택, 자선목적의 주택, 비주거용 주택을 주거용·주거목적으로 개조한 경우를 말함

4) 여객운송이 주요 목적이 아닌 관광, 오락, 입장, 주차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제외됨

5) 규격 및 제조 규칙을 충족하는 카라반과 주거용 하우스보트에 한함
6) 자선단체, 이익을 자선단체에 귀속하는 자 등을 말함
7) 2022.4.1.(북아일랜드의 경우, 2023. 5. 1.) 이전에는 사용자가 사회정책 요건(60세 이상 또는 특정급여 수급자) 또는 에너지절약 설비의 비용요건(해당 설비 자재비용이 총 청구비용의 60% 이하)을 만족하여야 함(영국 정부, https://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ukgwa/20240123165554/https://www.gov.uk/guidance/vat-on-energy-saving-materials-and-heating-equipment-notice-7086, 검색일자: 2025. 2. 6.)

자료: legislation.gov.uk, 「Value Added Tax Act 1994」, "SCHEDULE 8"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4/23/schedule/8, 검색일자: 2024. 12. 13.;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more-reduced-rated-supplies, 검색일자: 2024. 12. 10.

나. 면세제도

□ 영세율 및 경감세율 적용 품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간주되나 면세 적용 품목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됨

○ 영세율 및 경감세율 적용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의무와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됨

○ 면세품목만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공제도 허용하지 않음

○ 영세율 및 면세제도 모두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영세율은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반면 면세제도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영세율은 해당 적용 품목 매출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영(0)으로 적용함에 따라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면세는 해당 적용 품목 매출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Section 31(Exempt supplies)은 Schedule 9에 나열된 품목에 한하여 면세 혜택이 적용되며, 재무부의 결정에 따라 면세 품목 및 면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149]

○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도입(1994년) 이후 2012년에 시행된 제도임[150]

149) legislation.gov.uk, "exempt supplies",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4/23/section/29A; "exemptions",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4/23/schedule/9, 검색일자: 2024. 12. 16.

〈표 Ⅳ-22〉 영국: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

구분	항목	내용
Group 1	토지 및 건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권·권리·허가 등
Group 2	보험·재보험 용역	보험·재보험 거래 및 서비스 관련 용역
Group 3	우편 용역	공공 우편 용역 및 이와 관련한 재화의 공급
Group 4	내기, 도박, 복권	내기, 도박, 복권, 복권 판매 시 소매업자의 수수료
Group 5	금융 용역	예금·증권·대출·신용 등 금융과 관련한 주된 용역
Group 6	교육 용역[1)]	자격기관[2)]에서 제공하는 교육 또는 직업훈련 용역
Group 7	보건, 복지 용역	의료 및 치과 진료, 혈액·장기 공급, 자선단체·복지기관·공공기관에서 공급되는 복지 재화 또는 용역
Group 8	장례	사망자의 유해 처리 또는 이와 관련한 용역
Group 9	노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인 노동조합, 전문협회 등의 가입·구독권
Group 10	스포츠	스포츠 경기 참가권 및 경기와 관련한 필수 용역 - 참가권의 대가가 금전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금액 모두가 상금으로 수여되는 경우에 한함
Group 11	예술품, 골동품	수의계약[3)]을 통해 특정 기관에 처분되는 예술품 등 국세청에 세금납부의 일환으로 처분되는 예술품 등
Group 12	자선행사	자선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자선행사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Group 13	문화서비스 등	공공기관 또는 적격기관[4)]이 공급하는 문화 행사 및 시설의 입장권
Group 14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재화의 공급	
Group 15	투자목적의 금	투자용 금의 공급(양도)
Group 16	독립적 인적 집단	면세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집단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특정 용역

주: 1) 2025.1.1.부터 사립학교(학원)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교육용역은 표준세율(20%)로 과세함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대학교,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이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이익 모두를 단체 운영에 사용하는 단체),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기관을 말함
3) 수의계약(private treaty sale)이란 경매/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특정 조건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합의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함; 구매자가 영국 국립박물관/미술관(UK National Museums and Galleries) 또는 국립예술기금(National Art Collections Fund)인 경우로 한정됨
4) 공공기관이란 정부, 지자체, 비정부 공공기관, 적격기관이란 수익 배분을 하지 않고, 해당 수익을 기관에 재투자하며, 비영리·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을 의미하고, 문화 행사 및 시설의 입장권이란, 박물관, 미술관, 전시회, 동물원, 연극, 음악회 또는 이와 유사한 문화 행사 및 시설의 입장권을 말함

자료: legislation.gov.uk, 「Value Added Tax Act 1994」, "SCHEDULE 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4/23/schedule/9, 검색일자: 2024. 12. 16.;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more-reduced-rated-supplies, 검색일자: 2024. 12. 16.

150)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cost-sharing-exemption-manual/cse1450, 검색일자: 2021. 12. 16.

6. 뉴질랜드

□ 뉴질랜드 부가가치세법(Goods and Services Tax Act 1985)은 1985년에 제정되어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151]

○ 부가가치세 도입은 세수 기반 확대, 세제시스템의 경제적 왜곡 감소, 납세협력비용 및 납세행정비용 절감을 목표로 도입되었음

○ 또한 부가가치세 도입은 당시 최대 66%였던 소득세율을 낮추고 과도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축소하여 소득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영리성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활동으로서 대가성이 있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의미함[152]

○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을 위해 매입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과세관청에 납부함

○ 만약 사업자가 직전 12개월간 공급가액이 NZD 60,000 미만이거나 향후 12개월간 공급가액이 NZD 60,000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의무가 없음

- 다만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자발적 등록이 가능함

---

151)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85”, https://www.taxtechnical.ird.govt.nz/pib-reviews/archived-legislative-commentary/부가가치세/goods-and-services-tax-act-1985, 검색일자: 2025. 1. 16.; IBFD, “New Zealand - Goods and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8. Exemptions (Last Reviewed: 15 February 2025)”, HYPERLINK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nz_s_008.html”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vat/html/evat_nz_s_008.html, 검색일자: 2025. 2. 20.; Tax Working Group(2018), p. 4

152)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85」 §6; Tax Working Group(2018), p. 5; Inland Revenue, “Registering for GST”, https://www.ird.govt.nz/gst/registering-for-gst, 검색일자: 2025. 2. 15.

□ 2022년 기준 뉴질랜드의 총 조세수입에서 부가가치세 수입은 30.3%를 차지하며 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153][154]

○ 이는 2000년(24.9%)에 비해 5.4%p 증가한 수치임

○ 총 조세수입은 소득세(41.6%), 부가가치세(30.3%), 법인세(13.7%), 재산세(5.8%),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5.7%), 기타(2.9%) 순으로 구성됨

-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에는 알코올음료 등에 부과하는 소비세가 있음
- 기타에는 소득세나 법인세 항목에 할당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됨

□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은 2022년 10.0%로 2000년(8.1%)에 비해 1.9%p 증가하였음[155]

가. 세율

1)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

□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표준세율 15%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0%가 있음[156]

□ 부가가치세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상으로, 1989년 표준세율이 10%에서 12.5%로 인상되었으며 2010년에 한 번 더 15%로 인상되었음[157]

153) OECD(2024b), p. 15, pp. 234~236
154) 뉴질랜드의 총 조세수입에는 다른 OECD 회원국과 달리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되지 않음
155) OECD(2024b), p. 69
156)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85」 §8, §11
157) Percy(2019), p. 231

〈표 Ⅳ-23〉 뉴질랜드: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

(단위: %)

적용기간	표준세율
1986 - 1988	10
1989 - 2009	12.5
2010 - 현재	15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가 정리

□ 2010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12.5%에서 15%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소득세 중심의 조세구조에서 소비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2010년 예산안의 일환이었음[158]

○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Tax Working Group(2010)은 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이 저축 유인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함[159][160]

- 당시 뉴질랜드는 소득세 의존도가 높았으나 소득세는 '효율성과 성장'[161]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으며, 특히 개인 이자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높은 세금이 저축부담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됨[162]
- 반면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는 자본에 과세하지 않아 저축을 왜곡하지 않으며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세율 인상에 대해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그 차이를 과장해선 안 된

158) Inland Revenue, "GST rate increase", https://www.taxtechnical.ird.govt.nz/new-legislation/act-articles/taxation-budget-measures-act-2010/gst-rate-increase, 검색일자: 2025. 1. 25.

159)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Tax Working Group(2010), p. 37

160) 2010년 10월 1일 이후부터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과 동시에 개인 소득세 세율이 소득구간별 2%p-6%p 인하되었음(Inland Revenue, "Personal tax cuts", https://www.taxtechnical.ird.govt.nz/new-legislation/act-articles/taxation-budget-measures-act-2010/personal-tax-cuts, 검색일자: 2025. 1. 25.)

161) 견고한 세제시스템을 위한 6가지 원칙으로 ① 효율성과 성장, ② 공정성과 형평성, ③ 세수의 지속가능성, ④ 재정적 비용, ⑤ 납세협력비용 및 납세행정비용, ⑥ 일관성을 제시함. 효율성과 성장 원칙에 따라 세제는 특정 투자에 편향을 초래하지 않고, 자원 사용에서 불필요한 왜곡을 일으키지 않고, 경제주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봄(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Tax Working Group(2010), p. 15)

162)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Tax Working Group(2010), p. 23

다는 의견도 있었음[163]

○ 사람들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하여 지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출이 평생소득을 측정하는 더 나은 기준이 될 수 있음

-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구보다 높지만 총지출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대체로 동일한 경향을 보임

2) 경감세율 대상

□ 뉴질랜드에서 표준세율 15%가 아닌 0%가 적용되는 거래가 있으며 이는 대부분 수출, 해상·항공운송 등 국경 간 거래에 해당함[164]

○ 다만 다음과 같은 국내 거래에도 0%가 적용되지만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음

- 과세활동을 수행하는 계속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거주지 용도를 제외함)
- 귀금속 거래업자에게 최초 공급하는 투자용 귀금속(순도 99% 이상인 금·은 등)
- 배출권거래제도(ETS) 또는 영구산림탄소흡수이니셔티브(PFS) 하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예: 뉴질랜드 배출권, 교토준수 배출권) 이전

〈표 Ⅳ-24〉 뉴질랜드: 부가가치세 0% 대상

구분	내용
국내 거래	과세활동을 수행하는 계속기업[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거주지 용도 제외)
	귀금속 거래업자에게 최초 공급하는 투자용 귀금속(순도 99% 이상인 금·은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163)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Tax Working Group(2010), pp. 45~48

164)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85」 §11; IBFD, "New Zealand - Goods and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Last Reviewed: 15 February 2025)". HYPERLINK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nz_s_7.&refresh=1744846878830%23evat_nz_s_7"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nz_s_7.&refresh=1744846878830%23evat_nz_s_7., 검색일자: 2025. 2. 20.

〈표 Ⅳ-24〉의 계속

구분	내용
국경 간 거래	수출 재화 및 용역
	국외 토지나 국외 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공되는 용역[2]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출원, 부여, 이전 등 기타 관련 용역[3]
	제조, 수리 등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입된 재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공되는 용역
	국경 간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 관련 거래
	국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우편물과 관련하여 국외 우편조직에 제공되는 용역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4]
	수출되는 선박·항공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공되는 용역
	국외에서 물리적으로 수행되는 용역[5] 등
	국외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용역 등
	국외에서 과세활동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무를 수락하는 용역(예: 영업제한)
	비거주자 기업이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온라인 도서·영화·음악 등 원격서비스(비거주자 기업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경우)[6]
	국외 통신사업공급자에게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등

주: 1) 농부가 자신의 낙농 농장을 토지, 가축, 건물·기계를 포함하여 사업 일체를 다른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자인 농부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2) 뉴질랜드 건축가가 해외 고객을 위해 해외에 건축될 건물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설계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함. 이와 비슷하게 국외에 있는 토지, 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제공되는 법률 용역, 보험용역도 마찬가지로 영세율을 적용함
3) 뉴질랜드 작가의 책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뉴질랜드 출판회사 A가 다른 뉴질랜드 출판회사 B에게 그 도서의 국외 저작권을 판매하는 경우, 출판회사 B는 국외에서 그 책을 출판 및 판매하므로 국외 저작권 판매에 대한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4) 뉴질랜드 과일재배업자가 1,000상자의 과일을 수출하는데, 해외 수령인이 과일의 품질 보장을 위해 뉴질랜드의 원예전문업체에 과일 검수조사보고서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이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5) 뉴질랜드 가수가 해외공연을 하는 경우 해당 공연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6) 비거주자 기업은 영세율 처리로 뉴질랜드에서 매입 부가가치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음

자료: 뉴질랜드 부가가치세법 §11; Inland Revenue(2024), pp. 7~8

나. 면세제도

□ 뉴질랜드는 광범위한 과세 기반과 낮은 세율 접근을 바탕으로 금융용역, 주택 임대·양도 등 극히 제한된 항목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주요 면세 항목인 금융용역과 주택임대는 분배 문제 해결이나 소비자 행동 변화 목적으로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 면세되고 있음[165]

○ 금융용역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자와 저축자 간 차입 및 대출 중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자금의 출처와 차입자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 용역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금융기관이 명시적인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자율 마진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됨
- 그러나 2005년부터 기업 간 금융용역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금융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실현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음[166]

○ 주택임대 용역을 면세하는 주요 이유는 임대 주택과 본인소유 주택 간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주택소유자가 자신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활동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소득세법에서 귀속임대료에 과세하지 않는 것과 유사함
- 또한 많은 국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주택임대에 대해 면세하고 있음

---

165) Tax Working Group(2018), pp. 10~11

166)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간 이루어지는 금융용역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신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음.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금융용역은 여전히 면세함(「Goods and Services Tax Act 1985」 §11A (1) (q), (r); Inland Revenue (2004), p. 1)
- 공급자의 요건으로 공급자가 해당 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선택했을 것
- 공급받는 자의 요건으로 총공급 중 과세공급이 75% 이상이거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완전자회사이고 그 기업집단의 전체 총공급 중 과세공급이 75% 이상일 것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 한편 투자용 귀금속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가 저축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된 것임

〈표 Ⅳ-25〉 뉴질랜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구분	내용
(a)	제3조에서 정의하는 금융용역 및 이와 합리적·부수적으로 필요한 재화·용역 〈제3조에서 정의하는 금융용역〉 · 통화교환 · 수표 또는 신용장 발행, 지급, 수금, 소유권 이전 · 채무증권 발행, 할당, 인수, 수락, 배서, 소유권 이전 · 주식증권 또는 참여증권의 발행, 할당, 소유권 이전 · 주식증권, 채무증권, 참여증권 거래 · 신용 및 대출 공급 · 생명보험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 · 연금제도에 따른 용역 공급 · 특정 증권, 신용계약, 생명보험계약, 연금제도 등과 관련한 이자, 원금, 배당, 기타 지급액의 수금 또는 지급 · 단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채권 추심 용역은 면세 금융용역에서 제외함
(b)	비영리단체가 기부받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c), (ca), (cb)	주택 및 부수토지 임대 등
(d)	공급일 이전 5년 동안 독점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던 주택 판매
(e)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귀금속

자료: 뉴질랜드 부가가치세법 §14

□ 뉴질랜드는 부가가치세제를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운영하며 극히 제한적인 면세범위를 설정함[167]

○ Bach et al.(2021)는 주요 부가가치세 모델을 유럽, 뉴질랜드, 일본 모델로 구분하며 뉴질랜드와 일본 모델을 이상적인 체계로 평가함[168]

-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부가가치세 시스템은 예외를 최소화하고 모든 소비 지출

167) Tax Working Group(2018), p. 4; Bach et al.(2021), pp. 31~32
168) Bach et al.(2021), pp. 31~32

에 대해 단일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간주되며 이 두 모델은 모두 넓은 과세 기반에 단일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징이 있음

□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분배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169]

○ 식품과 같은 재화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고소득 가구보다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됨

□ Tax Working Group(2018)은 뉴질랜드의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접근 방식이 여전히 적절한지 검토함

○ 부가가치세의 분배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식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면 저소득 가구보다 고소득 가구가 더 큰 절대적 혜택을 받게 됨
- 예외를 두면 복잡성과 임의적 경계를 초래하고 비교적 단순한 경계를 설정하더라도 기업은 면세 대상 거래를 식별하고 분리하는 데 준수비용이 발생함
- 특정 재화·용역 면세는 분배적 또는 정책적 이유로 이루어지며 유사한 이유로 추가 면세 요청을 반대하기 어려워져 과세 기반이 약화되고 세수 부족분을 다른 방식으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짐

○ 분배적 문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초래할 비효율성과 행정적 단점을 고려해 소득세 누진성 강화나 복지 이전과 같은 다른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정부는 분배적 또는 사회적 정책 목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는 그중 하나에 불과함
- 식료품 면세는 세수 감소가 지나치게 크므로 동일한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169) Percy(2019), p. 242

7. 일본

□ 일본의 소비세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와 같이 상품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부가가치세라고 하지 않고 소비세(consumption tax)라 함[170]

○ 일본은 1988년까지 개별 상품에 대한 물품세, 입장세 등으로 부과해 오다가 1988년 1월 세제개혁으로 소비세를 도입하였고 1989년 4월 1일부터 3%의 세율로 부과하기 시작하였음

○ 소비세 도입 시 세수 중립성을 위해 3%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소비세 도입 전후의 소비과세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 OECD 통계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소비세 수입 비율이 1980년에 4.0%이고 도입 직후인 1990년에 3.9%였음

○ 일본이 소비세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크게 4가지로 제시되고 있음

- 과세 재화 간의 불균형 및 용역 과세의 미흡 문제가 심각하였음
- 소득과세에 편중되어 있어 수평적 공평을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일본의 개별 소비과세 제도가 외국의 소비과세 제도와 차이가 있어 무역마찰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구조가 필요했고 일반 소비세의 도입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책목적이 있었음[171]

□ 소비세는 소비 일반에 대해 광범위하고 공평하게 과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국내 판매 및 제공 등을 과세대상으로 함[172]

○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단계에서 재화 및 용역의 판매 및 제공 등에 관한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판매 및 일정의 매입에 대해 과세하고 세금의 누적을

---

170) 국중호(2019), pp. 3~13

171) 2007년 일본정부 세제조사회에서도 소비세는 사회보장재원을 담당하는 데 적합하다고 하였고 2014년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면서 그 인상분 3%p를 사회보장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음

172) 寺崎寛之(2023), p. 208

배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매출 등에 관한 세액에서 매입에 관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납부함

- 과세 매출에 관한 소비세액과 과세 매입에 관한 소비세액에 대해서는, 각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함[173]

○ 일본의 소비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가 납세의무자가 됨[174]

○ 과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175]의 기준기간[176] 과세매출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사업자임

○ 국내에서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대가를 받고 행하는 자산의 양도, 자산의 대출 및 용역의 제공에 과세되기 때문에 상품의 판매나 운송, 광고 등 대가를 받고 행하는 거래 대부분이 과세대상임

-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수입 시 과세됨

□ 일본에서는 소비세 과세와 관련하여 거래 종류를 과세거래, 면세거래, 비(非)과세거래, 불(不)과세거래[177]로 구분함[178]

---

173) 일본 국세청, 「消費税のしくみ」,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1_3.htm, 검색일자: 2024. 12. 9.

174) 일본 국세청, 「消費税のしくみ」,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1_3.htm, 검색일자: 2024. 12. 9.

175) 개인사업자는 역년, 법인은 사업연도

176) 개인사업자는 전전연도, 법인은 전전사업연도

177)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과세거래란 국외에서 행해지는 거래나 자산의 양도 등에 해당하는 않는 거래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일본 국세청, 「No.6157 課税の対象とならないもの(不課税)の具体例」,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hi/6157.htm, 검색일자: 2025. 1. 10.)
- 급여·임금: 고용계약에 근거한 노동의 대가이며, 사업자가 사업으로 하는 거래가 아님
- 기부금, 축하금,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조성금 등
- 무상에 의한 무료샘플 및 견본품 제공: 일반적으로 대가를 얻어 행하는 거래가 아님
- 보험금이나 공제금: 자산의 양도나 대여, 역무의 제공 등의 거래가 아님
- 주식의 배당금 및 기타 출자 분배금: 주주나 출자자의 지위에 근거해 지불되는 것이고, 자산의 양도나 대여, 역무의 제공 등의 거래가 아님
- 자산의 도난·폐기·멸실
- 심신 또는 자산에 대하여 가해진 손해의 발생에 수반하는 손해배상금

178) 우리나라는 면세제도라는 용어가 사용되나 일본의 경우 면세 거래는 수출 면세와 같이 일정 절차에 따라 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비과세거래는 거래의 성격상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임(국중호(2019), p. 84)

○ 원칙적으로 국내에서의 모든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은 과세대상이나 국내거래 중 일부는 비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음

○ 수입거래는 과세거래와 비과세거래로 구분하고 국외거래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과세대상 외의 거래로서 불과세거래에 해당함[179]

○ 비과세와 면세거래는 매입세액공제에 차이가 있음[180]

- 비과세거래는 관련 매입 소비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음
- 면세거래(수출 등)는 관련 매입 소비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표 Ⅳ-26〉 일본: 소비세 거래종류 및 과세 여부

		거래 종류	과세 여부
국내거래	자산의 양도 및 역무의 제공	과세거래	과세
		수출거래에 대한 면세거래	일정 절차에 따라 소비세 면제 (예: 수출영세율)
		비(非)과세거래[1)]	과세되지 않음(예: 토지의 양도, 대여)
	그 외의 거래	불(不)과세거래	과세대상 외의 행위(예: 기부금, 배당 등)
수입거래		과세거래	과세(외국화물의 거래 등)
		비과세거래	과세되지 않음(예; 유가증권 수입 등)
국외거래		불(不)과세거래	과세대상 외의 거래

주: 1) 우리나라의 면세에 해당함
자료: 寺崎寛之(2023), p. 211

179) 비과세거래와 불과세거래는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동일하지만, 과세매출비율의 계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과세매출비율은 분모를 총 매출액(과세거래, 비과세거래 및 면세거래의 합계액)으로 하고, 분자를 과세 매출액(과세거래 및 면세거래의 합계액)으로 했을 때의 비율임. 비과세거래는 원칙적으로 분모에 산입하지만 불과세거래는 원래 소비세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 모두에 산입하지 않음(일본 국세청, 「No.6209 非課税と不課税の違い」,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hi/6209.htm, 검색일자: 2025. 1. 10.)

180) 일본 국세청, 「No.6205 非課税と免税の違い」,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hi/6205.htm, 검색일자: 2025. 1. 10.

□ 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181]의 기준기간[182]의 과세매출 및 특정 기간의 과세매출액 등이 1,000만엔 이하인 사업자로 당해 연도(또는 사업연도)의 납세의무가 면제됨[183]

○ 기준기간에 1,000만엔 이하여도 특정 기간에 과세매출이 1,000만엔을 넘은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과세대상자가 됨

- 특정 기간이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법인의 경우는 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의미함
- 특정 기간의 과세매출 1,000만엔의 판정은 과세매출액 대신 급여 등 지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할 수도 있음

□ 일본은 소비세 도입 이후 1991년 5월의 소비세 개정에 의해 비과세(면세) 범위를 확대하였고, 개인소득과세의 세부담 축소와 소비과세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1994년의 세제개혁에 의해 1997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5%(지방소비세 포함)로 인상하고 중소사업자에 대한 특별조치가 개정되었고 2003년 세제개정으로 중소사업자에 대한 특별조치가 축소되었음[184]

○ 2012년 8월에는 세제발본개혁법이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을 합한 소비세의 세율을 2014년 4월 이후 8%, 2015년 10월 이후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인상분은 전액 사회보장재원에 충당하도록 함에 따라 2014년 4월에 세율이 8%로 인상되었음

○ 2015년에 예정되었던 소비세 10%로의 인상 계획은 두 번 연기되어 2019년 10월에 실시되었음

- 표준세율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8%의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표준세율 10%, 경감세율 8%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음

○ 즉 소비세 도입 이후 3차례의 세율 인상이 있었고 현재는 1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185]

---

181) 개인사업자는 역년, 법인은 사업연도
182)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법인은 전 사업연도
183)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5,000만엔 이하인 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함
184) 寺崎寛之(2023), p. 204

□ 2022년 기준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은 15.1%이고 국내총생산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은 5.2%임[186)]

○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은 2000년(9.1%)에 비해 6%p 증가한 수치임

- 총 조세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38.5%), 소득세(18.8), 부가가치세(15.1%), 법인세(13.7%), 재산세(7.9%),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5.8%) 순으로 구성되어, 부가가치세는 조세수입 항목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국내총생산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은 2000년(2.3%)에 비해 2.9%p 증가한 수치임

가. 세율

1)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

□ 과세거래에 대한 소비세 세율은 표준세율, 경감세율을 두고 있음[187)]

○ 표준세율은 10%이며, 이는 소비세율 7.8%와 지방소비세율 2.2%로 구성됨

- 과세대상자 입장에서는 소비세와 지방소비세를 구별하지 않고 합계인 10%의 세율이 적용됨

○ 경감세율은 8%이며, 이는 소비세율 6.24%와 지방소비세율 1.76%로 구성됨

- 경감세율은 식료품(주류 및 외식 제외)과 신문(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적용함

185) 국중호(2019), p. 14

186) OECD(2024b), p.15, p. 69

187) 일본 국세청, 「消費税のしくみ」,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1_3.htm, 검색일자: 2024. 12. 9.

〈표 Ⅳ-27〉 일본: 소비세율 변화

(단위: %)

	1989.4.1.~ 1997.3.31.	1997.4.1.~ 2014.3.31.	2014.4.1.~ 2019.9.30.	2019.10.1.~ 현재	
				표준세율	경감세율[1)]
소비세율	-	4.0	6.3	7.8	6.24
지방소비세율	-	1.0	1.7	2.2	1.76
합계	3.0	5.0	8.0	10.0	8.0

주: 1) 소비세 경감세율은 2019년 10월 1일 세율 인상 전과 동일한 8%이지만 소비세율(6.3→6.24%)과 지방소비세율(1.7→1.76%)의 비율은 차이가 있음

자료: 일본 국세청, 「軽減税率制度の概要」,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01.htm, 검색일자: 2024. 12. 9.

2) 경감세율 대상

□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이하 '소비세')의 세율이 2019년 10월 1일에 8%에서 10%로 인상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종전과 같이 8%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감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음[188)]

○ 즉,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의 세율구조가 10%의 표준세율과 8%의 경감세율인 복수세율이 되었음[189)]

□ 경감세율 적용 대상은 ①주류·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과 ②정기구독계약이 체결된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의 양도임[190)]

○ 주류·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의 양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음식료품이란, 「식품표시법」에서 규정하는 식품(모든 음식물) 즉, 사람의 음용 또는 식용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중 주류·외식을 제외한 것이 경감세율 대상임

188) 일본 국세청, 「軽減税率制度の概要」,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01.htm, 검색일자: 2024. 12. 9.

189) 경감세율제도의 실시에 따라 소비세 등의 세율이 표준세율(10%)과 경감세율(8%)의 복수 세율이 되었으므로, 사업자는 소비세 등의 신고 등을 하기 위해, 거래 등을 세율마다 구분하여 기장하는 구분경리를 실시함

190) 일본 국세청, 「消費税のしくみ」,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1_3.htm, 검색일자: 2024. 12. 9.

- 홍차와 티컵 세트와 같이 식품과 식품 이외의 자산이 일체로 되어 있는 자산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감세율 대상이 됨
- 외식이나 케이터링은 경감세율 대상이 아니고 테이크아웃이나 음식료품의 택배 등은 경감세율 대상임
- 외식이란 음식점 영업 등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테이블, 의자 등의 음식에 이용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을 말함
- 외식과 테이크아웃의 구분은 식료품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판매자가 고객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판정함

○ 일정의 제호를 이용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일반 사회적 사실을 게재하는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을 정기구독 계약에 근거해 판매하는 경우는 경감세율 대상임
- 매점 등에서의 신문 판매나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전자신문은 표준세율 대상임

나. 면세제도[191]

□ 우리나라는 '면세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일본은 '비과세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192]

○ 일본 세제상 비과세거래는 거래의 성격상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면세거래는 수출면세(영세율)와 같이 일정 절차에 따라 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임
- 즉, 일본 세제에서의 비과세거래는 우리나라의 면세거래에 해당하고 수출거래에 대한 면세는 우리나라의 영세율제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소비세는 원칙적으로 국내의 모든 재화 및 용역의 판매 및 제공, 화물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그 재화 및 용역 중에는 소비세의 성격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거나 정책적 배려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있음[193]

191) 일본에서는 '비과세거래'라 함
192) 국중호(2019), p. 84

○ 소비세 성격상 과세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음

- 토지의 양도 및 대여, 유가증권 및 지불수단의 양도, 예금이자 및 보험료를 대가로 하는 서비스 제공, 우표류·인지 및 증지의 양도,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의 양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일정한 사무에 관한 서비스 제공, 외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

○ 소비세가 소비 일반에 널리 부담을 요구한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에 의해 비과세거래는 다음과 같이 상당히 제한임

- 사회보험 의료의 급부, 개호보험 서비스의 제공, 사회복지사업 및 갱생보호사업으로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의사 및 조산사에 의한 조산 서비스, 화장료 및 매장료를 대가로 하는 용역의 제공, 일정한 신체장애인용 물품의 양도 및 대여, 학교교육, 학교교육법에 규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양도, 주택의 대여

〈표 Ⅳ-28〉 일본: 소비세 성격상 면세되는 거래

구분	내용
소비세 성격상 면세	토지(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 포함)의 양도 및 대여[1)]
	유가증권 등의 양도: 국채나 주권 등 유가증권, 등록국채, 합명회사 등 직원의 지분, 저당증권, 금전채권 등의 양도[2)]
	지불수단의 양도: 은행권, 정부지폐, 소액지폐, 동전, 수표, 약속어음 등 양도를 포함함[3)]
	예금의 이자 및 보험료를 대가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 등: 예금 및 대출금의 이자, 신용보증료, 합동운용신탁 및 공사채 투자신탁의 신탁보수, 보험료, 보험료와 유사한 공제금
	우표류, 인지 및 증지의 양도
	상품권(物品切手), 선불카드 등과 같은 물품증서의 양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일정한 사무에 관한 서비스: 국가, 지방공공단체, 공공법인, 공익법인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일정한 사무에 관한 역무의 제공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되는 수수료[4)]
	외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

193) 寺崎寛之(2023), p. 214; 일본 국세청, 「消費税のしくみ」,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1_3.htm, 검색일자: 2024. 12. 9.

〈표 Ⅳ-28〉의 계속

구분	내용
정책적 배려에 의한 면세	사회보험 의료의 급부 등: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의료, 산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自賠責保険)의 대상이 되는 의료 등[5]
	개호[194]보험 서비스의 제공 등: 개호보험법(介護保険法)에 근거하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주택서비스, 시설서비스 등[6]
	사회복지사업 및 갱생보호사업으로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등[7]
	의사 및 조산사 등에 의한 조산(助産)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등
	화장(火葬)료나 매장(埋葬)료를 대가로 하는 용역의 제공
	일정한 신체장애인용 물품의 양도나 대여 등
	학교교육: 학교교육법에 규정하는 학교, 전수학교, 수업연한이 1년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각종 학교 등의 수업료, 입학검정료, 입학금, 시설설비비, 재학증명 수수료 등
	학교교육법에 규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양도
	주택의 임대: 사람의 거주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이 명확한 것[8]

주: 1) 1개월 미만의 토지의 대여 및 주차장 등 시설이용에 수반해 토지가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2) 주식·출자·예탁 형태에 의한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 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3) 지불수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전자결제수단 및 암호자산(또는 가상통화) 및 전자결제수단의 양도도 면세에 해당함. 단, 수집품 양도는 제외
4) 일정한 사무란, 등기, 등록, 특허, 면허, 허가, 검사, 검정, 시험, 증명, 공문서의 교부 등임
5) 단, 미용 성형이나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제외
6) 단,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특별한 거실의 제공 등의 대가는 제외
7) 「사회복지법」에 규정하는 제1종 사회복지사업, 제2종 사회복지사업, 「갱생보호 사업법」에 규정하는 갱생보호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 등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8) 1개월 미만의 임대 등(일시적 사용)은 제외

자료: 일본 국세청, 「No.6201 非課税となる取引」,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hi/6201.htm, 검색일자: 2025. 1. 8.; 寺崎寛之(2023), p. 214

□ 사업자가 국내에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비세가 과세되지만 과세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수출거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비세가 면제됨[195]

○ 국내로부터의 수출로서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 국내와 국외 간의 통신 및 우편

194) 노인 수발이나 간병을 의미함

195) 일본 국세청, 「No.6551 輸出取引の免税」,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hi/6551.htm, 검색일자: 2025. 1. 9.

○ 비거주자[196]에 대한 광업권, 공업 소유권, 저작권, 영업권 등의 무체 재산권의 양도 또는 대여

○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

- 다만,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라도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관한 운송이나 보관 혹은 국내에서의 음식이나 숙박 외,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직접 편익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 대상인 수출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소비세가 부과됨

196) 비거주자란 「외환 및 외국무역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를 말하므로, 일본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지 않는 자연인 및 일본 내에 주된 사무 장소가 없는 법인임. 비거주자의 일본 내 지점, 출장소 및 기타 사무소는 법률상의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봄

V. 국제비교

□ 한국을 포함한 7개 조사대상국(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일본)의 부가가치세 세율, 세수 및 면세범위를 비교 분석함

○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초경감세율(5% 미만의 세율), 국내공급에 적용되는 영세율(공제권이 있는 면세)이 있는 경우 특별세율로 분류한 뒤 각 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구조 및 표준세율 수준을 비교 분석함

○ 조사대상국의 부가가치세 법률상 면세항목을 조사하고, 한국에서 면세하는 주요 항목(14가지)을 중심으로 과·면세 여부와 과세한다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비교 분석함

1. 세율 및 세수 비교

□ 국내거래에 적용되는 세율을 보면 7개 조사대상국 중 한국, 뉴질랜드, 일본은 2단계, 독일, 영국은 3단계, 프랑스, 스웨덴은 4단계 세율구조임

○ 한국과 뉴질랜드는 각각 10%, 15%의 표준세율과 0%의 특별세율를 적용하며 일본은 10%의 표준세율과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독일은 19%의 표준세율, 7%의 경감세율, 0%의 특별세율을 적용하며, 영국은 20% 표준세율, 5%의 경감세율, 0%의 특별세율을 적용함

○ 프랑스는 20%의 표준세율, 10%, 5.5%의 경감세율, 2.1%의 특별세율을 적용하며, 스웨덴은 25%의 표준세율, 12%, 6%의 경감세율, 0%의 특별세율을 적용함

○ 한편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5% 이상의 경감세율과 5% 미만의 특별세율[197]을

각각 최대 2개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이를 준용하고 있음

□ OECD 회원국의 평균 표준세율은 19.3%이며, 조사대상국 중 한국, 일본, 뉴질랜드, 독일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고, 프랑스, 스웨덴, 영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표준세율을 적용함

○ 한편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15% 이상의 표준세율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19%), 프랑스(20%), 스웨덴(25%)은 15% 이상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Ⅴ-1〉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단위: %)

	표준세율	경감세율	특별세율
한국	10.0	-	0.0
독일	19.0	7.0	0.0
프랑스	20.0	10.0 / 5.5	2.1
스웨덴	25.0	12.0 / 6.0	0.0
영국	20.0	5.0	0.0
뉴질랜드	15.0	-	0.0
일본	10.0	8.0	-
OECD 평균	19.3		

주: 1. 2025년 1월 1일에 적용 가능한 세율을 기준으로 함
2.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특별세율에는 초경감세율(5% 미만), 국내 공급에 적용되는 영세율(공제권 있는 면세)을 포함함
3. 국내거래에 적용되는 세율만 비교함
자료: 본문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조사대상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변화를 보면, 한국과 스웨덴은 변화없이 각각 10%, 25%의 세율을 유지한 반면, 그 외 국가들은 동 기간 동안 표준세율이 인상됨

○ 일본은 5%에서 10%로 5%p 인상되어 상당히 큰 폭의 세율 인상이 있었음

197) 초경감세율(5% 미만 세율) 1개와 국내 공급에 적용하는 영세율(공제권 있는 면세) 1개를 말함

○ 독일은 16%에서 19%로 3%p 인상되었고, 영국과 뉴질랜드도 각각 17.5%에서 20%로, 12.5%에서 15%로 2.5%p 인상되어 적지 않은 폭의 세율 인상이 있었음

○ OECD 회원국 평균 표준세율은 17.7%에서 19.3%로 1.6%p 인상된 반면, 프랑스(0.4%p), 한국, 스웨덴은 평균 인상 폭 이하의 인상 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Ⅴ-2〉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추이

(단위: %)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한국	10.0	10.0	10.0	10.0	10.0	10.0
독일	16.0	16.0	19.0	19.0	19.0	19.0
프랑스	19.6	19.6	19.6	20.0	20.0	20.0
스웨덴	25.0	25.0	25.0	25.0	25.0	25.0
영국	17.5	17.5	17.5	20.0	20.0	20.0
뉴질랜드	12.5	12.5	15.0	15.0	15.0	15.0
일본	5.0	5.0	5.0	8.0	10.0	10.0
OECD 평균	17.7	17.8	18.0	19.2	19.2	19.3

주: 매년 1월 1일에 적용 가능한 세율을 기준으로 함
자료: 본문 및 OECD Consumption Tax Trends 각 연도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2022년 기준 총 조세수입(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이 낮은 수준에 속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으로 각각 15.1%(5.2%), 15.3%(4.9%)임

○ 스웨덴(22.1%)과 영국(20.7%)의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은 OECD 회원국(20.8%)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독일(18.9%)과 프랑스(16.4%)는 대표적인 유럽 국가임에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음

○ 뉴질랜드의 총 조세수입 및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은 각각 30.3%, 10.0%로, 총 조세수입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30.3%)은 OECD 회원국 평균(20.8%)보다 높음

- 다만 뉴질랜드는 의무 사회보장기여금 제도가 없어[198] OECD의 총 조세수입 통계에도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8) OECD, “Taxing Wages – New Zealand”,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issues/tax-policy/taxing-wages-new-zealand.pdf, 검색일자: 2025. 3. 18.

〈표 Ⅴ-3〉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

(단위: %)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					
	2000	2005	2010	2015	2020	2022	2000	2005	2010	2015	2020	2022
한국	3.6	3.8	3.9	3.6	4.2	4.9	17.0	17.4	17.5	15.3	15.1	15.3
독일	6.7	6.1	7.0	7.0	6.5	7.5	18.4	17.7	19.6	18.4	16.9	18.9
프랑스	7.2	7.2	6.8	6.9	7.0	7.5	16.7	16.6	16.0	15.1	15.4	16.4
스웨덴	8.2	8.5	9.1	9.0	9.2	9.4	16.4	17.9	21.1	20.9	21.6	22.1
영국	5.9	6.0	6.1	6.9	6.7	7.3	18.1	18.6	18.9	21.7	20.3	20.7
뉴질랜드	8.1	8.6	9.3	9.5	10.3	10.0	24.9	23.8	30.7	30.2	30.6	30.3
일본	2.3	2.5	2.5	4.1	4.9	5.2	9.1	9.5	9.6	13.7	14.9	15.1
OECD 평균	6.3	6.5	6.3	6.5	6.7	7.0	19.6	20.2	20.5	20.2	20.1	20.8

자료: OECD(2024a), p.32; Annex Table 1.A.4., OECD(2023), p. 85 Table 3.14.

2. 면세범위 비교

□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주요 항목을 기초생필품, 국민후생, 문화, 기타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한 후, 조사대상국에서 해당 항목이 과세 또는 면세되는지를 비교 분석함

○ 또한 복수세율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해당 항목에 표준세율 또는 경감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함

○ 각 범주별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기초생필품: 미가공식료품, 여객운송용역, 영유아용품
- 국민후생: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주택임대용역
- 문화: 예술품, 예술·문화행사, 도서
- 기타: 금융·보험용역, 농업, 인적용역, 환경, 비영리활동

○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가. 기초생필품

□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한국은 면세하며 그 외 조사대상국은 과세함

○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대부분의 식료품에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영국은 특별세율을 적용함

- 한편 이들 국가는 고가 식료품(바닷가재, 캐비어, 굴 등), 기호식료품(제과류,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알코올음료를 경감세율(또는 특별세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EU 부가가치세 지침」에서 식료품을 경감세율(또는 특별세율)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독일, 프랑스, 스웨덴도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한국은 미가공식료품을 제외한 식료품에 대해 표준세율로 과세하지만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일본은 경감세율(또는 특별세율)을 적용함

□ 대중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한국은 면세하며 그 외 조사대상국은 과세함

○ 한국은 대중 여객운송용역(시내·시외버스, 일반고속버스, 도시철도, 일반철도 등)에 면세하나, 고속버스(우등, 고급)에는 과세함

- 다만 우등·고급고속버스가 아닌 일반고속버스는 시외버스 등과 유사한 대중교통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일몰규정으로 면세했으며, 2021년부터 영구규정으로 면세함

○ 여객운송용역은 「EU 부가가치세 지침」의 경감세율 대상에 속하며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경감세율을 적용함

- 경감의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스웨덴은 2단계 세율(12% / 6%) 중 낮은 단계(6%)를 적용하는 반면, 프랑스는 3단계 세율(10% / 5.5% / 2.1%) 중 가장 높은 단계(10%)를 적용하고 있음
- 특히 독일은 운송거리에 따라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을 구분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내 운행 또는 50km 이내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함

○ 영국은 10인 이상의 여객운송의 경우에만 특별세율을 적용함[199)]

○ 뉴질랜드, 일본은 표준세율을 적용함

□ 영유아용품에 대해 한국과 영국을 제외한 조사대상국은 표준세율로 과세함

○ 한국은 영유아용 기저귀나 분유에 면세하고 있으며, 영국은 아동 의류 및 신발에는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아동용 카시트에는 경감세율을 적용함

〈표 Ⅴ-4〉 국제비교: 기초생필품

(단위: %)

	EU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일본
표준세율	15	10	19	20	25	20	15	10
미가공식료품	경감[1)]	면세	경감 7	경감 5.5	경감 12	특별 0	표준 15	경감 8
여객운송용역	경감[1)]	면세	경감 7	경감 10	경감 6	특별 0	표준 15	표준 10
영유아용품	표준	면세	표준 19	표준 20	표준 25	특별 0 경감 5	표준 15	표준 10

주: 1) 미가공식료품, 여객운송용역에는 특별세율 적용도 가능함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국민후생

□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사대상국은 면세함

○ 한국은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외한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면세함

○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공법에 따라 규율되는 단체 또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승인을 받은 사립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면세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해당 의료·보건용역에 면세함

- 의료·보건용역은 「EU 부가가치세 지침」에서 공익을 보호하는 활동으로 간주되어 면세하는 대표적인 항목임

○ 다만 뉴질랜드는 예외적으로 의료·보건용역에 과세함

199) 10인 미만 케이블카 또는 이와 유사한 이동수단(예: 스키장 리프트)에는 경감세율(5%) 적용

□ 교육용역의 경우 뉴질랜드를 제외한 조사대상국에서 국·공립학교의 교육용역에 면세하며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립교육기관의 교육용역에 대해서도 면세함

○ 다만 정규 교육과정이나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단순 여가활동을 위한 교육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

○ 교육용역은 의료·보건용역처럼 「EU 부가가치세 지침」에서 공익 보호를 위한 주요 활동으로 인정되며 공법에 따라 규율되는 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립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면세하도록 규정함

○ 영국과 일본은 사립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과세하며 특히 영국은 2025년부터 사립학교의 유료 교육용역에도 과세 예정임

□ 한국과 조사대상국 모두 주택임대용역에 면세함

○ 영국은 주거·자선 목적의 장기(21년) 임대 등의 경우 특별세율을 적용함

○ 한편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주택임대용역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면세를 적용하도록 하는데 주택임대용역을 경감세율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음

- 회원국의 입법재량 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주택임대용역에 면세 대신 과세하는 경우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표 Ⅴ-5〉 국제비교: 국민후생

(단위: %)

	EU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일본
표준세율	15	10	19	20	25	20	15	10
의료보건용역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표준 15	면세
교육용역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1)]	표준 15	면세[1)]
주택임대용역	면세 경감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특별 0	면세	면세

주: 1) 영국과 일본은 사립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영국은 2025년부터 사립학교의 교육용역에도 과세 예정임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문화

□ 예술문화행사에 면세규정을 적용하는 국가(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의 경우 모두 제한적으로 면세규정을 적용함

○ 한국을 포함한 조사대상국(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에서 면세 대상 예술문화행사를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로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 한국은 비영리적인, 독일은 연방·주·지자체(또는 인증기관)에서 주최하는, 프랑스는 비영리단체가 주최하는, 스웨덴은 공공기관(지자체)이 주최하는, 영국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가 주최하는 예술문화행사에 면세를 적용함

○ 그 외 영리적 목적으로 예술문화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한국과 영국[200]은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반면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특별 또는 경감세율로 과세함

- 면세 외 예술문화행사에 대하여 독일(7%), 스웨덴(6%)은 한 가지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프랑스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2.1%/5.5%/10%)이 상이함

○ 한편 「EU 부가가치세 지침」이 공공부문의 예술문화행사를 면세 대상 품목, 문화행사 및 시설의 입장료를 경감세율 품목으로 포함함에 따라 독일, 프랑스, 스웨덴도 이를 준용하고 있음

○ 다만 뉴질랜드, 일본의 경우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예술문화행사에 표준세율을 적용함

□ 예술품에 대하여 한국은 영리성과 관계없이 면세하는 반면 대부분의 조사대상국은 비영리적 공급으로 한정하여 면세하고, 그 외 영리적 공급에는 과세함

○ 한국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을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규정하고 영리성에 관계없이 면세함

○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은 제한적으로 예술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적용함

---

200) 단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하여 영리목적으로 개최되는 예술문화행사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을 적용한 바 있음

-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EU 부가가치세 지침」에서 공공기관 등의 비영리적 문화용역 및 이와 밀접한 재화를 면세항목으로 포함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예술품 판매를 면세함
- 다만 스웨덴의 경우 이 외에도 창작자(상속인 포함)의 일정금액(300,000크로나[201]) 미만의 예술품 판매에 대하여도 면세함
- 영국은 수의계약을 통해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에 공급되거나 세금납부의 일환으로 처분되는 예술품의 경우에만 면세함

○ 반면 그 외 영리적 목적의 예술품 거래에 대하여 한국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국에서 과세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EU 부가가치세 지침」이 예술품을 경감세율 품목으로 포함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함
- 영국, 뉴질랜드, 일본은 예술품 거래에 표준세율을 적용함

□ 도서에 면세규정을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며,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경감세율, 영국은 특별세율, 뉴질랜드, 일본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도서란 모든 출판물을 총칭하며, 도서에 부수한 음반, 녹음·비디오테이프, 전자출판물을 포함함

- 도서의 발행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면세되는 도서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신문(2015), 실내 도서열람 용역(2023)도 면세 대상으로 포함됨

○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도서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며, 영국도 도서에 대하여 특별세율(0%)을 적용하고 있음

○ 뉴질랜드, 일본은 도서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함

- 일본은 일반적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나 교과용 도서에 한해 면세를 적용함

---

201) 한화로 환산하면 약 4,000만원(2025년 2월 18일 기준으로 4,035만 6,000원)임

〈표 Ⅴ-6〉 국제비교: 문화

(단위: %)

	EU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일본
표준세율	15	10	19	20	25	20	15	10
예술 문화 행사	면세 경감	면세	면세 경감 7	면세 특별 2.1 경감 5.5 경감 10	면세 경감 6	면세	표준 15	표준 10
예술품	면세 경감	면세	면세 경감 7	면세 경감 5.5	면세 경감 12	면세 표준 20	표준 15	표준 10
도서	경감[1)]	면세	경감 7	경감 5.5	경감 6	특별 0	표준 15	표준 10

주: 1) 도서에 특별세율 적용도 가능함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기타

□ 조사대상국의 금융보험용역, 농업 등의 재화 및 용역, 인적용역, 환경과 관련한 거래, 비영리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조사하여 분석함

□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조사대상국 모두 면세규정을 적용하나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는 법률상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금융보험용역을 기술적·행정적 목적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스웨덴도 이를 면세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 한국 또한 금융보험용역의 과·면세 여부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사업 및 역무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폭넓게 면세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202]된 바 있고, 최근까지 과·면세 전환에 대한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 중 하나임

202) 홍병진·박수진·서동연(2023), p. 155

- 2019년에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2022년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이 면세로 전환됨

□ 한국, 독일, 프랑스는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 포함) 부문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 규정을 두는 반면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일본은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203]을 두지 않음

○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204]에 따라 해당 산업 부문의 기자재, 석유류 등[205]의 공급에 대한 특별세율(0%), 면세 규정을 적용함

-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고, 종사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면세 규정을 적용함
- 해당 규정들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일몰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몰이 계속하여 연장되었음

○ 독일은 제한적으로 농·임업 사업장에 제공되는 인력에 면세를 적용하며, 농업 등 부문의 비료, 사료, 품질 검정과 관련한 용역 등에 경감세율(7%)을 적용함

- 제한적이란, 해당 산업 부문의 법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사업장(상시근로자 3인 이상)에 특정 기관(법정사회보험기관)에서 제공하는 인력지원을 말함

○ 프랑스는 농업 등 부문의 비료, 사료 등에 경감세율(5.5% 또는 10%)을 적용하며, 한시적으로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임업·벌목 용역에 대하여도 경감세율을 적용함

○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농업 생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기계, 건물 등 자본재는 제외)을 경감세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의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경감세율 규정이 있으나 스웨덴은 해당 품목에 대한 규정을 운영하지 않음

○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일본은 농업 등의 부문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음

---

203) 다만 해당 산업 부문의 생산물이 식료품으로 구분되는 경우 식료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나 해당 사례는 다루지 않음

20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5) 영농조합법인 등이 제공하는 농어업 경영·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도 있음

□ 개인 인적용역의 경우 조사대상국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별도의 규정을 운영함

○ 개인 인적용역이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6]를 말함

□ 환경과 관련한 면세, 특별세율 또는 경감세율 규정은 일본을 제외한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운영하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하는 국가는 한국뿐임

○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규정을 두고 온실가스배출권, 목재펠릿, 전기수소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함

○ 독일은 태양광 발전 설비, 영국은 에너지절약시설, 뉴질랜드는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하여 특별세율을 적용함

- 영국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비교적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나, 특정 기간 또는 신규주택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감세율보다 우대되는 특별세율[207]을 적용함

○ 프랑스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스웨덴은 특정 물품(자전거 등)[208]의 수리 용역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함

○ 한편 2022년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경감세율 목록에 환경과 관련한 거래(예:태양광 패널의 공급 및 설치)를 추가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는 그린딜 관련 품목을 경감세율 또는 특별세율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을 포함한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비영리 활동에 대한 면세규정을 운영함

○ 독일, 영국의 경우 면세 외 비영리 활동에 대하여 각각 경감, 특별 세율을 적용함

- 독일은 공공기관 및 승인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에 대하여 면세하고 그 외 비영

---

20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의 1호로 한정하여 분석함

207)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특별세율 적용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경우 2022. 4. 1.~2027. 3. 31.에 설치하는 경우, 북아일랜드는 2019. 10. 1.~2023. 4. 30.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이후에는 경감세율(5%)이 적용됨

208) 특정 물품이란 자전거, 신발, 가죽제품, 의료, 가정용 린넨을 말하며, 이와 관련한 소모품, 재료 등 해당 용역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재화를 포함하고 이 규정은 해당 물품의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함

리 활동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함

- 영국은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면세, 특별 또는 경감세율을 적용함

○ 다만 스웨덴의 경우 적격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용역에 특별세율(0%)을 적용하나 이는 공제권이 있는 면세 품목으로 운영됨

○ 한편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비영리 활동을 포함한 공익 보호 목적의 다양한 활동을 면세 대상 목록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비영리 활동에 대하여 각각 면세, 특별 및 경감세율을 적용함

○ 뉴질랜드, 일본 또한 비영리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비영리 단체가 기부받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함
- 일본은 사회복지사업, 갱생보호사업으로 행하는 자산의 양도에 면세함

〈표 Ⅴ-7〉 국제비교: 기타

(단위: %)

	EU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일본
표준세율	15	10	19	20	25	20	15	10
금융보험용역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농업 등	경감	면세 특별 0	면세 경감 7	경감 5.5 경감 10	표준 25	표준 20	표준 15	표준 10
개인 인적용역	표준 15	면세	표준 19	표준 20	표준 25	표준 20	표준 15	표준 10
환경	경감[1)]	면세	특별 0	경감 5.5	경감 12	특별 0 경감 5	특별 0	표준 10
비영리 활동	면세	면세	면세 경감 7	면세	특별 0	면세 특별 0 경감 5	면세	면세

주: 1) 태양광 설비에는 특별세율 적용도 가능함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Ⅵ. 시사점 및 결론

1. 세율

□ 부가가치세는 2024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전체 세수 중 평균 20%가 넘어 세수 측면에서 중요한 세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총세수의 약 15.3%를 차지하고 있음

○ 총세수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 변화를 보면, OECD 회원국의 평균은 2000년 19.6%에서 2022년 20.8%로 소폭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17%에서 2022년 15.3%로 감소하였음

○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와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해당 비율이 증가하였음

- 독일은 18.4%에서 18.9%로, 스웨덴은 16.4%에서 22.1%로, 영국은 18.1%에서 20.7%로, 뉴질랜드는 24.9%에서 30.3%로 그리고 일본은 9.1%에서 15.1%로 증가하였음

○ 비율이 증가한 국가 중 스웨덴을 제외한 4개국에서 2000년 이후 표준세율의 인상이 있었음

- 독일은 16%에서 19%로, 영국은 17.5%에서 20%로, 뉴질랜드는 12.5%에서 15%로, 일본은 5%에서 10%로 모두 2%p 이상의 의미 있는 세율 인상이 있었음

□ 선행연구[209]에서는 우리나라에 세율 변동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재정이 비교적 건전하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210] 비율은 2003년

209) 성명재(2012), p. 19

210)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즉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국가채무 = (국채잔고+

19.1%에서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211],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소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세수 부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212]

○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방향이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24년 GDP 대비 46.2%(1,177.1조원)에서 2033년 57.7%(2,087.5조원)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213]

○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소득 기반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세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치가 과거의 전망치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214]

- 장기 전망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의 세제 및 사회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감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이러한 세수 감소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임

○ 최근 20년간 OECD 회원국 중 약 60%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표준세율을 인상하여 OECD 평균 표준세율이 2003년 17.8%에서 2024년 19.3%로 1.5%p 증가하였음

차입금잔고+국고채부담행위+지방정부채무)-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211) 지표누리,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2&idxCd=4209, 검색일자: 2025. 2. 17.

212) 2023년 기준 46.9%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달러, 엔, 유로와 같이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를 제외한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싱가포르(168.3%)와 이스라엘(56.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한국경제, 「위험한 착각…선진국보다 국가부채비율 낮으니 괜찮다?」, 2024. 1. 2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2991301)

213) 국회예산정책처(2024b), p. 48

214) 정다운·성명재(2024), pp. 64~65
성명재(2012)의 연구 결과에서는 2025년 부가가치세수는 약 123조 2천억원으로 추정했으나 2023년 연구에서는 93~98조원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2030년에는 이 격차가 더 벌어져 성명재(2012)의 추정치는 154.9조원이었으나 정다운·성명재(2023)의 추정치는 111.8조원(거시적 방법)~126.7조원(미시적 방법)으로 기존 추정치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2016년에 많은 OECD 회원국이 표준세율을 인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금융 및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

○ 뉴질랜드는 비교적 최근인 1986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고 10%의 세율로 시작했으나 1989년 12.5%, 2010년 15%로 2차례의 세율 인상이 있었음

- 세율 인상 배경을 보면, 2010년 당시 뉴질랜드는 소득세에 크게 의존했으나 이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부가가치세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었음

○ 일본은 오랫동안(1997~2014년) 5%의 세율을 유지하다가 2014년에 8%로, 2019년에 10%로 인상하여 단기간에 2배에 달하는 세율 인상이 있었음

- 일본은 인상분을 전액 사회보장재원에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세율 인상의 배경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각 국가에서는 각기 다른 원인으로 세율을 인상하였음

□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세수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있으나 아직 세율 인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님

○ 세부담에 역진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함

○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하여 조사대상국과 같이 표준세율을 인상하면서 필수 소비재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세제가 복잡해지고 조세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단점으로 경감세율의 도입에 회의적인 견해가 많음

○ 현재와 같이 영세율을 제외한 단일세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합리적 수준의 세율 인상과 세율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 활용에 대한 정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임

- 즉, 늘어나는 재원을 역진성 완화 및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적 제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소득 과세[215]가 37.3%이고 소비 과세[216]가

22.7%로, 소득 과세 의존도가 높으나 국가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점차 소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다만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2. 면세범위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세의 본질적인 문제인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일부 재화 및 용역에 낮은 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경감세율, 특별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본 연구의 국제비교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표준세율(10%)이 낮고, 항목별 면세 대상이 넓다는 특징이 있음

- 2024년 기준으로 표준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9.3%p 낮고, 항목별 면세 대상을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면세범위를 가지는 특징이 있음[217]

215) 소득세와 법인세의 합을 의미함

216) 부가가치세 및 그 외 소비세의 합을 의미함

217) 다만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수율(VRR)은 0.74로 OECD 회원국(37개국) 중 3번째로 높은데 이는 이론적으로 잠재적 부가가치세 수입의 26%가 징수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한편 부가가치세수율은 정책적 요인, 납세순응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괏값으로 OECD(2024a)보고서는 해당 지표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주의깊게 해석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예로 뉴질랜드(0.98, 1위)와 룩셈부르크(0.79, 2위)는 부가가치세수율이 높지만 그 원인은 매우 다름. 뉴질랜드의 경우 매우 광범위한 과세 기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아주 제한된 항목에 면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따른 것이라 평가되고, 룩셈부르크의 경우 금융시장 자유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EU 내 금융, 전자상거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면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됨(OECD(2024a), pp. 69~72)

□ 다만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과 관련한 연구들은 부가가치세 감면조치(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하는 것)가 부가가치세로 인한 역진성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그 효율성에 비해 세수 측면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함[218)]

○ 초기 연구들은 감면조치 사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하였으나 해당 조치들은 필수적으로 세수 손실 및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함

- 추가적인 비용이란 적격성 판단 문제, 조세 중립성 상실, 시장경제 왜곡, 조세계획 및 조세회피, 납세행정비용 증가 등을 말함

○ 최근 실증분석 연구들은 필수재라 하더라도 고소득 가구의 절대적 소비지출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역진성이 반드시 감소하지는 않으며, 완화되더라도 그 효과에 비해 매우 높은 세수 손실을 수반해야 한다고 지적함

○ 다만 감면조치의 이점이 불분명하다는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 소비세를 도입한 뉴질랜드(1989년), 호주(2000년) 또한 복수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몇몇 항목에 대한 면세제도도 운영함

- 본 보고서의 조사대상국 중 하나인 뉴질랜드는 전통적인 부가가치세와 달리 제한적으로 특별세율 및 면세를 적용하고 있어 과세 기반이 넓다는 의미에서 현대적인 부가가치세(Modern VAT)라 평가됨[219)]

□ 한편 일반적으로 감면조치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항목 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적용됨

○ 일반적으로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소비(예: 도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을 지원(예: 농업)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필수적인(예: 보건) 항목이므로, 과세행정상의 이유(예: 금융서비스)로 감면조치가 적용됨

- 또한 전통적·역사적 이유로 인한 감면조치(예: 우편)도 있음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 및 면세 대상을

218) Harju, J., Kosonen, T., & Skans, O. N.(2018) pp. 48~72.; de la Feria, R., & Swistak, A.(2024).; OECD·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2014).

219) de la Feria, R., & Swistak, A.(2024); OECD·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2014)

구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EU 회원국들과 달리 주로 면세제도를 통해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임[220]

○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면세를 포함하여 경감세율,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영세율은 대부분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 재화 및 용역에 적용되나 우리나라는 국내 소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함

-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수출이 아닌 국내 거래에 적용되는 영세율을 특별세율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농업 및 어업 기자재, 도시철도 건설 서비스, 국방물자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여객운송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금융용역, 부동산 임대, 예술품, 인적용역, 도서 등에 영구적으로 적용되나 일부 항목(도서지방 석유류, 개인택시용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됨

- 일몰규정은 조세지출평가에 따라 적용기한이 연장되기도 함

□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이 제한적이고 몇몇 감면대상 품목은 정책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함

○ 검토 대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면세이나 조사대상국에서는 대부분 과세하는 항목 중 과세 경계의 모호성 및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가공식료품, 개인 인적용역, 예술품임

-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면세, 조사대상국에서는 과세하는 품목에는 여객운송용역, 도서, 영유아용품이 있으며 이들 품목은 대중이 널리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이면서 누적효과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어 본 보고서의 검토 범위에서 제외함[221]

---

220) OECD·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2014)

221) 여객운송용역, 도서에 대해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은 과세하나 경감세율(영국은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소비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일본은 표준세율로 과세함. 영유아용품은 영국(경감세율)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국이 표준세율로 과세함

가. 식료품

□ 식료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미가공식료품에 면세를 적용하고 그 외 식료품은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조사대상국에서는 경감세율 또는 영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즉, 식료품과 관련하여 주요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가공과 미가공으로 구분하여 달리 과세하지 않고 식료품 자체를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보아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 미가공식료품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저소득층 및 농·어업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목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미가공식품에 한정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미가공식료품은 면세하고 가공식료품은 과세하는 차별적 과세는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차별적 과세가 정당화되려면,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소비 성향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득계층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222)]

○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 기준이 모호하고 이로 인해 과세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2022년 단순가공식료품이 면세항목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는 미가공식료품에 한정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면세의 모호성이 여전히 존재함

○ 미가공식료품이 과세대상 재화의 생산을 위한 투입재로 중간 단계에 사용되는 경우 누적효과 발생으로 최종소비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음

○ 미가공식료품의 면세는 농어업 보호를 위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면세 혜택은 최종소비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농어민에 대한 지원 효과는 명확하지 않음

222) 김유찬·이혜진(2012), p. 153

□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제도는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농어업 보호의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상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면세되는 모든 식료품의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전환하여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 미가공식료품을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면 현재의 면세제도에서 발생하는 조세불형평성, 거래의 불투명, 누적효과, 행정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

○ 그러나 미가공식료품에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 역진성 강화와 농어업 보호 철폐라는 인식으로 조세저항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이러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함

□ 영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식료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가 크고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지원이지만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있을 것이므로 역진성 완화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세제도에서 영세율로 전환 시 세금 환급을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로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감소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

나. 개인 인적용역

□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 모두 공통적으로 의료·교육 등 공익적 성격이 크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별도 조문[223]을 마련해 개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224]에 면세하고

2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있으며, 그 범위가 의료 및 교육에 한정하고 있지 않아 조사대상국에 비해 상당히 광범위함

- 해당 조문에서는 면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열거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어 열거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면세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실제는 근로고용관계(근로소득)임에도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이 실질과 달라질 수 있음

○ 개인 인적용역 공급자는 과세사업자등록 여부를 통해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과세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등록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이들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음

○ 동일한 용역이더라도 법인·개인사업자가 공급하면 과세되고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공급하면 면세되므로 공급자의 과세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법에서 면세 항목을 열거하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개인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는 1977년「부가가치세법」제정 당시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사업이라고 할 정도의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거래징수와 신고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어려운 현실과 근로용

---

224) 다음의 각 인적용역에 면세함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 서적·음반 등 외판원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연기·심사를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역과 유사한 측면을 고려한 것임[225]

□ 우리나라에서 개인 인적용역 면세를 최초로 입법할 당시에는 경제활동과 납세행정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미비했으나, 현재는 디지털 인프라가 크게 발전함에 따라 도입 당시의 면세 취지가 현재의 상황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조치가 최종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다음의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은 경감세율이 사회 정책적으로 필요하지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용역 제공 사업자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1982년 자유직업인의 자유직업활동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을 폐지했음

□ 부가가치세 면세의 취지가 소비자의 세부담과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개인 인적용역의 면세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별도 조문[226]에서 '개인의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 규정되어 있어 면세범위가 넓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과세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이루기 위해 개인 인적용역을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개인 인적용역에 과세할 경우, 당초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소규모 공급자의 거래징수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이미 운영 중인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규정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제도를 통해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할 수 있으며,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됨[227]

---

2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2002. 1. 1.] [제17460호,2001. 12. 31.] 일부개정; 이창희(2022), p. 1131

2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 다만 간이과세 배제업종[22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음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규정[229]은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거래 특성상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보다 매입자가 대금을 지급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규정의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법정기한 내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신청과 과세관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전 합의하면 발급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와 상기 국가들은 모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만 발행 요건에서 차이를 보임[230]
- 면세인 개인 인적용역을 과세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사업자인 경우) 간의 사전합의를 통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하면 인적용역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231]

---

227) 「부가가치세법」 제61조

228)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주로 B2B 거래에 해당함. 광업, 제조업(단,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과자점, 떡류 등)는 제외), 도매업, 전문자격사(변호사업 등), 건설업(단,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배·실내장식 등)는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단,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는 제외)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229)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현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규정은 매입자의 비용 증빙 용이성 및 공급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급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연락 두절, 휴업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매입자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후 매입자 및 공급자 양측 관할 과세관청의 거래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할 수 있음

230) 김재진·이형민·조승수(2017), p. 80

231) 한편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부담을 지지만 면세 인적용역 공급자에게 소득 지급 시 발생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3.3%) 원천징수 의무가 사라져 전체 납세협력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임

다. 예술품[232]

□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조사대상국은 비영리 목적의 예술품 거래에 면세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예술품 전시회 및 이에 부수적으로 판매되는 예술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함

- 스웨덴은 창작자가 법정 금액(약 4천만원) 미만으로 예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함

○ 영국도 매우 제한적으로 면세를 적용하는데 수의계약을 통해 국립박물관 등에 공급되는 예술품에 한하여 면세함

□ 영리 목적으로 거래되는 예술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면세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국[233]과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과세[234]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예술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거래가 영리 목적을 가지는지 여부, 거래 금액의 크기, 공급주체가 창작자인지 중개업자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 미술품의 경우, 그동안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려워 과세에 한계가 있었으나[235]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236]이 202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술품의 유통 현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과세 인프라도 점진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예술품에 대한 면세범위를 형평성, 중립성을 기준으로 영리 예술품에는 과세하는 방

---

232) 비교 가능성을 위해 예술품 범위를 미술과 사진으로 한정함. 우리나라는 면세대상 예술창작품을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미술과 사진만 포함하므로 국제비교를 위해 동일한 범위를 적용함

233)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경감세율로 과세하며, 영국, 뉴질랜드, 일본은 표준세율로 과세함

234) OECD(2024a), pp. 93~99

235) 신상화·송은주·이서현(2019), pp. 107~109

236) 「미술진흥법」 제6조(실태조사), 제15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제23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등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면세 규정상 영리 예술행사에는 과세되지만 영리 예술품에는 면세되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문화·예술은 가치재 성격을 지니며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237], 동일한 취지라면 영리 목적의 예술행사에도 면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영리 예술행사까지 면세할 경우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의 일반소비세 원칙상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기 어려움
- 예술품 거래 중에서도 영리성이 있거나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중개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과세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로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술품에 대한 면세도 다른 면세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세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경우, 다른 산업에서도 면세 적용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보다는 직접세 감면이나 재정 지원과 같은 다른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

○ 한편 현행 규정[238]은 면세 대상 예술창작품을 열거하고 있으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예술창작품을 판단할 때 창작자, 창작과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함[239]
-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240]이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법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만일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237) 강성모(2012), p. 147

23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는 면세 예술창작품을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이라고 정의함

239) 심사-부가-2016-0046

240) 문학, 영화, 연예(演藝), 국악,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성모, 「문화·예술행사와 부가가치세 과세」, 『조세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2, pp. 147~197.

고윤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38권 제3호, 2021.

국세청, 『해외세정전문가 양성교육 연구보고서(유럽연합)』, 2019.

국중호, 『주요국의 소비세제도(I) 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2024a.

국회예산정책처,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4b.

기획재정부, 『2024 조세개요』, 2024.

김두형, 「최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동향과 과제」,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

김두형·유호림, 『부가가치세법론』, 2022.

김재진·이형민·조승수, 『세금계산서제도 국제비교연구』, 세법연구 17-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소비세제도(Ⅰ)-부가가치세(독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김유찬·이혜진,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이대로 좋은가?」, 『조세연구』 제12권 제2집, 2012.

박명호·기은선·정경화, 『주요국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조사』, 세법연구 09-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박정수, 『주요국의 소비세제도(Ⅰ) - 부가가치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12.

성명재,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 『재정포

럼』2012년 10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상화·송은주·이서현, 『미술품의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9-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안창남·손승연, 『주요국의 소비세제도(I) 프랑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오건호, 「스웨덴 조세·재정체계의 형성과 변화」, 『스칸디나비아연구』 제14호, 2013.
이창희, 『세법강의』, 제20판, 박영사, 2022.
전승훈, 「응능과세원칙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역할 강화 방안 – 세율인상, 면세조정, 경감세율 도입의 효과 분석 -」,『재정정책논집』 제21집 제1호, 2019.
정다운·이성현·이서현,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외사례 연구』, 세법연구 20-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정유석, 「국제비교를 통한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 – 면세범위와 세율체계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46집, 2012.
정재호,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재정포럼』 2006년 1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병진·박수진·서동연, 『주요국의 금융·보험 용역 관련 간접세 조사-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법연구 2023-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홍성훈·성명재,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홍순만, 「부가가치세의 개혁과 쟁점」, 『2024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4.

〈외국 문헌〉

寺崎寛之,『図説 日本の税制』, 財経詳報社, 2023.
Bach, Evert, Janik Evert, Stefan Gorgels, Jennifer Hönicke, Sara Holzmann, Felicitas Kuttler and Yannick Ruf, “VAT gap, reduced VAT rates and their impact on compliance costs for businesses and on consumer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21.
Bundesrechnungshof, “Bericht nach § 99 der Bundeshaushaltsordnung über den

ermäßigten Umsatzsteuersatz - Vorschläge für eine künftige Ausgestaltung der Steuerermäßigung," 2010.

_____, "Bericht nach § 88 Absatz 2 BHO an den Finanzausschuss des Deutschen Bundestages Reform des ermäßigten Umsatzsteuersatzes lange überfä llig," 2022.

CPO,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TVA), un impôt à recentrer sur son objectif de rendement pour les finances publiques," 2023.

Deutscher Bundestag, Änderungen im Umsatzsteuerrecht seit 1967 Steuerermäßigungen nach § 12 UStG, Steuerbefreiungen nach § 4 UStG, 2010.

de la Feria, R., & Swistak, A., "Designing a Progressive VAT," Working Paper no. WP/24/7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4.

Harju, J., Kosonen, T., & Skans, O. N., "Firm types, price-setting strategies, and consumption-tax incide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65, 2018, pp. 48~72.

Inland Revenue, "GST and financial services: draft guidelines for working with the new zero-rating rules," 2004.

_____, "GST plus Working out specific GST issues," 2024.

Kristoffersson and Pernilla Rendahl, *Textbook on EU VAT*, IUSTUS, 2019.

Meissner Gabi and Nesser Alexander, Umsatzsteuer, 24. Auflage, Schaeffer Poeschel, 2017.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5.

_____, *Consumption Tax Trends 2018*, 2018.

_____, *Revenue Statistics 1965-2022*, 2023.

_____, *Consumption Tax Trends 2024*, 2024a.

_____, *Revenue Statistics 1965-2023*, 2024b.

_____,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c.

OECD and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Consumption Taxes in OECD Countries*, 2014.

Percy Anna, "New Zealand's GST v Exclusions: A Case for the Exclusion of Basic Food and Menstrual Products from Goods and Services Tax in New Zealand," *Auckland University Law*, Vol 25, 2019.

Tax Working Group, "Background Paper for Session 2 of the Tax Working Group," 2018.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Tax Working Group, "A Tax System for New Zealand's Future," 2010.

〈웹사이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index.do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

삼일회계법인, https://www.samili.com/

연합뉴스, https://www.tfmedia.c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taxtechnical.ird.govt.nz/

뉴질랜드 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legislation.govt.nz/

독일연방 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

독일 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gesetze-im-internet.de/index.html

독일 관세청, https://www.zoll.de/DE/Home/home_node.html

독일 의회정보시스템, https://webarchiv.bundestag.de/archive/2008/1114/index-2.html

스웨덴 국세청,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

영국 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legislation.gov.uk/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유럽연합 법령정보시스템, https://eur-lex.europa.eu/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프랑스 정부,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
Avalara, https://www.avalara.com/
Global VAT Compliance, https://www.globalvatcompliance.com/
HAUFE, https://www.haufe.de/
IEA, https://www.iea.org/
IBFD, https://research.ibfd.org/
PWC, https://www. PWC.com/
SMARTSTEUER, https://www.smartsteuer.de/online/

세법연구 24-06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 비교 연구

발 행 2024년 12월

저 자 오종현·송은주·노수경·박하영

발행인 이 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0 1 4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인쇄 ㈜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ISBN 979-11-6655-341-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